발 간 등 록 번 호

경찰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규칙 (2권)

2026.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직무대리규정
2.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3. 공무원보수규정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5. 소방공무원법
6. 군인사법
7. 검찰청법
8. 교육공무원법
9. 경찰공무원 징계령
10.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1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3. 소청절차규정
1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15.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6. 상훈법
17. 정부 표창 규정
18.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19.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직무대리규정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5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1 - 830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직무대리 ” 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 기관장 ” 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 중앙행정기관등 ” 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 “ 부기관장 ” 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 “ 사고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 6. 7.>]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1. 6. 7.>]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ㆍ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본부장ㆍ단장ㆍ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ㆍ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기관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제3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무대리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말한다)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2. 12. 27.>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을 말한다)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제2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된 공무원을 심사 예정 직위의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 12. 27.>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제2호 후단에 따라 통보된 직무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⑧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위임규정)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부칙 <제19736호,2006. 11.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대리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는 이 영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본다.

부칙 <제22956호,2011.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12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 으로 한다.

<23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8호,2015. 9. 2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155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직무대리규정 [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3. 직무대리 기간:

「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시행 2025. 9. 18.] [훈령 제1177호, 2025. 9. 18., 일부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02 - 3150 - 2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을 말한다.
2. "직무대리지정권자"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찰청 차장의 직무대리) 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및 국장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5조(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① 차장을 두지 않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 차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순차적으로 각각 시ㆍ도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④ 부속기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처ㆍ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6조(본부장ㆍ국장ㆍ관ㆍ부장 등의 직무대리) ① 본부장ㆍ국장ㆍ관ㆍ부장(단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ㆍ관ㆍ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국장ㆍ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7조(경찰서장의 직무대리)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과장(승진후보자는 승진예정 계급으로 본다)이 직무대리를 하며 동일 계급의 과장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경무관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총경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직할대장의 직무대리) 직할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9조(직무대리의 지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제10조(직무대리의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에 있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13조(위임규정)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대리규정」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기관 내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813호,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 당시 직무대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대리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4호,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3.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1003호,2021. 1. 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호,2025. 5. 1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2025. 9. 1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2. 직무대리자의 직위(계급)와 성명:

3. 직무대리 기간: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80g/㎡)]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 - 201 - 8396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9., 2015. 11. 20., 2016. 11. 29., 2026. 9. 29.>

[전문개정 2009. 3. 31.]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09. 3. 31.]

제3조의3 삭제 <2006. 6. 12.>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보수 ” 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 봉급 ” 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 수당 ” 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 승급 ” 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 승격 ” 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 보수의 일할계산 ” 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 연봉 ” 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8. “ 연봉월액 ” 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 연봉의 일할계산 ” 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2.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4조제4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5.]

제2장 봉급 <개정 2009. 3. 31.>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31.]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② 삭제<1998. 12. 31.>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개정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8. 1. 18., 2024. 1. 5., 2025. 1.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신설 2025. 1. 3., 2026. 7. 30.>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④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25. 1. 3.>

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25. 1. 3.>

⑥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개정 2013. 12. 11., 2025. 1. 3.>

[전문개정 2009. 3. 31.]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1. 1. 10.>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정직, 강등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개정 2011. 1. 10., 2026. 1. 2.>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9조의2 삭제 <1990. 1. 15.>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2. 1. 6.]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7급 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4. 7. 16.,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09. 3. 31.>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09. 3. 31., 2013. 3. 23., 2014. 11. 19.>
④ 삭제<1990. 1. 1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개정 2009. 3. 31.>
⑥ 삭제<1990. 1. 15.>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

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2014. 7. 16.]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14. 7. 16.>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④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삭제<2014. 1. 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 4. 30., 2014. 1. 8., 2015. 11. 18., 2017. 1. 6., 2018. 1. 18., 2019. 11. 5.>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2020. 1. 7.>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 7. 4.>

[전문개정 2009. 3. 31.]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1. 1. 10., 2011. 7. 4.,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4., 2017. 1. 6., 2025. 1. 3., 2026. 1. 2.>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6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전문개정 2009. 3. 31.]

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 8., 2017. 1. 6.>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7. 16., 2024. 1. 5.>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1. 5.>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①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7. 1. 6.>

② 삭제<1993. 12. 31.>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3. 31., 2017. 1. 6.>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개정 2009. 3. 31.>

⑤ 삭제<2017. 1. 6.>

[제목개정 2017. 1. 6.]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장 보수지급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 원천징수등 " 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1. 9., 2016. 1. 8., 2019. 1. 8., 2020. 3. 10.>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09. 12. 7.]

제20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2조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6. 1. 8.>

[전문개정 2009. 3. 31.]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4. 1. 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11. 8. 29.>

③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사망으로 제적되거나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 1. 7., 2011. 8.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되거나 전역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또는 전역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0. 1. 7., 2011. 8. 29.>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4. 1. 8.]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4.>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16. 6. 24.>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5. 1. 3.>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 8.>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8.>
[전문개정 2009. 3. 31.]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6.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신설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8만10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만2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위ㆍ중위ㆍ중사 및 하사의 경우 최종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 7., 2018. 1. 18., 2019. 1. 8., 2024. 1. 5., 2025. 1. 3.>
④ 삭제<2010. 1. 7.>
[전문개정 2009. 3. 31.]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30.,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2024. 8. 13.>
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6.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전문개정 2014. 1. 8.]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본조신설 2010. 9. 10.]
[제목개정 2013. 12. 11.]

제5장 수당 <개정 2009. 3. 31.>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2조(겸임수당)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5. 12. 30.>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5. 12. 30.>

[전문개정 2009. 3. 31.]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 9. 10.>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개정 2010. 9. 10.>
[전문개정 2009. 3. 31.]

제5장의2 연봉제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34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

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20. 1. 7., 2026. 1. 2.>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6., 2012. 7. 10., 2013. 3. 23., 2014. 11. 19., 2021. 6. 1.>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개정 2022. 1. 4.>

③ 국립대학의 장이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 연도에만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 변동률과 해당 교원의 신규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개정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1. 10.]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2026. 1. 2.>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90만9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977만2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68만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1,011만9천원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1. 1. 10.]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4. 1. 5.>

[전문개정 2009. 3. 31.]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본조신설 2009. 3. 31.]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 6.>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② 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 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 6., 2026. 1. 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1. 1. 5.>

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4., 2021. 1. 5.>
[전문개정 2009. 3. 31.]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본조신설 2011. 1. 10.]

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본조신설 1998. 12. 31.]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4. 1. 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12. 1.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4. 1. 8.]

제45조 삭제 <2023. 1. 6.>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2016. 6. 24.>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5. 1. 3.>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 8., 2016. 6. 24., 2025. 1. 3.>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8.,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2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24. 1. 5.]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20. 1. 7.>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6. 6. 24., 2020. 1. 7.>

[전문개정 2009. 3. 31.]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 11. 13.>

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전문개정 2007. 11. 13.]

제5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 8., 2017. 1. 6.>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7. 11.>

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3. 31.]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36조제2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그 금액이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개정 2016. 1. 8., 2017. 1. 6.>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에 따른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③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6등급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임용 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④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⑤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기준급은 제65조의 방법에 따라 책정한다.<개정 2017. 1. 6.>

⑥ 제5항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5등급 외무공무원이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6., 2026. 1. 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09. 3. 31.]

제59조(연봉의 조정) ①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

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2023. 7.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3. 7. 11.>

[전문개정 2009. 3. 31.]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 10. 10.>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31.]

제61조(준용)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개정 2010. 9. 10., 2016. 1. 8., 2017. 1. 6.>

②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개정 2016. 1. 8., 2017. 1. 6., 2024. 1. 5.>

④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신설 2006. 6. 12., 2007. 7. 2.>

제6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6., 2017. 7. 26.>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64조(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31.]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977만2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537만5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977만2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개정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3. 31.]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①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 5.>
[본조신설 2006. 6. 12.]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0. 1. 7., 2017. 1. 6., 2017. 7. 26., 2020. 1. 7.>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 1. 7., 2016. 1. 8., 2021. 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6.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1. 1. 5.>

⑤ 성과연봉 등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4., 2021. 1. 5.>

[전문개정 2009. 3. 31.]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24.>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조직의 개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제72조(연봉 감액)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6.>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 6.,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31.]

제8장 보칙 <개정 2009. 3. 31.>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④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1. 5.>
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24. 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전문개정 2009. 3. 31.]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 5., 2024. 8. 13.>

1.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시·도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2. 제20조제1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3. 제28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4. 1. 5.>

[본조신설 2023. 1. 6.]

부칙 <제12026호,198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구분 계급	의사	약사	간호원
3급이상	2호봉	2호봉	2호봉
4급	1호봉	2호봉	2호봉

+-----------+-----------+-----------+-----------+
| 5급 | - | 1호봉 | 1호봉 |
+-----------+-----------+-----------+-----------+

②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 이후 별표 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호봉	잔여기간구분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호봉
1		40		1년미만인 자	34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9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3
2			4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8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2
	1년미만인 자	37		1년미만인 자	31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6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0
3			5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35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9 |
| +-------------------------+-------+| +-------------------------+-------+
| |1년미만인 자 | 28 || |1년미만인 자 | 16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7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5 |
| 6 +-------------------------+-------+| 12 +-------------------------+-------+
| |1년미만인 자 | 26 || |1년미만인 자 | 14 |
+----+-------------------------+-------++----+-------------------------+-------+
|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3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5 || 13 +-------------------------+-------+
| | | || |1년미만인 자 | 12 |
| 7 +-------------------------+-------++----+-------------------------+-------+
| | | || 14 | | 11 |
| |1년미만인 자 | 24 |+----+-------------------------+-------+
| | | || 15 | | 10 |
+----+-------------------------+-------++----+-------------------------+-------+
| | | || 16 | | 9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3 |+----+-------------------------+-------+
| | | || 17 | | 8 |
| 8 +-------------------------+-------++----+-------------------------+-------+
| | | || 18 | | 7 |
| |1년미만인 자 | 22 |+----+-------------------------+-------+
| | | || 19 | | 6 |
+----+-------------------------+-------++----+-------------------------+-------+

			20		5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1
9			21		4
	1년미만인 자	20	22		3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9	23		2
10					
	1년미만인 자	18	24		1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7	25		
11			내지		1
			28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전문대학교원			대학교원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호봉	잔여기간구분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호봉
특3		특3	특1		특1

|특4 | | 특4 |특2 | | 특2 |
+----+----------+------+----+----------+------+
| 1 | | 35 |특3 | | 특3 |
+----+----------+------+----+----------+------+
| | 6월이상 1년 6월 | 34 |특4 | | 특4 |
| 2 | 미만인 자 | | | | |
| +----------+------+----+----------+------+
| | 6월미만인 자 | 33 | 1| | 33 |
+----+----------+------+----+----------+------+
| | 1년이상 1년 6월 | 33 | | 6월이상 1년 6월 | 32 |
| 3 | 미만인 자 | | 2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32 | | 6월미만인 자 | 31 |
+----+----------+------+----+----------+------+
| | 6월이상 1년 6월 | 31 | | 1년이상 1년 6월 | 31 |
| 4 | 미만인 자 | | 3 | 미만인 자 | |
| +----------+------+ +----------+------+
| | 6월 미만인 자 | 30 | | 1년미만인 자 | 30 |
+----+----------+------+----+----------+------+
| | 1년이상 1년 6월 | 30 | | 6월이상 1년 6월 | 29 |
| 5 | 미만인 자 | | 4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9 | | 6월미만인 자 | 28 |
+----+----------+------+----+----------+------+
| | 6월이상 1년 6월 | 28 | | 1년이상 1년 6월 | 28 |

6	미만인 자		5	미만인 자	
	6월미만인 자	27		1년미만인 자	27
	1년이상 1년 6월	27		6월이상 1년 6월	26
7	미만인 자		6	미만인 자	
	1년미만인 자	26		6월미만인 자	25
	6월이상 1년 6월	25		1년이상 1년 6월	25
8	미만인 자		7	미만인 자	
	6월미만인 자	24		1년미만인 자	24
	1년이상 1년 6월	24		6월이상 1년 6월	23
9	미만인 자		8	미만인 자	
	1년미만인 자	23		6월미만인 자	22
	6월이상 1년 6월	22		1년이상 1년 6월	22
10	미만인 자		9	미만인 자	
	6월미만인 자	21		1년미만인 자	21
	1년이상 1년 6월	21		6월이상 1년 6월	20

11	미만인 자		10	미만인 자	
	1년미만인 자	20		6월미만인 자	19
		19		1년이상 1년 6월	19
12			11	미만인 자	
13		18		1년미만인 자	18
14		17	12		17
15		16	13		16
16		15	14		15
17		14	15		14
18		13	16		13
19		12	17		12
20		11	18		11
21		10	19		10

22		9	20		9
23		8	21		8
24		7	22		7
25		6	23		6
26		5	24		5
27		4	25		4
28		3	26		3
29		2	27		2
30		1	28		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0호봉이상의 전임강사"를 "21호봉이상의 전임강사"로, "12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4호봉이상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1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를 "20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25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3호봉이하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5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2304호,1987. 12. 9.>(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 을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2371호,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519호,1988. 9.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3호,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제12630호,1989. 2. 28.>(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 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2734호,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ㆍ" 다음에 "의무ㆍ"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ㆍ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11ㆍ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ㆍ"을 삭제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부칙 <제12902호,1990. 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별표 8](기능직)、[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실제경력	간주경력
1. [별표 3] (일반직등) 및 [별표 4] (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경력	6급경력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7급경력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8급경력
2. [별표 8] (기능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이하 경력	6등급경력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7등급경력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8등급경력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9등급경력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9등급경력
3. [별표 10] (경찰、소방)의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경감、소방경경력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경력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위이하 경력	경위、소방위경력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경력	경사、소방장경력
	경사、소방위의 경장、소방교이하 경력	경장、소방교경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별표 8](기능직)、[별표 9의2](1종、2종 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 1、별표 16、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1급、특 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 11](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 12](전문대학、대학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 1 내지 특 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부칙 <제13048호,1990.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23호,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 문교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제35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중 " 문교부 " 를 각각 " 교육부 " 로 한다.

<76>내지 <148> 생략

부칙 <제13432호,1991. 7. 23.>(경찰위원회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 외교안보연구원장 " 을 "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3559호,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2호 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부칙 <제13623호,1992. 3. 28.>(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1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 ”를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으로 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중앙교육평가원장 ”을 “ 국립교육평가원장 ”으로 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5중 “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 ”를 “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

원 ” 으로 한다.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 3중 “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 ” 를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 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제13752호,1992. 10. 30.>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중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 ” 을 “ 한국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 로 하고, 비고 제2호중 “ 개방대학장 ” 을 “ 개방대학장ㆍ한국예술종합학교장 ” 으로 하며, 비고 제4호중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 을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3774호,1992.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가목중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을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을 “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 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3817호,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ㆍ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3. 6. 28.>

부칙 <제13859호,1993. 2. 24.> (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의 제4호중 " 대학교의 "를 "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로, "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 "으로 한다.

2. 총장에게는 특1호봉(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에게는 특2호봉), 부총장、목포해양대학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 특2호봉,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부여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917호,1993. 6. 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5호,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 " 종전의 봉급액 ", "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 "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4179호,1994. 2. 28.>(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의 제2호중 " 한국체육대학교、 " 다음에 " 목포해양대학교、 "를 삽입하며, " 목포해양대학장、 "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4200호,1994. 4. 7.>(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다음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 을 삽입한다.

부칙 <제14204호,1994. 4. 9.>(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계급란중 " 이등상사 " 를 " 상사 " 로, " 일등상사 " 를 " 원사 " 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4417호,1994. 11. 26.>(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봉급표의 행정부란중 " 정무장관보좌관 " 을 " 정무차관 " 으로 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2>생략

<273>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중 " 경제기획원장관 " 을 각각 " 재정경제원장관 " 으로 하고, 제35조제3항중 " 경제기획원 " 을 " 재정경제원 " 으로 한다.

<274>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41호,1994. 12. 23.>(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 2. 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국립교육평가원, ” 및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 ,국립교육평가원장 ” 과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제5호중 “ 국립교육평가원, ” 을 각각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14502호,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05호,1995. 7. 1.>(지방공무원보수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 중, “ 서울특별시장 ” 및 “ 직할시장,도지사 ” 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중 “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감에게는 ” 을 “ 부총장에게는 ” 으로 한다.

부칙 <제14855호,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17호,1996. 2. 21.>(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의 계급란중 “ 치안정감 ” 을 “ 치안정감 소방총감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4920호,1996. 2. 22.>(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2) 생략

2!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별표11 및 별표15제5호중 " 국민학교 " 를 각각 " 초등학교 " 로 한다.

2@ 내지3@ 생략

부칙 <제14934호,1996. 3. 8.>(공정거래위원회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란의 행정부란란중 " 처장 " 다음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을 삽입하고, "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을 "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부위원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5245호,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6、별표 10、별표 12、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부칙 <제15551호,1997. 12. 27.>(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의 비고란제3호 본문중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 을 " 국사편찬위원회 " 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5667호,1998. 2. 24.>(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의 제2호가목중 " 여수수산대학교 " 를 " 여수대학교 " 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5690호,1998. 2. 2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별표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전문직공무원 " 을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14의 제목중 " 전문직공무원 " 을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 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 비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5715호,1998. 2. 28.>(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 외무부장관 " 을 각각 " 외교통상부장관 "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 " 으로 하고, 제38조제1항중 "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 " 을 " 행정자치부

장관과 예산청장 ” 으로 하며, 제39조제2항중 “ 총무처 ” 를 “ 행정자치부 ” 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 총무처차관 ” 을 “ 행정자치부차관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교육부 및 행정조정실 ” 을 “ 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 및 예산청 ” 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 외무부 ” 를 “ 외교통상부 ” 로, “ 내무부 ” 를 “ 행정자치부 ” 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2,061,000원으로 하고, 공보실장、통계청장、기상청장、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의 차장、청의 차장、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특2급 외교직공무원、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및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봉급월액은 1급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2.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중앙해난심판원장 및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 위원회상임위원 : 1급 19호봉
나.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판원장 및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2급 18호봉
다.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라.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1급상당 : 1급 15호봉, 2급상당 : 2급 12호봉, 3급상당 : 3급 16호봉, 4급상당 : 4급 21호봉
마.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14의1.비고, 별표15의1, 초임호봉란, 별표16의2.가.(1)、(4), 나.(1의2) 및 다.(3), 별표17의1.나.(2)、(3의2)、(4)、(5)및 2.나.(2)、(3)、(4), 별표19의1.나.(1)、(3)、(4의2)、(5)및 2.나.(2)、(3)、(4), 별표27의다.경력란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30의 기관명란중 “ 내무부 ” 를 “ 행정자치부 ” 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5766호,1998. 4. 1.>(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 으로, “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 을 “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 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의 제1호중 “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 을 “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ㆍ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ㆍ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5808호,1998. 6. 8.>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대통령직속기관의 직명란중 “ 국가안전기획부차장ㆍ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 ” 을 “ 국가안전기획부차장 ” 으로 하고,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국무총리비서실장 ” 을 “ 국무총리비서실장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5898호,1998. 9. 25.>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 한국예술종합학교장 ” 을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6077호,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ㆍ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개정 1999.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ㆍ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11호,1999. 3. 31.>(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 을 " 국가정보원직원법 " 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국가안전기획부직원 " 을 각각 " 국가정보원직원 " 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 을 "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 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국가안전기획부직원 " 을 " 국가정보원직원 " 으로 한다.

⑬내지2* 생략

부칙 <제16218호,1999. 3. 31.>(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6,077호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1항 본문중 "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 을 "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 으로 한다.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ㆍ제2항 후단 및 제56조제1항중 " 예산청장 "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 예산청소속 " 을 " 기획예산처소속 " 으로 한다.

⑪내지 <109>생략

부칙 <제16341호,1999. 5. 24.>(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중 " 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 을 " 법제처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6626호,1999. 12. 28.>(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6678호,1999. 12. 31.>(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16689호,2000. 1.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중 대통령의 월봉급액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 4. 18.>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 -

대통령	4,147,800원
국무총리	3,324,800원
감사원장	2,509,1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2,318,500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2,220,7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특1급 외교직공무원	2,122,800원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구분	월봉급액
처의 차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청의 차장、	
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1,977,400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국회수석전문위원	
특2급 외교직공무원	1,977,400원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특별시·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1,907,100원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판원장·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1,682,200원
1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1,772,800원
2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1,462,300원
3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1,457,2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2,605,000원인 공무원은 2,318,5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2,386,000원인 공무원은 2,122,800원

②제1항의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4.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8.>

부칙 <제16716호,2000. 2. 14.>(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 한국전통문화학교장 " 을 "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총장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6785호,2000.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 를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 " 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 "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 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하고, 동조제3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를 “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 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 차관보, 1급공무원 ” 을 “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 2급 및 3급공무원 ” 을 “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 ” 을 “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부칙 <제16940호,2000. 8.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03호,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 1. 4.>

제3조 (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별표 10、별표 12、별표 13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과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 또는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제17114호,2001. 1. 29.>(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의 제3호중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별표 22의 경력란의 제2호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란의 제6호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의 제3호중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하고, 동란의 제7호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중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중 " 감사원장 " 을 " 감사원장 및 부총리 " 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138호,2001. 2. 27.>(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 경찰대학ㆍ세무대학 " 을 " 경찰대학 " 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7275호,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 계급 " 을 " 계급ㆍ직무등급 " 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 해당직급 " 을 " 해당 직급ㆍ직무등급 " 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 특1급 외교직공무원 " 을 "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을 "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 2급 및 3급공무

원 ” 을 “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 4급 및 5급공무원 ” 을 “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 제2항제9호의2 ” 를 “ 제3항제9호의2 ” 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 ” 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 ” 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 제24조제1항 ” 을 “ 제24조제2항 ” 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 ” 을 “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 외무관리관 ” 을 “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 5급이상 외무공무원 ” 을 “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1급 또는 특2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7407호,2001.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2년 1월 1일 현재 4급 내지 9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던 외무공무원은 최초의 승격이 있기 전까지는 9급은 1등급, 8급은 2등급, 7급은 3등급, 6급은 4등급, 5급은 5등급, 과장급이 아닌 4급은 6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②2001년 7월 1일 이후에 직위의 변경이 없었던 과장급인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과장급인 4급은 7등급 또는 8등급, 3급은 9등급,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 1급은 12등급, 특2급 외교통상직은 13등급, 특1급 외교통상직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과장급인 4급 및 2급의 구체적인 보수지급기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책정) ①2001년 1월 1일 현재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중 종전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었던 자의 2002년 연봉은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2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2002년 1월 1일 현재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중 종전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었던 자의 2002년 연봉은 2001년 연봉을 기준으로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연봉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감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책정된 연봉이 해당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며,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책정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4조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0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0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 또는 연봉액에 산입한다.

제5조 (외무공무원의 계급폐지 및 직무등급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02년 1월 1일 현재 다른 법령에서 외무공무원에 관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직무등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계급	직무등급

특1급	14등급
특2급	13등급
1급	12등급
2급	10등급 또는 11등급
3급	9등급
4급	6등급 내지 8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부칙 <제17482호,2002.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교육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17498호,200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0호,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74호,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79호,2003. 1.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7992호,2003. 6. 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8122호,2003.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63호,2003. 12. 1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 국립보건원 "을 " 질병관리본부 "로 한다.

부칙 <제18217호,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337호,2004.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제18582호,2004.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71호,2005. 1.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4호 내지 10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에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8715호,2005. 2. 25.>(공무원임용령)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8814호,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43호,2005. 5. 26.>(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부칙 <제18966호,2005. 7. 27.>(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를 각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113호,2005. 11. 4.>(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9120호,2005.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68호,2006. 1.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1. 27.>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 1. 27.>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ㆍ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ㆍ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

구분	호봉	봉급액	비고
교수 부교수	1~16호봉	[별표12] 해당호봉의 봉급액	
	17~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8.5 퍼센트	
조교수 전임강사	1~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7퍼센트	

②별표 15 제6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9307호,2006. 1. 27.>(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을 "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19521호,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 책정)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기준급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직무등급(하위 직무등급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과거 임용되었던 가장 높은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3등급 또는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20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24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8천 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 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의2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부칙 제5조의 표”를 “부칙 제5조의 표 및 이 영 별표 1의3”으로,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고정된 연봉”을 “고정된 연봉 또는 기준급”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9831호,2007.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 봉급액은 별표 12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061호,2007.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호,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부터 마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고위공무원단 "을 " 고위(감사)공무원단 "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고위공무원단 "을 " 고위(감사)공무원단 "으로 한다.

부칙 <제20379호,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 직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별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1,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480만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9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직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당시보다 하위 직무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위의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나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8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2008년 6월 30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고

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20537호,2008.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7.>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별표 35의 비고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천 338만 2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423만 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423만 6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3조의2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하고, " 기획예산처장관 " 을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6호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 대통령경호실 " 을 " 대통령실 경호처 " 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67조 중 "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 " 를 " 처 " 로 하고,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 기획예산처장관 " 은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 을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 ” 을 “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을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을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을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 대통령경호실 ” 을 각각 “ 대통령실 경호처 ” 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 감사원장 및 부총리 ” 를 “ 감사원장 ” 으로 하고, “ 국정홍보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 을 “ 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 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⑩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797호,2008. 6. 5.>(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 방송통신대학 ” 을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 으로 한다.

② 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0889호,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97호,2008. 7. 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21242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9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2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이하 "종전 가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1천20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24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이하 "종전 다등급"이라 한다) 또는 라등급(이하 "종전 라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72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48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 제20152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 제2037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무급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75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42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1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 또는 종전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30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24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⑥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및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파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 7.>

부칙 <제21391호,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52호,2009. 4. 30.>(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연구관"을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제17조의 제목 “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를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연구실적 ”은 “ 업무실적 ”으로, “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는 “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 ”로 본다.

별표 1 별표 5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5의 제목 “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를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공무원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726호,2009. 9. 11.>(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 중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부칙 <제21870호,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서는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979호,201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4호,201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2617호,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사경력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경력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기승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6,332,700원인 공무원: 5,589,4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6,219,900원인 공무원: 5,094,5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8.>

⑤ 검사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 3. 15.>

⑥ 군인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근속가봉 지급의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만 7천 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만 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4.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신규채용되는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만 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4. 1. 8.>

제7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을 받아 이미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6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9조제2항, 별표 30의3,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신규채용되는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연봉 책정)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부칙 제8조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되는 연도의 연봉은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연봉제 전환 연도의 정기승급일이 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근속가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속가봉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

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부칙 <제22708호,2011. 3. 15.>(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을 "계급"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 ”을 “ 직위해제처분 ”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 ”을 “ 직위해제처분 ”으로, “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 기간을 말한다) ”을 “ 직위해제처분기간 ”으로 한다.

제30조의3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으로 한다.

별표 1 중 별표 9 및 별표 9의2란을 삭제한다.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의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0퍼센트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097호,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을 “ 「국립학교 설치령」 ”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356호,2011. 12. 8.>(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 보육시설종사자 ”를 “ 보육교직원 ”으로, “ 보육시설 ”을 “ 어린이집 ”으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497호,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6,591,700원인 공무원: 5,818,0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6,474,300원인 공무원: 5,302,9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을 “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 ”를 “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 ”로 한다.

부칙 <제23632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인 국립대학 교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2일 당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국립대학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부터 2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처분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2012년 7월 22일 당시 2년

이 경과한 경우에는 2012년 7월 22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2일 당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은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부터 2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처분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2012년 7월 22일 당시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012년 7월 22일)에 158만 2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부칙 <제23943호,2012. 7. 10.>(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4299호,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별표 13의 봉급표상 봉급액이 6,808,600원인 공무원: 6,009,400원
2. 별표 13의 봉급표상 봉급액이 6,687,300원인 공무원: 5,477,4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ㆍ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2)ㆍ3), 다목3) 및 같은 표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ㆍ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ㆍ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ㆍ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ㆍ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가목의 환산율란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 를 “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 로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 를 “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 로 하며, 같은 목 4)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 를 “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22의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 를 각각 “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 제6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 교육과학기술부 ” 를 “ 교육부 ” 로,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을 “ 중앙교육연수원 ” 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 교육과학기술부 ” 를 “ 교육부 ” 로, “ 행정안전부 ” 를 “ 안전행정부 ” 로 한다.

별표 3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 대통령실 경호처 ” 를 각각 “ 대통령경호실 ” 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 감사원장 ” 을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으로,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 을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1^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16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
별정직공무원(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만 해당한다)	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한다)	일반직 6급 공무원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한다)	일반직공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기능2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한다)	일반직 우정직군 3급 공무원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3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한다)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상당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별표 17 제2호가목1), 별표 19 제2호가목1) 및 별표 27 나목1)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30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070호,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승급 제한 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 기간 중 봉급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7조(국제경기대회 근무 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3급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제2항, 제37조제2항, 제66조제2항, 별표 3, 별표 4부터 별

표 6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및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하되,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은 지급한다.

1. 별표 3 또는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2. 별표 5 또는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3.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경무관 또는 소방준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4. 별표 11 또는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5. 별표 12의 봉급표 또는 별표 33 제2호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전문대학장 및 단과대학장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령 이상 군인
7. 별표 1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8.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9. 별표 33 제1호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봉등급 3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10. 별표 35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9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11. 별표 38의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받는 고위공무원

제9조(월 중 면직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직 기간 중의 봉급 감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2월 7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67호,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경력관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경력관 중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다.

제4조(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획정된 호봉은 다음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에 종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봉급액(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이 경우 재획정된 호봉(이하 "변경호봉"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1	2,050,300	1,517,700	1,203,500
2	2,147,500	1,600,100	1,270,200
3	2,245,000	1,683,500	1,337,600
4	2,342,300	1,767,800	1,405,900
5	2,440,100	1,850,400	1,474,800
6	2,537,700	1,933,800	1,543,400
7	2,634,900	2,018,300	1,610,800
8	2,732,100	2,100,100	1,676,900
9	2,827,600	2,177,600	1,740,700
10	2,926,000	2,252,000	1,803,200
11	3,007,900	2,324,300	1,864,600
12	3,090,000	2,384,400	1,918,500
13	3,172,000	2,443,700	1,972,000
14	3,253,300	2,502,000	2,025,200
15	3,335,300	2,560,100	2,076,100
16	3,394,300	2,617,900	2,126,700
17	3,452,600	2,673,500	2,175,400
18	3,510,900	2,726,800	2,223,300
19	3,568,500	2,777,900	2,270,000
20	3,626,200	2,828,300	2,315,400
21	3,683,900	2,878,000	2,360,100
22	3,741,100	2,926,900	2,403,600
23	3,799,000	2,974,800	2,445,800
24	3,857,000	3,025,200	2,490,700
25	3,915,100	3,071,300	2,531,600
26	3,973,900	3,120,700	2,575,800
27	4,034,400	3,169,100	2,619,400
28	4,093,400	3,214,800	2,658,500
29	4,155,200	3,260,200	2,695,700
30	4,217,200	3,305,300	2,730,800
31	4,278,800	3,350,200	2,763,200
32	4,340,200	3,398,000	2,794,300
33	4,401,100	3,440,300	2,824,900
34	4,461,600	3,487,400	2,855,400
35	4,521,800	3,533,900	2,887,400
36	4,582,000	3,575,700	2,917,500
37	4,642,800	3,617,200	2,947,500
38	4,703,600	3,658,700	2,977,500
39	4,763,400		
40	4,802,000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봉급표(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봉급표를 말한다)에서 다른 호봉을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 전단에 따

라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2013년 12월 12일 전에 상위 호봉을 적용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경호봉에서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2013년 12월 12일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2013년 12월 1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획정된 호봉은 제1항의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호봉 재획정 등에 따른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부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반영한 봉급액을 말한다)이 종전의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 보다 적은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ㆍ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 2)ㆍ3), 같은 호 다목3)의 경력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같은 목3)가)의 경력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 3)ㆍ4)ㆍ8)의 경력란,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 안전행정부 ”를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비고 제2호 본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1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41호,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에 대하여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적용할 호봉의 획정은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의 획정 방법에 따른다.

제4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 종전의 봉급액 ”이라 한다)으로 보전받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6655호,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전투경찰대설치법」 "을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 전투경찰순경 "을 " 의무경찰 "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 전투경찰순경 "을 " 의무경찰 "로 한다.

⑦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77호,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 단서 및 제48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호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봉급표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6등급 외무공무원, 군무원 중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7257호,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 파견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대해서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17호,2016. 11. 2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7703호,2016. 12. 30.>(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7769호,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 중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 별표 12, 별표 13,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총장
3. 별표 13 비고 제1호의 대장 및 중장
4.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5. 별표 33 제5호 비고 제1호의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 별표 35 비고 제1호의 14등급 외무공무원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정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및 5급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2018년도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제70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제2항 중 " 대통령경호실 "을 각각 " 대통령경호처 "로 한다.

별표 1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 대통령경호실 "을 " 대통령경호처 "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를 " 행정안전부 "로 한다.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 대통령경호실 "을 각각 " 대통령경호처 "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으로 한다.

<3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94호,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6조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7조 및 제8조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부칙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급별 승급액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1.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810만7천원
2.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444만2천원
3.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810만7천원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 호봉	1급	2급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비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14,400원으로 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1급	2급
1	4,057,400	3,774,900
2	4,192,400	3,903,600
3	4,330,900	4,033,800
4	4,472,500	4,165,500
5	4,617,400	4,298,700
6	4,764,100	4,432,400
7	4,913,100	4,567,700
8	5,063,300	4,702,900
9	5,215,500	4,838,900
10	5,368,700	4,975,100
11	5,521,600	5,111,700
12	5,679,500	5,253,000
13	5,838,400	5,395,200
14	5,997,800	5,523,800
15	6,137,000	5,642,500
16	6,260,500	5,751,300
17	6,370,200	5,851,600
18	6,467,800	5,942,900
19	6,555,300	6,027,500
20	6,633,600	6,104,700
21	6,705,800	6,175,100
22	6,770,100	6,239,800
23	6,824,500	6,299,000
24		6,347,400
25		6,393,600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연구관
1	2,395,900
2	2,513,300
3	2,630,600
4	2,747,900
5	2,864,900
6	3,034,300
7	3,202,900
8	3,371,500
9	3,539,300
10	3,707,100
11	3,856,300
12	4,005,600
13	4,152,800
14	4,301,400
15	4,448,300
16	4,591,600
17	4,734,100
18	4,876,900
19	5,018,500
20	5,160,100
21	5,278,200
22	5,395,500
23	5,513,100
24	5,630,200
25	5,747,500
26	5,845,600
27	5,944,900
28	6,043,200
29	6,141,100
30	6,239,500
31	6,315,500
32	6,391,800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지도관
1	2,395,900
2	2,511,700
3	2,627,200
4	2,743,500
5	2,857,500
6	3,009,700
7	3,161,700
8	3,314,300
9	3,465,900
10	3,616,700
11	3,753,100
12	3,888,600
13	4,024,400
14	4,159,300
15	4,293,200
16	4,411,400
17	4,531,400
18	4,650,400
19	4,768,200
20	4,885,800
21	4,990,600
22	5,095,800
23	5,200,400
24	5,305,100
25	5,409,800
26	5,501,200
27	5,592,200
28	5,683,700
29	5,774,300
30	5,866,200
31	5,928,000
32	5,990,200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62,600	21	2,978,200
2	1,610,000	22	3,088,200
3	1,658,100	23	3,197,300
4	1,705,800	24	3,306,400
5	1,754,100	25	3,415,700
6	1,802,300	26	3,525,300
7	1,849,700	27	3,639,600
8	1,897,300	28	3,753,700
9	1,945,500	29	3,873,000
10	1,998,100	30	3,992,700
11	2,049,700	31	4,112,000
12	2,102,300	32	4,231,100
13	2,198,200	33	4,352,100
14	2,294,300	34	4,472,700
15	2,390,200	35	4,593,600
16	2,486,500	36	4,714,000
17	2,581,700	37	4,818,700
18	2,681,200	38	4,923,700
19	2,780,300	39	5,028,800
20	2,879,300	40	5,133,100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76,300	21	3,888,500
2	2,038,500	22	4,008,000
3	2,101,100	23	4,163,900
4	2,163,300	24	4,319,400
5	2,226,000	25	4,474,700
6	2,294,600	26	4,630,000
7	2,363,000	27	4,785,300
8	2,431,800	28	4,940,400
9	2,534,800	29	5,058,500
10	2,638,000	30	5,176,900
11	2,741,400	31	5,294,800
12	2,844,100	32	5,412,900
13	2,946,600	33	5,531,200
14	3,049,400		
15	3,169,800		
16	3,290,000		
17	3,409,600		
18	3,529,400		
19	3,649,800		
20	3,769,0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16,0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14,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956,3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소장	준장	대령
1	5,045,100	4,759,400	3,863,700
2	5,169,800	4,883,100	3,993,600
3	5,294,500	5,006,800	4,123,500
4	5,419,200	5,130,500	4,253,400
5	5,543,900	5,254,200	4,383,300
6	5,668,600	5,377,900	4,513,200
7	5,793,300	5,501,600	4,643,100
8	5,918,000	5,625,300	4,773,000
9	6,042,700	5,749,000	4,902,900
10	6,167,400	5,872,700	5,032,800
11	6,292,100	5,996,400	5,162,700
12	6,416,800	6,120,100	5,292,600
13	6,541,500	6,243,800	5,422,500
14			5,552,400
15			5,682,300
비고 대장: 7,956,300원, 중장: 7,814,400원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929,400
15	7,479,600
14	7,032,000
13	6,630,300
12	6,291,500
11	6,128,100
10	5,935,800
9	5,614,500
8	5,231,900
7	4,901,800
6	4,592,200
5	4,293,300
4	3,992,400
3	3,701,600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224,798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8,154
국무총리	174,274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6,304
부총리 및 감사원장	131,848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4,459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10,428	73,609
2급(상당) 공무원	102,058	68,003

2.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 · 소방정감 공무원	110,428	73,609
치안감 · 소방감 공무원	102,058	68,003

비고: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6,091

4.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2,137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4,671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10,428	73,609
12등급	110,428	71,058
11등급	102,058	68,003
10등급	98,000	65,828
9등급	94,877	63,734

비고: 14등급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가산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4,442	4,402	5,411	6,472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100,576	64,737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단위: 천원)

구 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90,631 ~ 64,737	110,051 ~ 64,737

제6조(국회의원 비서의 봉급액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중에 임용된 국회의원 비서(8급상당)의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

으로 한다.

제7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변경된 직종 및 호봉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급별 최고 호봉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호봉
기능군무원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별정군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군무원만 해당한다)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전문군무경력관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제8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종전 계급이 5급상당인 군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계약군무원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각각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군무원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 직종의 기본연봉을 변경된 직종에서의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과 제40조 본문에 따른 연봉 조정액은 변경되기 전 직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제29478호,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부칙 <제30192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 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47호,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13,432	75,612
2급(상당) 공무원	104,834	69,854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105,369	35,087
지도관	97,421	35,08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 · 소방정감	113,432	75,612
치안감 · 소방감	104,834	69,854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6,773

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4,371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6,703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13,432	75,612
12등급	113,432	72,992
11등급	104,834	69,854
10등급	100,667	67,619
9등급	97,459	65,468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93,097 ~ 66,498	113,045 ~ 66,498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132,996천원 ~ 66,498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00호,2020. 6. 2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0803호,2020. 6. 2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 시간제근무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374호,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1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제나목을 초과하는 금액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59호,2021. 3. 30.>(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1709호,2021. 6. 1.>(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2319호,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6)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27호,2022. 5. 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2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24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980호,2022. 11. 8.>(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213호,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⑥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⑦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⑧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⑨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⑩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⑪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⑫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령 이상의 공무원의 봉급 및 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⑬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⑭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⑮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수석전문관 공무원
3.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4.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5.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
6.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7. 연봉등급 4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8.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1^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제5조(감봉 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라 감봉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을 감액한다. 다만, 연봉월액을 감액하는 금액이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등에 따른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한다.

부칙 <제33622호,2023. 7. 11.>(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을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ㆍ제2항 중 “ 외교부장관 ”을 각각 “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692호,2023. 8. 3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을 “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 16 중 “ 기술 분야 ”를 각각 “ 과학기술 분야 ”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중 “ 기술 분야 ”를 각각 “ 과학기술 분야 ”로 한다.

별표 19 제2호 중 “ 기술 분야 ”를 “ 과학기술 분야 ”로, “ 기술분야 ”를 “ 과학기술 분야 ”로 한다.

별표 22 제3호 중 “ 기술 분야 ”를 “ 과학기술 분야 ”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798호,2023. 10. 1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3862호,2023. 11. 16.>(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 금오공과대학교 ”를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로, “ 목포해양대학교 ”를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로, “ 한밭대학교 ”를 “ 국립한밭대학교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강릉원주대학교 ”를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로, “ 공주대학교 ”를 “ 국립공주대학교 ”로, “ 군산대학교 ”를 “ 국립군산대학교 ”로, “ 목포대학교 ”를 “ 국립목포대학교 ”로, “ 부경대학교 ”를 “ 국립부경대학교 ”로, “ 순천대학교 ”를 “ 국립순천대학교 ”로, “ 안동대학교 ”를 “ 국립안동대학교 ”로, “ 창원대학교 ”를 “ 국립창원대학교 ”로, “ 한국교통대학교 ”를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로, “ 한국해양대학교 ”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로 한다.

부칙 <제34099호,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충역ㆍ대체역 등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의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제22조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4조(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40조 본문에 따라 2024년도 연봉을 조정할 때에는 최초 연봉 책정 당시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10에 따른 봉급과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4에 따른 봉급과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조정된 연봉은 별표 33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3년 1월 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정 또는 소방령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3.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총경 이상 또는 소방정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제5조(특별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4823호,2024. 8. 1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 경찰간부후보생 ”을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4825호,2024. 8. 1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6호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181호,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일 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82호,2025. 2. 25.>(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중 “ 국립안동대학교 ”를 “ 국립경국대학교 ”로 한다.

부칙 <제35838호,2025. 11. 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 국립통일교육원 ”을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의2제5항, 제58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5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13호,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에서 종전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적용한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2. 2026년 1월 1일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으로 한다.

부칙 <제36147호,2026. 2. 27.>(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를 “ 강원대학교 ”로 한다.

부칙 <제36489호,2026. 6. 3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전보를 ”을 “ 전보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7급 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직을 ”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6501호,2026. 7. 7.>(국무회의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으로 한다.

부칙 <제36547호,2026.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제2조(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6 비고 제2호,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별표 19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 비고 제2호,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별표 19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개정 2026. 9. 29.>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별표 4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경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조사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별표 5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6	지도직공무원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소방간부 후보생,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별표 12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국방대학교·사법연수원·경찰대학·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
별표 13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별표 14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삭제 <1998.12.31>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개정 2026. 1. 2.>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 호봉	1급	2급	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4,656,100	4,191,600	3,781,700	3,241,200	2,896,400	2,389,500	2,317,100	2,162,100	2,133,000
2	4,819,300	4,347,100	3,921,600	3,373,500	3,013,400	2,500,700	2,367,900	2,195,700	2,147,600
3	4,986,600	4,504,700	4,065,700	3,508,000	3,135,000	2,615,200	2,423,800	2,233,800	2,168,000
4	5,157,700	4,663,700	4,210,800	3,645,700	3,261,300	2,732,400	2,485,200	2,276,600	2,194,000
5	5,333,000	4,825,100	4,358,300	3,785,200	3,390,900	2,853,100	2,567,100	2,331,700	2,226,100
6	5,510,400	4,986,500	4,507,200	3,926,200	3,523,000	2,977,100	2,682,600	2,412,900	2,264,600
7	5,690,400	5,150,200	4,658,000	4,068,300	3,657,300	3,101,500	2,798,700	2,519,600	2,308,900
8	5,871,900	5,313,600	4,809,000	4,211,100	3,793,200	3,226,200	2,915,800	2,622,400	2,367,500
9	6,056,100	5,478,200	4,961,400	4,354,500	3,929,600	3,351,300	3,027,100	2,720,300	2,456,700
10	6,241,300	5,642,500	5,113,600	4,497,700	4,066,800	3,468,700	3,133,300	2,813,000	2,542,700
11	6,426,000	5,807,700	5,266,200	4,642,100	4,195,300	3,580,000	3,233,400	2,902,700	2,624,400
12	6,617,100	5,978,600	5,424,200	4,778,100	4,319,000	3,689,600	3,331,900	2,990,300	2,705,900
13	6,809,200	6,150,500	5,571,200	4,905,100	4,436,400	3,792,700	3,425,300	3,074,500	2,783,900
14	7,001,800	6,306,200	5,707,600	5,023,800	4,545,900	3,890,000	3,514,500	3,155,100	2,859,800
15	7,170,100	6,449,600	5,833,400	5,135,500	4,649,400	3,983,600	3,599,900	3,232,400	2,932,300
16	7,319,600	6,581,000	5,950,500	5,240,900	4,746,800	4,071,300	3,680,600	3,307,100	3,002,300
17	7,452,100	6,702,000	6,059,400	5,338,700	4,838,400	4,154,900	3,758,100	3,376,800	3,070,800
18	7,570,100	6,812,700	6,160,700	5,430,100	4,924,800	4,234,100	3,832,100	3,444,300	3,134,500
19	7,675,800	6,914,900	6,254,300	5,515,500	5,006,300	4,309,100	3,902,000	3,509,300	3,197,300
20	7,770,600	7,008,100	6,342,100	5,595,300	5,082,700	4,379,600	3,968,400	3,571,100	3,257,000
21	7,857,800	7,093,400	6,423,300	5,669,800	5,154,500	4,447,600	4,031,800	3,630,200	3,313,400
22	7,935,600	7,171,600	6,498,500	5,739,700	5,222,000	4,511,500	4,091,600	3,686,900	3,367,600
23	8,001,400	7,243,100	6,567,800	5,805,400	5,285,600	4,571,300	4,149,600	3,740,800	3,419,200
24		7,301,700	6,632,800	5,867,300	5,345,200	4,628,500	4,204,500	3,792,900	3,468,800
25		7,357,600	6,685,800	5,923,800	5,401,500	4,682,800	4,256,500	3,842,300	3,516,000
26			6,736,700	5,971,800	5,454,500	4,734,100	4,306,500	3,890,300	3,558,700
27			6,783,800	6,015,900	5,498,400	4,782,800	4,348,700	3,930,200	3,595,600
28				6,058,300	5,540,700	4,823,700	4,388,000	3,968,700	3,631,000
29					5,579,500	4,861,900	4,426,100	4,005,100	3,665,100
30					5,617,200	4,899,800	4,462,400	4,040,300	3,698,400
31						4,934,800	4,496,500	4,074,600	3,731,100
32						4,967,8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6. 1. 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1	2,896,400	2,317,100	2,133,000
2	3,033,800	2,373,300	2,147,500
3	3,171,600	2,441,100	2,168,400
4	3,310,400	2,521,400	2,195,900
5	3,451,900	2,615,300	2,230,200
6	3,590,200	2,735,900	2,271,600
7	3,724,200	2,858,000	2,320,400
8	3,859,700	2,976,900	2,377,200
9	3,996,400	3,080,800	2,468,600
10	4,135,800	3,183,000	2,558,300
11	4,259,700	3,283,500	2,640,500
12	4,380,100	3,373,300	2,713,100
13	4,487,600	3,463,900	2,789,800
14	4,598,300	3,543,000	2,867,900
15	4,714,300	3,622,000	2,942,800
16	4,802,300	3,703,700	3,014,300
17	4,889,400	3,785,800	3,077,800
18	4,967,000	3,859,600	3,142,600
19	5,048,800	3,928,200	3,208,500
20	5,125,200	4,001,300	3,275,600
21	5,207,100	4,075,500	3,338,900
22	5,285,200	4,140,600	3,403,900
23	5,367,100	4,208,700	3,463,400
24	5,451,400	4,279,800	3,527,200
25	5,533,700	4,345,200	3,585,000
26	5,622,100	4,410,700	3,647,900
27	5,707,800	4,479,300	3,707,600
28	5,791,400	4,548,300	3,761,200
29	5,878,600	4,612,500	3,813,800
30	5,960,700	4,676,100	3,863,400
31	6,044,900	4,739,700	3,909,300
32	6,131,800	4,802,900	3,953,200
33	6,217,600	4,867,500	3,994,700
34	6,303,000	4,928,900	4,035,700
35	6,388,100	4,992,500	4,079,000
36	6,473,300	5,051,500	4,121,700
37	6,559,100	5,110,100	4,164,200
38	6,645,200	5,168,900	4,206,700
39	6,729,500		
40	6,783,8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개정 2026. 1.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905,100	4,563,500	4,167,700	3,619,000	3,126,100	2,568,400	2,472,100	2,215,300	2,133,000
2	5,068,300	4,719,000	4,307,600	3,751,300	3,243,100	2,679,400	2,493,100	2,245,500	2,148,600
3	5,235,600	4,876,600	4,451,700	3,885,800	3,364,700	2,794,000	2,539,000	2,290,400	2,174,000
4	5,406,700	5,035,600	4,596,800	4,023,500	3,491,000	2,911,100	2,610,800	2,350,700	2,209,500
5	5,582,000	5,197,000	4,744,300	4,163,000	3,620,600	3,031,800	2,710,600	2,427,500	2,255,500
6	5,759,400	5,358,400	4,893,200	4,304,000	3,752,700	3,155,800	2,826,000	2,522,200	2,312,600
7	5,939,400	5,522,100	5,044,000	4,446,100	3,887,000	3,280,100	2,942,100	2,628,900	2,381,600
8	6,120,900	5,685,500	5,195,000	4,588,900	4,022,900	3,404,900	3,059,100	2,731,700	2,463,400
9	6,305,100	5,850,100	5,347,400	4,732,300	4,159,300	3,530,100	3,170,300	2,829,500	2,552,800
10	6,490,300	6,014,400	5,499,600	4,875,500	4,296,500	3,647,400	3,276,600	2,922,200	2,638,600
11	6,675,000	6,179,600	5,652,200	5,019,900	4,425,000	3,758,800	3,376,800	3,012,000	2,720,500
12	6,866,100	6,350,500	5,810,200	5,155,900	4,548,700	3,868,400	3,475,200	3,099,500	2,802,100
13	7,058,200	6,522,400	5,957,200	5,282,900	4,666,100	3,971,500	3,568,600	3,183,800	2,880,000
14	7,250,800	6,678,100	6,093,600	5,401,600	4,775,600	4,068,800	3,657,900	3,264,300	2,955,600
15	7,419,100	6,821,500	6,219,400	5,513,300	4,879,100	4,162,400	3,743,200	3,341,600	3,028,100
16	7,568,600	6,952,900	6,336,500	5,618,700	4,976,500	4,250,000	3,823,900	3,416,300	3,098,400
17	7,701,100	7,073,900	6,445,400	5,716,500	5,068,100	4,333,800	3,901,400	3,486,000	3,166,800
18	7,819,100	7,184,600	6,546,700	5,807,900	5,154,500	4,412,800	3,975,500	3,553,600	3,230,600
19	7,924,800	7,286,800	6,640,300	5,893,300	5,236,000	4,487,900	4,045,300	3,618,500	3,293,300
20	8,019,600	7,380,000	6,728,100	5,973,100	5,312,400	4,558,500	4,111,700	3,680,400	3,353,200
21	8,106,800	7,465,300	6,809,300	6,047,600	5,384,200	4,626,200	4,175,200	3,739,400	3,409,400
22	8,184,600	7,543,500	6,884,500	6,117,500	5,451,700	4,690,200	4,235,000	3,796,100	3,463,600
23	8,250,400	7,615,000	6,953,800	6,183,200	5,515,300	4,750,100	4,293,000	3,850,000	3,515,100
24		7,673,600	7,018,800	6,245,100	5,574,900	4,807,300	4,347,900	3,902,200	3,564,900
25		7,729,500	7,071,800	6,301,600	5,631,200	4,861,500	4,399,900	3,951,600	3,612,000
26			7,122,700	6,349,600	5,684,200	4,912,900	4,449,900	3,999,600	3,654,600
27			7,169,800	6,393,700	5,728,100	4,961,600	4,492,000	4,039,500	3,691,600
28				6,436,100	5,770,400	5,002,600	4,531,300	4,078,000	3,727,000
29					5,809,200	5,040,800	4,569,300	4,114,300	3,761,200
30					5,846,900	5,078,500	4,605,800	4,149,600	3,794,400
31						5,113,500	4,639,900	4,183,800	3,827,000
32						5,146,4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개정 2026. 1. 2.>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계급	연구관	연구사
1	2,896,400	2,317,100
2	3,038,400	2,391,800
3	3,180,100	2,477,300
4	3,322,000	2,574,400
5	3,463,400	2,684,300
6	3,668,200	2,816,200
7	3,872,200	2,948,500
8	4,075,900	3,080,700
9	4,278,800	3,211,900
10	4,481,600	3,343,400
11	4,662,200	3,442,300
12	4,842,600	3,541,300
13	5,020,600	3,640,700
14	5,200,000	3,739,800
15	5,377,800	3,838,500
16	5,550,900	3,917,400
17	5,723,200	3,995,500
18	5,896,100	4,074,600
19	6,067,000	4,152,500
20	6,238,400	4,231,200
21	6,381,100	4,306,800
22	6,522,800	4,383,100
23	6,665,000	4,459,100
24	6,806,500	4,534,900
25	6,948,400	4,610,300
26	7,067,000	4,662,700
27	7,187,000	4,714,800
28	7,306,100	4,767,300
29	7,424,400	4,817,800
30	7,543,300	4,869,900
31	7,635,200	4,921,800
32	7,727,300	4,967,300
33		5,012,900
34		5,057,600
35		5,102,700
36		5,144,6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개정 2026. 1. 2.>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896,400	2,162,100
2	3,036,700	2,231,300
3	3,176,300	2,307,600
4	3,316,600	2,391,700
5	3,454,600	2,484,100
6	3,638,500	2,585,700
7	3,822,500	2,706,300
8	4,006,900	2,826,000
9	4,190,200	2,945,900
10	4,372,400	3,065,400
11	4,537,300	3,168,300
12	4,701,200	3,270,800
13	4,865,100	3,372,800
14	5,028,200	3,474,300
15	5,190,200	3,574,600
16	5,333,100	3,665,100
17	5,478,300	3,755,400
18	5,622,000	3,844,800
19	5,764,400	3,934,000
20	5,906,500	4,023,700
21	6,033,200	4,106,700
22	6,160,500	4,190,200
23	6,287,000	4,272,700
24	6,413,400	4,355,300
25	6,540,000	4,437,400
26	6,650,700	4,499,400
27	6,760,600	4,562,200
28	6,871,300	4,625,000
29	6,980,800	4,687,500
30	7,092,100	4,749,000
31	7,166,500	4,802,900
32	7,241,800	4,849,900
33		4,897,000
34		4,943,700
35		4,990,600
36		5,034,2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7] 삭제 <1989.6.17>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개정 2026. 1. 2.>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434,000	3,197,100	2,978,700	2,769,500	2,570,600	2,389,500	2,317,100	2,162,100	2,133,000
2	3,564,000	3,322,500	3,099,600	2,887,900	2,685,200	2,500,700	2,367,900	2,195,700	2,147,600
3	3,699,200	3,452,400	3,223,600	3,008,500	2,803,300	2,615,200	2,423,800	2,233,800	2,168,000
4	3,840,400	3,587,400	3,349,300	3,132,300	2,923,900	2,732,400	2,485,200	2,276,600	2,194,000
5	3,985,900	3,726,500	3,477,400	3,256,300	3,048,000	2,853,100	2,567,100	2,331,700	2,226,100
6	4,134,700	3,868,600	3,610,100	3,381,700	3,172,200	2,977,100	2,682,600	2,412,900	2,264,600
7	4,288,400	4,013,000	3,743,800	3,506,500	3,296,800	3,101,500	2,798,700	2,519,600	2,309,900
8	4,443,500	4,160,200	3,880,800	3,632,200	3,421,600	3,226,200	2,915,800	2,622,400	2,367,500
9	4,599,500	4,307,700	4,018,100	3,758,600	3,547,600	3,351,300	3,027,100	2,720,300	2,456,700
10	4,756,200	4,456,200	4,155,300	3,885,400	3,673,700	3,468,700	3,133,300	2,813,000	2,542,700
11	4,914,100	4,604,200	4,292,600	4,012,900	3,791,900	3,580,000	3,233,400	2,902,700	2,624,400
12	5,063,700	4,737,500	4,417,700	4,135,300	3,906,500	3,689,600	3,331,900	2,990,300	2,705,900
13	5,203,300	4,861,700	4,533,600	4,249,600	4,015,500	3,792,700	3,425,300	3,074,500	2,783,900
14	5,333,000	4,979,300	4,644,500	4,357,600	4,118,600	3,890,000	3,514,500	3,155,100	2,859,800
15	5,453,400	5,088,500	4,747,000	4,459,500	4,216,400	3,983,600	3,599,900	3,232,400	2,932,300
16	5,565,600	5,192,100	4,844,600	4,556,300	4,308,700	4,071,300	3,680,600	3,307,100	3,002,300
17	5,669,300	5,287,800	4,936,500	4,647,300	4,396,300	4,154,900	3,758,100	3,376,800	3,070,800
18	5,765,400	5,378,100	5,023,500	4,733,200	4,478,500	4,234,100	3,832,100	3,444,300	3,134,500
19	5,855,100	5,462,300	5,105,200	4,813,600	4,556,000	4,309,100	3,902,000	3,509,300	3,197,300
20	5,938,200	5,541,800	5,182,000	4,890,300	4,630,300	4,379,600	3,968,400	3,571,100	3,257,000
21	6,015,800	5,615,000	5,254,500	4,961,900	4,700,100	4,447,600	4,031,800	3,630,200	3,313,400
22	6,086,900	5,684,800	5,322,400	5,029,400	4,764,900	4,511,500	4,091,600	3,686,900	3,367,600
23	6,146,100	5,749,800	5,387,200	5,092,800	4,826,800	4,571,300	4,149,600	3,740,800	3,419,200
24	6,201,400	5,804,300	5,446,900	5,153,300	4,885,800	4,628,500	4,204,500	3,792,900	3,468,800
25		5,855,300	5,497,700	5,209,600	4,941,800	4,682,800	4,256,500	3,842,300	3,516,000
26			5,545,600	5,256,400	4,993,500	4,734,100	4,306,500	3,890,300	3,558,700
27			5,591,500	5,300,800	5,037,600	4,782,800	4,348,700	3,930,200	3,595,600
28				5,343,800	5,079,400	4,823,700	4,388,000	3,968,700	3,631,000
29				5,383,100	5,118,200	4,861,900	4,426,100	4,005,100	3,665,100
30					5,156,000	4,899,800	4,462,400	4,040,300	3,698,400
31						4,934,800	4,496,500	4,074,600	3,731,100
32						4,967,8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삭제 <2011.7.4>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 삭제 <2011.7.4>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개정 2026. 1. 2.>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1	4,905,100	4,563,500	4,167,700	3,619,000	3,126,100	2,698,600	2,507,700	2,472,100	2,215,300	2,133,000
2	5,068,300	4,719,000	4,307,600	3,751,300	3,243,100	2,814,700	2,567,700	2,493,100	2,245,500	2,155,600
3	5,235,600	4,876,600	4,451,700	3,885,800	3,364,700	2,933,000	2,640,000	2,539,000	2,290,400	2,187,500
4	5,406,700	5,035,600	4,596,800	4,023,500	3,491,000	3,054,900	2,758,200	2,610,800	2,350,700	2,229,200
5	5,582,000	5,197,000	4,744,300	4,163,000	3,620,600	3,178,700	2,879,500	2,710,600	2,427,500	2,281,100
6	5,759,400	5,358,400	4,893,200	4,304,000	3,752,700	3,305,500	3,001,800	2,826,000	2,522,200	2,343,900
7	5,939,400	5,522,100	5,044,000	4,446,100	3,887,000	3,435,100	3,125,400	2,942,100	2,628,900	2,418,400
8	6,120,900	5,685,500	5,195,000	4,588,900	4,022,900	3,565,700	3,249,000	3,059,100	2,731,700	2,505,600
9	6,305,100	5,850,100	5,347,400	4,732,300	4,159,300	3,697,600	3,373,300	3,170,300	2,829,500	2,585,100
10	6,490,300	6,014,400	5,499,600	4,875,500	4,296,500	3,820,800	3,490,700	3,276,600	2,922,200	2,680,900
11	6,675,000	6,179,600	5,652,200	5,019,900	4,425,000	3,937,600	3,600,800	3,376,800	3,012,000	2,762,900
12	6,866,100	6,350,500	5,810,200	5,155,900	4,548,700	4,051,200	3,709,400	3,475,200	3,099,500	2,844,100
13	7,058,200	6,522,400	5,957,200	5,282,900	4,666,100	4,158,400	3,812,400	3,568,600	3,183,800	2,922,200
14	7,250,800	6,678,100	6,093,600	5,401,600	4,775,600	4,261,000	3,909,100	3,657,900	3,264,300	2,998,100
15	7,419,100	6,821,500	6,219,400	5,513,300	4,879,100	4,357,000	4,002,700	3,743,200	3,341,600	3,070,500
16	7,568,600	6,952,900	6,336,500	5,618,700	4,976,500	4,449,500	4,090,100	3,823,900	3,416,300	3,140,600
17	7,701,100	7,073,900	6,445,400	5,716,500	5,068,100	4,535,400	4,173,700	3,901,400	3,486,000	3,209,100
18	7,819,100	7,184,600	6,546,700	5,807,900	5,154,500	4,618,100	4,252,700	3,975,500	3,553,600	3,273,000
19	7,924,800	7,286,800	6,640,300	5,893,300	5,236,000	4,695,400	4,327,900	4,045,300	3,618,500	3,335,700
20	8,019,600	7,380,000	6,728,100	5,973,100	5,312,400	4,768,800	4,399,300	4,111,700	3,680,400	3,395,400
21	8,106,800	7,465,300	6,809,300	6,047,600	5,384,200	4,837,900	4,467,200	4,175,200	3,739,400	3,451,600
22	8,184,600	7,543,500	6,884,500	6,117,500	5,451,700	4,904,700	4,531,200	4,235,000	3,796,100	3,506,000
23	8,250,400	7,615,000	6,953,800	6,183,200	5,515,300	4,965,900	4,592,000	4,293,000	3,850,000	3,557,600
24		7,673,600	7,018,800	6,245,100	5,574,900	5,025,200	4,650,300	4,347,900	3,902,200	3,607,200
25		7,729,500	7,071,800	6,301,600	5,631,200	5,081,100	4,705,700	4,399,900	3,951,600	3,654,200
26			7,122,700	6,349,600	5,684,200	5,134,000	4,756,500	4,449,900	3,999,600	3,697,100
27			7,169,800	6,393,700	5,728,100	5,183,300	4,800,000	4,492,000	4,039,500	3,733,900
28				6,436,100	5,770,400	5,225,600	4,841,900	4,531,300	4,078,000	3,769,300
29					5,809,200	5,264,800	4,881,500	4,569,300	4,114,300	3,803,400
30					5,846,900	5,303,200	4,918,600	4,605,800	4,149,600	3,836,800
31						5,338,600	4,954,300	4,639,900	4,183,800	3,869,200
32						5,372,5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2.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6. 1.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41,500	21	3,600,700
2	2,103,300	22	3,733,600
3	2,166,000	23	3,865,300
4	2,228,500	24	3,997,500
5	2,291,500	25	4,129,400
6	2,354,400	26	4,261,900
7	2,416,600	27	4,400,100
8	2,478,600	28	4,538,000
9	2,495,600	29	4,682,100
10	2,516,700	30	4,826,800
11	2,538,300	31	4,971,100
12	2,585,900	32	5,115,200
13	2,657,500	33	5,261,600
14	2,773,700	34	5,407,500
15	2,889,700	35	5,553,600
16	3,006,200	36	5,699,100
17	3,121,000	37	5,825,700
18	3,241,500	38	5,952,500
19	3,361,200	39	6,079,500
20	3,481,000	40	6,205,7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6. 2. 27.>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379,500	21	4,681,500
2	2,454,300	22	4,825,500
3	2,529,700	23	5,013,100
4	2,604,500	24	5,200,300
5	2,679,900	25	5,387,500
6	2,762,500	26	5,574,300
7	2,844,900	27	5,761,100
8	2,927,700	28	5,948,000
9	3,051,900	29	6,090,300
10	3,176,100	30	6,232,600
11	3,300,500	31	6,374,700
12	3,424,200	32	6,516,900
13	3,547,700	33	6,659,200
14	3,671,200		
15	3,816,100		
16	3,960,900		
17	4,105,100		
18	4,249,300		
19	4,394,200		
20	4,537,6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447,300원
   나.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618,800원
2.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43,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6. 1. 2.>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6,099,000	5,753,700	4,671,200	4,105,800	3,382,700	2,805,000	2,306,700	2,150,400	2,544,300	3,568,100	2,468,000	2,181,500	2,133,000
2	6,249,900	5,903,200	4,828,300	4,262,800	3,536,000	2,922,900	2,385,000	2,240,400	2,665,400	3,682,100	2,577,500	2,252,000	2,154,300
3	6,400,800	6,052,700	4,985,400	4,419,800	3,689,300	3,040,800	2,463,300	2,330,400	2,786,500	3,796,100	2,687,000	2,322,500	2,175,600
4	6,551,700	6,202,200	5,142,500	4,576,800	3,842,600	3,185,400	2,541,600		2,907,600	3,910,100	2,796,500	2,393,000	2,196,900
5	6,702,600	6,351,700	5,299,600	4,733,800	3,995,900	3,330,000	2,619,900		3,028,700	4,024,100	2,906,000	2,463,500	2,218,200
6	6,853,500	6,501,200	5,456,700	4,890,800	4,149,200	3,474,600	2,741,300		3,149,800	4,138,100	3,015,500	2,534,000	2,249,100
7	7,004,400	6,650,700	5,613,800	5,047,800	4,302,500	3,619,200	2,862,700		3,270,900	4,252,100	3,125,000	2,604,500	2,280,000
8	7,155,300	6,800,200	5,770,900	5,204,800	4,455,800	3,763,800			3,392,000	4,366,100	3,234,500	2,706,900	2,310,900
9	7,306,200	6,949,700	5,928,000	5,361,800	4,609,100	3,908,400			3,513,100	4,480,100	3,344,000	2,809,300	2,341,800
10	7,457,100	7,099,200	6,085,100	5,518,800	4,762,400	4,053,000			3,634,200	4,594,100	3,453,500	2,911,700	2,372,700
11	7,608,000	7,248,700	6,242,200	5,675,800	4,915,700	4,197,600			3,755,300	4,708,100	3,563,000	3,014,100	
12	7,758,900	7,398,200	6,399,300	5,832,800	5,069,000	4,342,200			3,876,400	4,822,100	3,672,500	3,116,500	
13	7,909,800	7,547,700	6,556,400	5,989,800	5,222,300				3,997,500	4,936,100	3,782,000	3,218,900	
14			6,713,500	6,146,800	5,375,600				4,118,600	5,050,100	3,891,500	3,321,300	
15			6,870,600	6,303,800					4,239,700	5,164,100	4,001,000	3,423,700	
16									4,360,800		4,110,500	3,526,100	
17									4,481,900		4,220,000	3,628,500	
18									4,603,000		4,329,500	3,730,900	
19									4,724,100		4,439,000	3,833,300	
20									4,845,200			3,935,700	
21									4,966,300			4,038,100	
22									5,087,400			4,140,500	
23									5,208,500				
24									5,329,600				
25									5,450,700				
26									5,571,800				
27									5,692,900				

비고

1. 대장: 9,618,800원, 중장: 9,447,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3. 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500,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650,0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500,000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750,000원, 2학년 900,000원, 3학년 1,200,000원
6. 병: 이등병 750,000원, 일등병 900,000원, 상등병 1,200,000원, 병장 1,500,000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 <개정 2026. 1. 2.>

헌법연구관 ·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9,586,300
15	9,042,400
14	8,501,100
13	8,015,800
12	7,606,000
11	7,408,400
10	7,176,100
9	6,787,700
8	6,325,100
7	5,926,200
6	5,551,500
5	5,190,400
4	4,826,500
3	4,475,100
2	4,124,400
1	3,660,3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개정 2024. 1. 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 8 조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 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그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이 표에서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2)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별표 17에 따라 경력을 연구관·연구 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9에 따라 경력을 지도관·지도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 지도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4. 삭제 <2011.7.4>		
5. 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6.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7.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합산·조정한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으로 진급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호봉으로 한다. 1. 「군인보수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군인보수법」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군인보수법」 제9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7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의2] <개정 2013.12.11>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실제경력		간주경력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및 별표 4(공안업무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 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 7급 공무원의 8급 이하 경력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2.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기능1급 이하 기능5급 이상 공무원의 기능6급 이하 경력 기능6급 공무원의 기능7급 이하 경력 기능7급 공무원의 기능8급 이하 경력 기능8급 공무원의 기능9급 이하 경력 기능9급 공무원의 기능10급 경력	기능6급 경력 기능7급 경력 기능8급 경력 기능9급 경력 기능9급 경력
3.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상 공무원의 경감 이하 경력 소방총감 이하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경력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위 이하 경력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 이하 경력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 이하 경력	경감 경력 소방경 경력 경위·소방위 경력 경사·소방장 경력 경장·소방교 경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개정 2026. 7. 30.>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3)의 경력: 100퍼센트 ·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9)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9)의 경력: 100퍼센트 ·9)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 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호가목4)에 따른 경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개정 2026. 7. 30.>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 경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만 해당한다)·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사경	1) 전문·특수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50퍼센트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1986년 이후의 지도 분야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

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8] 삭제 <1990.1.15>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9] <개정 2026. 7. 30.>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 · 경영 · 연구 ·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마) 국 ·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 · 지도직 · 특정직 ·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 · 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전문 · 특수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50퍼센트
	다) 법인 · 단체 ·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 분야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병역법」에 따른 예술 · 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 · 경영 · 연구 ·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국 ·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0] 삭제 <2000.1.8>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1] 삭제 <1990.1.15>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개정 2025. 1.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은 제외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이내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80퍼센트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이내
	3)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4)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70퍼센트 이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60퍼센트 이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10)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40퍼센트 이내
	11)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0퍼센트 이내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개정 2021. 1. 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산 정 공 식
(총수학연수－16)＋가산연수＝

비고

1. 이 표 중 총수학연수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말하며, 법정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동등 자격과 제5호의 구 학력대비표에 따른 동등 자격을 포함한다.
2.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2년
      2)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3) 1), 2) 외의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교사 양성기관의 1년 이상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구 관립학교 본과 3학년 및 같은 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며, 구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
5. 구 학력대비표

해당학력	구학력
사범대학 졸업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대학 졸업	1. 고등사범학교(4년제) 졸업 2. 대학고등사범부(4년제) 졸업
2년제 교육대학 졸업	1. 제1종 교원시험 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2년제 사범대학 졸업	1. 고등사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2. 1945년 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3. 1963년 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전문대학 졸업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2.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 합격 3.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이상 2년 미만 수료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5. 관립사범학교 연습과 1년 수료 6. 1963년 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사범학교 졸업	1. 제2종 교원시험 합격 2.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미만 수료
고등학교 졸업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2. 제3종 교원시험 합격 3.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고등학교 1년 수료	1945년 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6. 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 <개정 2022. 5. 9.>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구 분 \ 학력별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대학 교수, 전문대학 교수	−10	−13
대학 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 7	−10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 4	− 7
대학 조교, 전문대학 조교	0	− 2

비고

1. 이 표 중 (+)는 가산연수를, (−)는 감산연수를 의미한다.
2. 조교 외의 대학 교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람의 초임급 산정을 할 때 대학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는 15년을,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학 부교수는 12년을, 대학 조교수와 전문대학 조교수는 9년을 각각 감산한다.
3.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과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 부교수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초등학교 졸업자는 17년을, 중학교 졸업자는 14년을, 고등학교 졸업자는 11년을 각각 감산한다.
4. 이 표의 학력에는 별표 23에 규정된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
5. 대학에는 교육대학(종전의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종전의 개방대학을 포함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포함하고,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6.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이 표에 표시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개정 2009.3.3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 격 별	기산호봉	비 고
정교사(1급)	9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정교사(2급)	8	
준교사	5	
전문상담교사(1급)	9	
전문상담교사(2급)	8	
사서교사(1급)	9	
사서교사(2급)	8	
실기교사	5	
보건교사(1급)	9	
보건교사(2급)	8	
영양교사(1급)	9	
영양교사(2급)	8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6] <개정 2012.2.28>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

대학·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
교수	15
부교수, 장학관, 교육연구관	12
조교수	9
조교	2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개정 2014.11.19.>

군인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호봉 획정 대상별 환산율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가. 군인경력	1)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2)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8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3)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8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4)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8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 「군인보수법」 제9조제4호에 따른 해당 신분의 임용 전 군 교육기간. 다만, 환산된 경력연수는 해당 신분의 경력으로 본다.	5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나. 군인 외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80퍼센트	90퍼센트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 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6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
다. 유사경력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6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 <개정 2018. 1. 18.>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가.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나.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 봉급표)를 적용받고 전보하는 공무원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1	1	1	1	14	9	14	9	27	19	27	19
2	1	2	1	15	10	15	10	28	20	28	20
3	1	3	1	16	10	16	10	29	21	29	21
4	1	4	1	17	11	17	11	30	22	30	22
5	2	5	2	18	12	18	12	31	23	31	23
6	3	6	3	19	12	19	13	32	24	32	24
7	4	7	4	20	13	20	14	33	25	33	25
8	5	8	5	21	14	21	15	34	25	34	25
9	5	9	6	22	15	22	16	35	26	35	26
10	6	10	7	23	16	23	16	36	27	36	27
11	7	11	7	24	17	24	17	37	28	37	28
12	8	12	8	25	17	25	18	38	29	38	29
13	8	13	8	26	18	26	19				

다.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1	1	13	9	25	15

2	1	14	9	26	15
3	2	15	10	27	16
4	3	16	10	28	16
5	4	17	11	29	17
6	5	18	11	30	17
7	6	19	12	31	18
8	6	20	12	32	18
9	7	21	13	33	19
10	7	22	13	34	19
11	8	23	14	35	20
12	8	24	14	36	20

라.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1	1	13	7	25	14
2	1	14	8	26	14
3	1	15	9	27	15
4	2	16	9	28	15
5	3	17	10	29	16
6	3	18	10	30	16
7	4	19	11	31	17
8	5	20	11	32	17
9	5	21	12	33	18
10	6	22	12	34	18
11	6	23	13	35	19
12	7	24	13	36	19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이 획정된 공무원이 승진 전 계급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3.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가.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또는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1) 1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
2) 2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
3) 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
4) 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

나. 다군 8호봉·12호봉·15호봉·18호봉·24호봉·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12호봉·15호봉·22호봉·26호봉·3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

다. 다군 9호봉·13호봉·16호봉·19호봉·25호봉·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13호봉·16호봉·23호봉·27호봉·3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나.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9] <개정 2017. 1. 6.>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국가정보원 전문관
• 6호봉에서 7호봉으로 승급할 때 •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승급할 때 • 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할 때 •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승급할 때 • 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할 때 • 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승급할 때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개정 2022. 5. 9.>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보수 지급일	기관명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17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
20일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일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개정 2026. 1.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3,190,5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628,6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548,8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78,3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46,3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3] <개정 2013.12.16>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액

지급 시기	지 급 액
11월	·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봉급월액(봉급표상 봉급월액이 6,332,700원 및 6,219,9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전문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구 분		산 입 방 식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전년도 봉급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별표 32, 별표 33의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가목,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 × 0.53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별표 33의 제3호나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8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 <개정 2026. 1. 2.>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2.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고: 별표 3의 비고 각 호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 및 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 <개정 2026. 7. 7.>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71,772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54,932
국무총리	210,690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52,696
부총리 및 감사원장	159,401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50,467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개정 2026. 9. 29.>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33,504	88,993
2급(상당) 공무원	123,385	82,217
3급(상당) 공무원	114,705	77,054
4급(상당) 공무원	104,933	60,991
5급(상당) 공무원	86,520	42,099

비고

1.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8,426천원으로 한다.
4.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7,125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114,705	57,125
전문관 공무원	86,520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101,104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24,015	42,099
지도관 공무원	114,661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 · 소방정감 공무원	133,504	88,993
치안감 · 소방감 공무원	123,385	82,217
경무관 · 소방준감 공무원	114,705	77,054
총경 · 소방정 공무원	104,933	63,274
경정 · 소방령 공무원	86,520	43,492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31,416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9,300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0,277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2,072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0,490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3,801	53,316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1,945	41,288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8,922	33,075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8,820	26,945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8,557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69,663
나	86,606	57,708
다	70,782	50,272
라	62,096	44,296
마	54,67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개정 2025. 1. 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연봉등급 / 직무분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일반직공무원 등(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공무원	12등급	10등급 · 11등급	9등급	6등급 ~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구직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공무원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도사			
전문 경력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전문 경력관 나군		전문 경력관 다군	
경찰 공무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 공무원	소방 정감	소방감	소 방 준 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우정 1급·2급	우정 3급~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비고: 위의 연봉등급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분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등급에 걸쳐 있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의2] <신설 2021. 1. 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S등급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대상인원 및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39조제4항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5] <개정 2026. 1. 2.>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33,504	88,993
12등급	133,504	85,910
11등급	123,385	82,217
10등급	118,482	79,586
9등급	114,705	77,054
8등급	105,345	70,767
7등급	102,007	68,528
6등급	101,353	57,125
5등급	86,520	42,099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6] <신설 2001.11.13>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명)	승격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7배수
2	결원 1인당 5배수
3 ~ 5	결원 1인당 4배수
6 ~ 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20인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35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7] <개정 2026. 1. 2.>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6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8,909	4,397	5,375	5,327	6,545	7,827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8] <개정 2026. 1. 2.>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121,592	78,266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9] <개정 2026. 1. 2.>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109,572 ~ 78,266	133,050 ~ 78,266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78,266천원부터 156,529천원까지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0] <개정 2020. 1. 7.>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

1.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제외)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가 등 급	나 등 급
연간금액	13,000	7,000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가 등 급	나 등 급
연간금액	6,100	4,6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1] <신설 2021. 1. 5.>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

평가등급(지급등급)	지급액
매우우수	성과연봉 기준액의 1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우수	성과연봉 기준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보통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미흡 및 매우미흡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 - 201 - 8399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 수당등 ” 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 재외공무원 ”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 8.>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상여수당 <개정 1993. 12. 31.>

제5조 삭제 <1993. 12. 31.>

제5조의2 삭제 <1991. 12. 31.>

제6조 삭제 <2006. 1. 12.>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2020. 6. 23., 2025. 7. 7., 2026. 9. 29.>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3 삭제 <1992. 12. 31.>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2024. 8. 13.>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7. 1. 6.>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text{(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4. 1. 5.>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 5.>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1. 8., 2023. 9. 19., 2026. 1. 2.>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9. 19.>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6. 1. 8., 2023. 9. 19.>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23. 9. 19.>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8., 2023. 9. 19.>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⑫ 제11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1. 1. 5., 2023. 9.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8.]

제8조 삭제 <2001. 1. 4.>

제9조 삭제 <2001. 1. 4.>

제3장 가계보전수당 <개정 1988. 12. 31.>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개정 2010. 7. 26.,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0. 1. 7., 2010. 5. 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1. 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 1. 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2010. 1. 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0. 1. 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② 재외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1. 1. 5.>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해당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학비를 이미 낸 후 해당 취학 자녀가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신설 2021. 1. 5.>

⑥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2021. 1. 5.>

⑦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1. 7., 2021. 1. 5.>

⑧ 소속 장관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무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5.>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8. 25., 2022. 1. 4., 2024. 1. 5.,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2022. 1. 4.>

③ 삭제<2025. 1. 3.>

④ 삭제<2025. 1. 3.>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2024. 6. 28., 2025. 1. 3., 2026. 1. 2., 2026. 9. 22.>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 12., 2025. 1. 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2., 2017. 9. 5., 2025. 1. 3., 2026. 9. 22.>

⑨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 12., 2025. 1. 3.>

[전문개정 2011. 1. 10.]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6. 11. 29., 2024. 8. 13.>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ㆍ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4. 8. 13., 2025. 1. 3.>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개정 2005. 2. 25.>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10., 2020. 6. 23., 2020. 8. 25., 2024. 8. 13., 2025. 1. 3., 2026. 1. 2.>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6. 23.>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text{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 시간}}{40\text{시간}}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전문개정 2016. 1. 8.]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개정 1998. 12. 31.>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5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라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위, 소위, 중사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5. 1. 3., 2026. 1. 2.>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

다.<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2026. 9. 22.>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2., 2026. 9.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2026. 9. 22.>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점검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3. 1. 6., 2026. 9.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2. 1. 6.>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 9.]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2. 1. 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8. 22.]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등)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2026. 1. 2.>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3. 1. 9., 2017. 1. 6., 2021. 1. 5.>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9.>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중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3의2에 따라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초과근무보전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상한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2026. 9. 22.>

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
2. 그 밖에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⑤ 제4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을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26. 9. 2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6. 9.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26. 9. 22.]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신설 2001. 1. 4.>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2026. 1. 2.>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2 삭제 <2011. 1. 10.>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 지급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4 삭제 <2011. 1. 10.>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

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2., 2016. 1. 8., 2020. 3. 10., 2020. 12. 31., 2024. 1. 5., 2026. 9. 29.>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2. 1. 6., 2016.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2017. 1. 6.,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11. 1. 10.>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되,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호 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0. 1. 7., 2019. 1. 8., 2026. 1. 2.>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0. 7. 26., 2010. 10. 18., 2013. 3. 23., 2013. 12. 11., 2014. 1. 8., 2014. 7. 16., 2017. 1. 6., 2017. 7. 26., 2019. 1. 8., 2020. 3. 10., 2020. 8. 25., 2021. 1. 5., 2021. 3. 30., 2024. 1. 5., 2025. 1. 3., 2025. 10. 1., 2026. 9. 22.>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

3호바목의 3)(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지식재산처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ㆍ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2010. 1. 7.>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11)다)(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8)(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3. 별표 11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마목4)의 수당

14. 별표 11 제3호바목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바목11)가)(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별표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1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1. 1. 10.>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 근무자가 비행임무를 목적으로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2)·3)란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2010. 1. 7., 2010. 7. 26.,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1. 1. 5., 2025. 1. 3.>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1. 1. 10., 2017. 1. 6., 2020. 1.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0. 1. 7.>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 12. 11., 2020. 8. 25.>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 1. 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1. 1. 10., 2022. 1. 4.>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신설 2017. 1. 6., 2020. 1. 7.>

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4.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8. 29.>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11. 8.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1. 8. 29.]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1. 7. 4.,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5. 1. 12.,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2024. 8. 1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2. 11., 2013. 12. 16., 2020. 6. 23.]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17)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21. 1. 5., 2022. 1. 4., 2024. 1. 5.>

② 삭제<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2. 1. 4.>

[본조신설 2010. 9. 10.]

[제목개정 2013. 12. 11.]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 10.,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24. 1. 5.>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영을 시ㆍ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2023. 9. 19., 2025. 1. 3.>

1.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삭제<2024. 1. 5.>
[본조신설 2020. 3. 10.]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4.]

부칙 <제10957호,1982.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ㆍ소방공무원수당규정ㆍ교육공무원수당규정ㆍ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ㆍ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	월수당지급액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항공수당 지급대상자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2,000원이하	16,000원이하	12,000원이하	10,000원이하
2.통신기술 업무수당			25,000	25,000	22,500	16,000	13,000	10,000

지급대상자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3.해운항만 청인천갑문 관리기술직 공무원			25,000	25,000	22,000	16,000	13,000	10,500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1033호,1983.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 10. 8.>

②삭제 <1983. 7. 1.>

부칙 <제11165호,1983.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ㆍ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3. 10. 8., 1984. 10. 4.>

부칙 <제11246호,1983.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45호,1984.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16호,1984.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09호,1984. 12. 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7호,1985. 8. 12.>(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 중앙교육연수원 "을 "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 "으로, " 학술원 사무국、예술원사무국 "을 " 학、예술원사무국 "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759호,1985. 9.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1848호,1986. 1.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12. 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부칙 <제12027호,1986. 12. 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3호,1987. 4. 1.>(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2187호,1987. 6.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2372호,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499호,1988.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5호,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2734호,1989. 6. 17.>(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 상사 " 를 " 일등상사 · 이등상사 " 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 물리 · " 다음에 " 의무 · " 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 연구 · 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을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 의사 · 약사 · 간호사로서 " 를 "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 " 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의사 " 를 " 의무직렬공무원 " 으로, " 약사 " 를 " 약무직렬공무원 " 으로, " 간호사 " 를 " 간호직렬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 · 별표6 · 별표7 · 별표11 ·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 별표7 · " 을 삭제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할

부칙 <제12903호,1990. 1. 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 · 제15조 내지 제17조 · 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 ·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 · 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910호,1990. 1. 30.>(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 사무관대우로 선발된 " 을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 으로 한다.

부칙 <제13049호,1990. 7.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3188호,1990. 12. 27.>(기상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중앙기상대 " 를 " 기상청 " 으로 한다.

부칙 <제13208호,1990. 12. 31.>(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 " 을 "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 " 으로 한다.

4)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통신、정밀측정、기계、금속、탄약、병기、공병차량、함선、항공、의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제13212호,1990. 12. 31.>(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국방대학원ㆍ사관학교 "를 " 국방대학원ㆍ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 "로 한다.

부칙 <제13224호,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 문교부령 "을 " 교육부령 "으로 한다.

<72>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63호,1991.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0호,1991. 12. 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제13623호,1992. 3. 28.>(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 "를 "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 "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 <제13818호,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3870호,1993. 3. 6.>(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 "을 "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 "으로 한다.

⑤내지 <188>생략

부칙 <제14096호,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 "를 " 장기근속수당의 "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 "를 "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 연 지급액 "을 각각 " 1기분 지급액 "으로 한다.

부칙 <제14204호,1994. 4. 9.>(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군무원란 중 " 일등상사、이등상사 "를 " 원사、상사 "로 한다.

부칙 <제14430호,1994. 12. 19.>(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0>생략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경제기획원장관 "을 "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 2, 5호 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 경제기획원장관 "을 "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 경제기획원장관 "을 "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한다.

<272>내지 <327>생략

부칙 <제14503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 장기근속수당 " 을 "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 장기근속수당 " 을 "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장기근속수당 " 을 "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부칙 <제14548호,1995. 3. 23.>(소년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 소년감별소 " 를 " 소년분류심사원 " 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4856호,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4920호,1996. 2. 22.>(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1(생략

2)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별표 11 제2호나목、바목、사목 및 별표 13중 " 국민학교 " 를 각각 " 초등학교 " 로 한다.

2! 내지3@ 생략

부칙 <제14997호,1996.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35호,1996. 8. 8.>(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 내무부장관 " 을 각각 "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 9라) 및 을종란 (나)중 " 해운항만청 " 을 각각 " 해양수산부 " 로 하고, 동표의 제12호 갑종란(다)중 " 해양경찰대 " 를 " 해양경찰청 " 으로 한다.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중 " 수산청、해운항만청、수로국 " 을 " 해양수산부 " 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수산청 " 을 " 해양수산부 " 로 하며, 동표의 제4호바목중 지급대상란중 " 농림수산부 " 를 " 농림부 " 로 한다.

⑩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46호,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1호,1997. 12. 27.>(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2) 단서중 "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 " 을 " 국사편찬위원회 " 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제15690호,1998. 2. 2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 전문직공무원규정 "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 비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3 지급대상란중 " 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15805호,1998. 6.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구분 \ 해당공무원	기말수당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기말수당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를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1급 내지 3급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적용받는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특1급 외교직공무원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비고란중 제1호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제외한다)·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1급 내지 3급 공무원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적용을 받는			전원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특3호봉·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1급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대장·중장	·소장 내지 중령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부칙 <제15994호,1998. 12. 31.>(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 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 "를 각각 " 사관학교 "로 한다.

부칙 <제16078호,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대상공무원	지급액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ㆍ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ㆍ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ㆍ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ㆍ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ㆍ중장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 공무원 ㆍ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ㆍ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ㆍ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기말수당액의 92.5퍼센트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대령	

부칙 <제16211호,1999. 3. 31.>(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내지2*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109>생략

부칙 <제16626호,1999. 12. 28.>(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제16690호,2000. 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6785호,2000. 4. 18.>(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 를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 " 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 "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 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7104호,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 을 “ 정근수당 ” 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 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 를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 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부칙 <제17108호,2001. 1. 27.>(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 " 을 "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 " 을 "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7114호,2001. 1. 29.>(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 교육부령 " 을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의 단서 및 제3호 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 교육부 " 를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군인, 경찰ㆍ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본부장 " 을 " 감사원장, 부총리, 장관(급), 처장, 본부장 " 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38호,2001. 2. 27.>(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나목 1)란 및 5)란과 동호 사목 3)란중 " 경찰대학ㆍ세무대학 " 을 각각 " 경찰대학 " 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7158호,2001. 3. 27.>(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 하사관후보생 " 을 " 부사관후보생 "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 하사관 " 을 각각 " 부사관 " 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②내지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356호,2001.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8호,2001. 11. 13.>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83호,2002.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71호,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75호,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0호,2003. 1.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 아목 및 제4호 마목ㆍ사목ㆍ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45호,2003. 3. 25.>(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7993호,2003. 6. 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2호,2004. 1. 9.>(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부칙 <제18219호,2004.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75호,2004.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⑫생략

부칙 <제18672호,2005.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15호,2005. 2. 25.>(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 필수실무요원 ” 을 “ 필수실무관 ” 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 특수근무수당 ” 을 “ 특수근무수당 등 ” 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8815호,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43호,2005. 5. 26.>(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8966호,2005. 7. 27.>(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972호,2005. 7. 27.>(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단기사관학교 "를 각각 " 육군3사관학교 "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9113호,2005. 11. 4.>(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121호,2005.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69호,2006.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22호,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7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4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ㆍ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중 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586호,2006. 6. 30.>(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 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 "를 "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 "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832호,2007.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57호,2007. 2. 1.>(군인사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을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 "으로 한다.

부칙 <제20079호,2007. 6. 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 중 " 축산연구소 "를 " 축산과학원 "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0153호,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 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68호,2007. 7. 18.>(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0380호,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9등급 공무원 중 종전에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9등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20402호,2007. 11. 30.>(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538호,2008.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령 "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 으로,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령으로 " 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 산업자원부 " 를 " 지식경제부 " 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 해양수산부 " 를 각각 " 국토해양부 " 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 정보통신부 " 를 "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 정보통신부 " 를 "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 로, " 과학기술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 과학기술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 " 을 "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 " 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하고, 같은 목의 지

급대상란 5) 중 “ 보건복지부 ”를 “ 보건복지가족부 ”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 국정홍보처 ”를 “ 문화체육관광부 ”로, 같은 란의 3) 중 “ 행정자치부 ”를 “ 행정안전부 ”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 ”를 “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 ”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 해양수산부 ”를 “ 농림수산식품부 ”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 재정경제부 ” 및 “ 국세심판원 ”을 각각 “ 조세심판원 ”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를 “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정보통신부 ”를 각각 “ 지식경제부 ”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 대통령경호실 ”을 “ 대통령실 경호처 ”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 부총리, 감사원장 ”을 “ 감사원장 ”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⑫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875호,2008. 6. 2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897호,2008. 7. 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의 지급대상란 2) 단서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1057호,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의2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7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부칙 <제21078호,2008. 10. 8.>(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243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이 영 시행 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급보조비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급보조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규정된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임용되어 있거나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나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인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재외근무수당 지급표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구분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마지역 | 바지역 | 사지역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계급ㆍ직무등급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3,156	3,350	3,546	3,703	3,897	4,091	4,247	4,404	4,560	4,75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2,758	2,927	3,098	3,235	3,405	3,574	3,711	3,848	3,984	4,154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2,519	2,673	2,830	2,955	3,109	3,264	3,389	3,514	3,639	3,794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2,295	2,436	2,579	2,693	2,834	2,975	3,089	3,203	3,316	3,457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라스팔마스,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이스탄불	스페인,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터키,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계급ㆍ	(싱가포르달러)	(엔)	센다이, 오사카,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포르투칼,	(유로)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직무등급			후쿠오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히로시마(엔)		(유로)		(유로)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로)	
13등급, 고위공무원단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3,856	3,932	4,008	4,163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479	506,395	464,540	2,469	2,962	3,365	3,432	3,498	3,632
나등급), 12등급, 준장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3,068	3,130	3,191	3,314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2,798	2,853	2,908	3,019
마등급), 9등급, 중령									

└──────────────────────┴──────────┴──────┴──────────────┴──────────────┴──────────────┴──────────┴──────────┴──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2)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액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감액(증액)률	2%이상	4%이상	6%이상	8%이상	10%이상	12%이상	14%이상	16%이상	18%이상	20%이상
계급ㆍ직무등급	4%미만	6%미만	8%미만	10%미만	12%미만	14%미만	16%미만	18%미만	20%미만	22%미만
13등급, 고위공무원단	58	117	175	233	291	350	408	466	524	583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1	101	152	203	253	304	355	405	456	507
나등급), 12등급, 준장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6	92	138	184	230	276	323	369	415	461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2	84	126	168	210	251	293	335	377	419
마등급), 9등급, 중령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 또는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었던 공무원 및 2급, 외무공무원 10、11、13등급, 소장、대령의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제1항 재외근무수당지급표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재외근무수당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외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11 제5호가목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란 중 가)의 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21385호,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52호,2009. 4. 30.>(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국가정보원 직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이하 및 전문관

별표 2의3 제2호란 중 “ 지도관 ”을 “ 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 대위 ”를 “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으로 한다.

별표 11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외직	가. 재외	재외공관	1) 지급액
분야	근무	에 근무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수당	하는 재
				외공무원

		구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계급、직무등급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1급, 고위공무원 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2·3급,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고위공무원										
			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급,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5급, 5등급,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대위,										
			국가정보원										

| | | | 전문관 | | | | | | | | |

| | | | 6급, 4등급 | 1,737 | 1,844 | 1,952 | 2,038 | 2,145 | 2,252 | 2,338 | 2,424 | 2,510 | 2,617 |

| | | | 7급, 3등급 | 1,594 | 1,692 | 1,791 | 1,870 | 1,968 | 2,066 | 2,145 | 2,224 | 2,303 | 2,401 |

| | | | | 나) 현지화 지급국(월 지급액)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계급ㆍ	브루나이	요코하마	니가타, 삿포로,		(파운드)	슬로바키아,
				직무등급	(싱가포르달러)	(엔)	센다이, 오사카,		체코, 헝가리,
							후쿠오카,		루마니아,
							히로시마(엔)		불가리아,
									세르비아

| | | | | | | | | (유로) | | | | | | |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 3,800 | 349,756 | 322,224 | 1,712 | 2,053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6급, 4등급 | 3,452 | 319,161 | 292,687 | 1,555 | 1,874 |

| | | | 7급, 3등급 | 3,167 | 291,050 | 268,520 | 1,427 | 1,711 |

| | | | 구분 | 스페인, | 터키, | 아일랜드, | 핀란드 | 덴마크 |

| | | | 계급ㆍ | 라스팔마스, | 이스탄불 | 오스트리아, | (유로) | (크로네) |

| | | | 직무등급 | 그리스, | (유로) | 프랑크푸르트, |

| | | | | 포르투갈, | | 교황청, 벨기에, |

| | | | | 크로아티아 | | 이탈리아, 밀라노, |

					(유로)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급, 고위공무원단	3,611	3,682	3,753	3,898	30,051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2ㆍ3급,	2,933	2,992	3,050	3,167	24,40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1	2,602	2,653	2,753	21,292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28	2,375	2,421	2,513	19,366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구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계급ㆍ	(크로네)	(크로나)	제네바	밴쿠버,	시드니	오클랜드

			직무등급			(프랑)	몬트리올,	(달러)	(달러)
							토론토		
							(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급,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2ㆍ3급,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급, 6등급부터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8등급까지, 소령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구분	대만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중국, 상하이 (런민비)
계급 직무등급	(달러)		(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39,181	25,314	26,43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112,997	20,609	21,519
4급, 6등급부터	98,258	17,877	18,669

			8등급까지, 소령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89,582	16,375	17,099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등급	1급	2급	3급
구분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서반아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 - 인도네시아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두(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덴	월 400달러 이하	월 350달러 이하	월 300달러 이하

| | | | 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 | | |
| | | | 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 |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모국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중등교육을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
			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

			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
			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 | | | | 6급, 4등급 | 31 | 63 | 94 | 126 | 157 | 189 | 220 | 252 | 283 | 315 |
| | | | | 7급, 3등급 | 29 | 57 | 86 | 114 | 143 | 172 | 200 | 229 | 257 | 286 |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감액(증액)률(%) = $\frac{\text{나} - \text{가}}{\text{가}} \times 100$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별표 15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 |
| 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③ 생략

부칙 <제21717호,2009. 9. 8.>(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920호,2009. 12. 30.>(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 "을 "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21980호,201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90호,2010. 7. 21.>(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제18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 공익수의사 "를 각각 " 공중방역수의사 "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22301호,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을 "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현업작업 장려수당 "을 "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 "으로 한다.

부칙 <제22341호,2010. 8. 1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각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374호,2010. 9. 1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2454호,2010. 10. 18.>(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 산림항공관리본부 ”를 “ 산림항공본부 ”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 산림항공관리본부 ”를 각각 “ 산림항공본부 ”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 산림항공관리본부 ”를 “ 산림항공본부 ”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 산림항공관리본부 ”를 “ 산림항공본부 ”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2618호,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삭제 <2018. 1. 18.>

부칙 <제22962호,2011. 6. 7.>(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6)의 가) 중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을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로 한다.

③부터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인 (중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직공무원

별표 2의3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2호 전단 중 "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을 " 기능직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 12 지급대상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5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099호,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의5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3499호,2012.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를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로, “ 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각각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 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 ”을 “ 기능6급 및 경감 ”으로 한다.

⑧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48호,2012. 8. 22.>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00호,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 국토해양부 ” 를 각각 “ 해양수산부 ” 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 농림수산식품부 ” 를 “ 농림축산식품부 ” 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 지식경제부 ” 를 “ 산업통상자원부 ” 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 국토해양부 ” 를 “ 국토교통부 ” 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
1.기술 분야	기술정 보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영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5급·기능5급·5등급·경정·소방 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 6급·7급·기능6급·기능7급·3등 ·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 8급·기능8급·2등급·경사·소방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 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 나)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 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 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 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 는 운전장에게는 월 10,000원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 라)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월 50,000원 이하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	월 30,000원 이하

<img id="13447490"></img><img id="13447491"></img><img id="13447492"></img><img id="13447493"></img><img id="13447494"></img><img id="13447535"></img><img id="13447536"></img><img id="13447537"></img><img id="13447538"></img><img id="13447539"></img><img id="13447540"></img><img id="13447523"></img><img id="13447541"></img><img id="13447512"></img><img id="13447513"></img><img id="13447514"></img><img id="13447515"></img><img id="13447516"></img><img id="13447517"></img><img id="13447518"></img><img id="13447519"></img><img id="13447520"></img><img id="13447521"></img><img id="13447522"></img><img id="13447524"></img><img id="13447525"></img><img id="13447526"></img><img id="13447542"></img><img id="13447543"></img>

별표 13의 비고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 감사원장 ” 을 “ 감사원장, 부총리 ” 로, “ 처장, 본부장 ” 을 “ 처장 ” 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1*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18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ㆍ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봉급ㆍ연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ㆍ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1 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11 또는 별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072호,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25469호,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수당 등의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제13호·제14호, 별표 11 제3호라목 및 별표 1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 시、도 ”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1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바목, 같은 호의 을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다목 중 “ 해양경찰청 ”을 각각 “ 국민안전처 ”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자목 중 “ 해양경찰청 정비창 ”을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 안전행정부 ”를 각각 “ 행정자치부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호 라목의 지급대상란의 1),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 같은 호 바목17)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나)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의 나)(2)(나)부터 (라)까지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 관세청、문화재청、해양경찰청 ”을 “ 국민안전처、관세청、문화재청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 해양경찰청 ”을 각각 “ 국민안전처 ”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다) 외의 부분 중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을 “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중 “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을 “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2) 중 “ 해양수산부 소속 해상교통관제사

”를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 중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별표 1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4호 및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48호,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칙 <제26596호,2015. 10. 20.>(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다) 중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를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 전투경찰순경 ”을 “ 의무경찰 ”로 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78호,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목의 개정규정 중 “ 의무경찰대 ”는 2016년 1월 24일까지 “ 전투경찰대 ”로 본다.

부칙 <제27220호,2016. 6. 14.>(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를 “ 징병검사전담의사 ”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 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을 “ 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7258호,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17호,2016. 11. 2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 ”를 각각 “ 경찰대학생 ”으로 한다.

⑤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7620호,2016. 11. 29.>(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 징병검사전담의사 ”를 각각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7703호,2016. 12. 30.>(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 「경찰공무원임용령」 ”을 “ 「경찰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7770호,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의6, 제19조제3항 제16호ㆍ제13항, 별표 11 제3호자목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중 전문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 전문관 ”을 “ 전문직위 전문관 ”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 전문관 ”을 “ 전문직위 전문관 ”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171호,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 미래창조과학부 ”를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나목, 같은 호의 병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중 “ 국민안전처 ”를 각각 “ 해양경찰청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의 3) 중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중 “ 행정자치부 ”를 “ 행정안전부 ”로, “ 미래창조과학부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 ”을 “ 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가) 및 같은 란 7)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및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2)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13)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 공무원란 중 “처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84호,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95호,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7,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중 군무원 직종 변경과 관련된 수당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및 연봉 보전 대상 군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봉급 및 연봉이 보전된 군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 및 연봉을 기준

으로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군무원이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되어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8870호,2018. 5. 8.>(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 을종란의 바목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030호,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182호,2018. 9. 18.>(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 ”를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450호,2018. 12. 3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를 “ 장애인 ”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479호,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48호,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60호,2020. 6. 9.>(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0호,2020. 6. 2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0803호,2020. 6. 2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 시간제근무 ”를 “ 시간선택제근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 ”를 “ 시간선택제근무 ”로 한다.

부칙 <제30971호,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51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를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를 “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1376호,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59호,2021. 3. 30.>(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1589호,2021. 3. 30.>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67호,2021. 11. 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3호,2021. 12. 16.>(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321호,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32485호,2022. 2. 22.>(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 국립문화재연구소 ”를 “ 국립문화재연구원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2627호,2022. 5. 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 단서 중 “ 교육부 ”를 “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 ”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215호,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33692호,2023. 8. 3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 중 “ 기술직군 ”을 각각 “ 과학기술직군 ”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733호,2023.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34101호,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283호,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05호,2024. 5. 1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가목,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및 차목 중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를 각각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 국립문화재연구원 ”을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대상란 중 “ 문화재청 ”을 “ 국가유산청 ”으로 한다.

③부터2(까지 생략

부칙 <제34618호,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23호,2024. 8. 1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경찰간부후보생 ”을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 경찰간부후보생 ”을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한다.

부칙 <제34825호,2024. 8. 1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182호,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38호,2025. 7.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을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696호,2025. 8. 5.>(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하목 중 “ 유해화학물질 ”을 각각 “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8호,2025. 11. 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 국립통일교육원 ”을 각각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23조제3항, 별표 10 비고 제1호, 별표 10의2 비고, 별표 11 제3호가목3)가)(2), 같은 목 4)가)(2), 같은 호 라목4)나), 같은 호 바목13)나),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별표 13 비고 및 별표 15 비고 제7호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5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15호,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00호,202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88.12.3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 3.>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군인 제외)	군인(하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30,000원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26. 9. 29.>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6급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군인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군무원	6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1급 이하 및 전문관
경호공무원	1급 이하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전체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개정 2018. 1. 18.>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적용대상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	치안정감·소방정감	치안감·소방감	경무관·소방준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	35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30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26호봉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3호봉	12호봉	12호봉	12호봉	9호봉	5호봉	중위 2호봉	20호봉	12호봉	12호봉	5호봉	2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개정 2019. 1. 8.>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 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평가 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하지 않음

비고: 소속 장관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6. 9. 29.>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6급 이하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연구사 ·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공무원	전체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1. 1. 5.>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9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5항 관련)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25. 1. 3.>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table>
<tr><th>적용범위</th><th colspan="2">부양가족</th><th>월 지급액</th><th>비고</th></tr>
<tr><td rowspan="5">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td><td colspan="2">배우자</td><td>40,000원</td><td rowspan="5"></td></tr>
<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td>20,000원</td></tr>
<tr><td rowspan="3">자녀</td><td>첫째자녀</td><td>50,000원</td></tr>
<tr><td>둘째자녀</td><td>80,000원</td></tr>
<tr><td>셋째 이후 자녀</td><td>120,000원</td></tr>
<tr><td rowspan="2">2. 재외공무원</td><td colspan="2">배우자</td><td>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td><td rowspan="2">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가산금) 부양가족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td></tr>
<tr><td colspan="2">자녀 1명당</td><td>60달러</td></tr>
</table>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5. 1. 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국외학교	지급액
1. 유치원(제11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국외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2. 초등학교·중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3. 고등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 위 표의 국외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국외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 또는 전쟁·내전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

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냐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한다.

2. 재외공무원이 위 표가 적용되는 재외공관으로 전임(轉任)할 때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국외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아오던 자녀(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인 자녀로 한정한다)가 학업의 연속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그 국외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며, 해당 자녀가 그 국외학교에 취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국외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거나 취학하게 되는 그 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위 표를 적용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 <개정 2023. 1. 6.>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적용 범위	월 지 급 액	비 고
1. 군 인	160,000원	
2.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22. 1. 4.>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대상 \ 급지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비고 1.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시·도소방공무원 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재외공무원	1·2·3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장·준장·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2,500달러	1,500달러	800달러	
	4·5·6·7급,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2,300달러	1,400달러	720달러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군인·군무원·의무경찰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상사·중사·하사, 3급부터 9급까지의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나군·다군	갑지역·을지역: 60,000원 (가산금: 서해 5개도서 6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 의무경찰	갑지역: 25,000원 을지역: 20,000원 (가산금: 서해 5개도서 4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			
	비고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불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			

	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개정 2021. 1. 5.>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 가지역: 39점 이상 · 나지역: 31점 이상 38점 이하 · 다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 라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미만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 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급구분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가지역 : 31점 이상 · 나지역 : 23점 이상 30점 이하 · 다지역 : 15점 이상 22점 이하 · 라지역 : 14점 이하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 사용	상시 급수 지원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1명		

	10명 이하	4명 이하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말한다),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한다)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과 접촉하는 지역

가 지 역	비무장지대
나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다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라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과 접촉하는 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적과 접촉하는 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개정 2016.1.8.>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본문 관련)

등 급	월 지 급 액
갑 종	60,000원
을 종	50,000원
병 종	40,000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6. 9. 2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 부문	갑종	을종	병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가. 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마.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검색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다.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방제선(「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방제선으로 한정한다)에 승무하여 해양오염 방제작업, 예방 및 단속활동, 선박점검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사체 검사)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연구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시약·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

		·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씨가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관리 등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각 부문	가.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나.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다.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마.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마약류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다.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감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바.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落盤: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절벽·바위산·낭떠러지에서 실족·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공기 급유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	가.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바.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해양경찰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경찰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자.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차.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림토목, 벌목·집재, 조림·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가공, 보호, 양묘 등의 산림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카.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

		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가유산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국가유산 연구 및 보존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항공기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항공기에 동승 근무하는 항공기 검사공무원 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에서 원전 관련 시설 및 방사능 방재분야 안전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파.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대응·복구·조사하는 사람 또는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실험, 연구 및 훈련을 하거나 취급 시설을 점검하여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따르는 사람 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터널 등 국도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너.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더.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에 따른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	사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타.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 협의, 안전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공무원 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위험기상·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관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구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머.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통관우체국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어.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불출석 피고인 등에 대한 소재확인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속영장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비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000원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위 표 제1호 갑종란의 나목
2. 위 표 제5호 갑종란
3. 위 표 제6호 갑종란의 가목·나목·라목 또는 마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개정 2026. 1. 2.>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

등 급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액
갑 종	가. 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다.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라.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7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 종	가.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레펠·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해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훈련한 사람 나.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다. 반기에 6회 이상 재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월봉급액의 5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병 종	가.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라.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바.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사.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아.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3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1.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해군(UDT, SSU)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특수잠수, 심해잠수) 중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2] <개정 2026. 1. 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단서 관련)

등 별	지 급 대 상	월 지 급 액
갑 종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0,000원 이하
을 종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6. 각 부문의 병종란 중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바.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40,000원 이하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개정 2026. 9. 2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 분야	기술정보 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경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과·정보통신경과·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과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 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중기(重機)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	가) 지급액 (1)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2)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3)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4)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5)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과학기술직군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중 6·7급 및 소방경·소방위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9급 및 소방장 이하에게는 월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20,000원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월 50,000원 이하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30,000원 이하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가) 지급액 (1)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3)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1)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25,000원 이하 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15,000원 이하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10,000원 이하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1)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직공무원	가)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나)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감정 및 연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원 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35,000원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원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국립법무병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가) 지급액 (1) 5급(5급 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2) 6급(6급 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나) 지급방법 (1)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6)의 해당자 (가)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나)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원 (2) 7)의 해당자 : 월 20,000원 (3) 8)의 해당자 (가)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나) 위관, 5급·6급, 전문군무경력관 가군·나군: 월 20,000원 (다) 부사관, 7급 이하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월 15,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가) 지급액 구분 / 월지급액 원장 /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 / 110,000원 부장 / 100,000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 8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	1)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	월 20,000원 (비고)

	수당	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월 60,000원
		3) 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다. 교직수당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	월 250,000원

		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월 50,000원 (비고)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월 150,000원
		3)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未感兒)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지급액) (1) 가)의 해당자: 월 120,000원 (2)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3) 다)부터 마)까지의 해당자: 월 50,000원 (4) 바)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월 200,000원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지급액) 호봉별 / 월 지급액 31 ~ 40 / 50,000원 22 ~ 30 / 45,000원 14 ~ 21 / 40,000원 9 ~ 13 / 35,000원 5 ~ 8 / 30,000원 1 ~ 4 / 25,000원 (비고)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위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40,000원
		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	(1) 겸임교장: 월 100,000원 (2) 겸임교감: 월 50,000원

		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교감	
		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가) 지급액: 월 40,000원 나) 교육경력 외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법」(법률 제6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총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는 가)의 지급액에 월 50,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금만 적용한다. 다) 지급방법: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월 30,000원
		10)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월 30,000원
3. 특수업무분야	가. 선박 및 항정 등 근무수당	1) 교육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관세청·국가유산청·기상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1)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2) 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3) 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4) 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5) 가산금 (가)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단정 등을 이용해서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가) 지급액

(1) 경찰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정 이상	172,000원	123,000원
경감	141,000원	101,000원
경위	133,000원	95,100원
경사	122,000원	87,800원
경장	112,000원	80,500원
순경	92,000원	65,800원
의무경찰	20,000원	20,000원

(2)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

계급	월 지급액
소방령 이상	65,000원
소방경	50,000원
소방위	37,000원
소방장	34,000원
소방교	30,000원
소방사	21,000원
전문경력관 가군	65,000원
전문경력관 나군	34,000원

(3)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급	32,000원 이하
7급	25,000원 이하
8급	2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

			원(시·도소방공무원인 함정장에게는 월 10,000원으로 한다)을 가산 지급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 및 가산금 나) 외에 추가로 월 7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가) 특수함승무원: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그 밖의 함정승무원: 월봉급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월봉급액의 55%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나. 항공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인 경찰·소방공무원과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 분</th><th>조종사</th><th>정비사·전탐사</th></tr><tr><td>경정, 소방령, 5급 이상</td><td>631,700원</td><td>313,400원</td></tr><tr><td>경감, 소방경, 6급(3년 이상)</td><td>505,300원</td><td>279,100원</td></tr><tr><td>경위, 소방위, 6급(3년 미만)</td><td>404,200원</td><td>217,800원</td></tr><tr><td>경사, 소방장,</td><td>323,400원</td><td>196,000원</td></tr></table>

7급			
경장, 소방교, 8급	258,600원	184,200원	
순경, 소방사, 9급	205,900원	174,200원	
전문경력관 가군	631,700원	313,400원	
전문경력관 나군	410,900원	230,900원	
전문경력관 다군	232,200원	179,200원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가)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월 50,000원 나) 6·7급 및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월 40,000원 다) 8·9급 및 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5) 삭제 <2024. 1. 5.>	
다. 외무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가) 지급액

	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 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및 준사관·부사관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군무원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7)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 9)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중인 사람, 잠수함 승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승무유지훈련을 한 사람 10) 비행부대 외의 부대	(1)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 3)의 해당자: 월 180,000원 이하 (4) 4)의 해당자: 월 270,000원 이하 (5)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 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수당에 준하는 금액 (7) 7)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 (8) 8)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 (9) 9)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 (10) 10)의 해당자: 월 8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기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계급·직무등급 /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 3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 50,000원 나)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6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월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계급·직무등급 / 월 지급 상한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 6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 4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 3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 / 150,000원

			하의 소방공무원
			(비고) 1.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4)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 400,000원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원) 의무직렬 공무원 / 약무직렬 공무원 / 간호직렬 공무원 지역별 / 자격 / 금액 가(군지역): 전문의 950,000, 일반의 850,000 나(다·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 850,000, 일반의 750,000 다(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전문의 750,000, 일반의 650,000 라(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 700,000, 일반의 600,000 약무직렬 공무원: 140,000 간호직렬 공무원: 100,000

		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나) 가산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의무경찰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국립법무병원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국립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약무직렬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월 50,000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	월 250,000원

		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월 100,000원
		5)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table>
<tr><td></td><td></td><td>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간호조무군무원을 포함한다)</td><td>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td></tr>
<tr><td></td><td>바. 특수직무수당</td><td>1)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영화·공연무대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d>가)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나) 6급(6급 상당 포함) 및 7급(7급 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다) 8급(8급 상당 포함) 이하: 월 20,000원 이하</td></tr>
<tr><td></td><td></td><td>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마) 경찰청 소속 경비부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td><td>(1) 가)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나) 해당자: 월 20,000원 이하
(3) 다)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4) 라) 해당자: 112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able><tr><th>출동시간</th><th>출동사건</th></tr><tr><td>06시부터 22시까지</td><td>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등 처리</td></tr><tr><td>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td><td>주요범죄 사건 등 처리</td></tr></table>(비고) 출동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마)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td></tr>
</table>

		상시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3)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나) 소속 장관이 가)의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공무원. 다만,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1)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2) 나)의 해당자: 월 30,000원 이하 (3) 가산금 소속 장관은 가)의 해당자 중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액·지급기준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130,000원 이하 나) 3급 및 4급: 월 115,000원 이하 다) 5급: 월 100,000원 이하 라) 6급 이하: 월 60,000원 이하
		5) 계호(戒護)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	(1) 지급액 월 1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한센병·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징벌·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나)의 지급대상자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전문경력관(전산업무담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가) 5급 이상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나) 6급 이하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월 30,000원 이하
		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	(1) 가)의 해당자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찰 공무원 및 철도경찰직 공무원과 형사법무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4급 이하의 과학기술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전문경력관

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라) 과학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마)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의 명을 받아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무,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와 「공소청법」

계급	월 지급액
4급 이상	200,000원
5급 이하 7급 이상	150,000원
8급 이하	100,000원

(2)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마)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형사법무직 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10)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지급액) 가) 고위공무원단: 월 100,000원 나) 3급 또는 4급: 월 90,000원 다) 5급: 월 80,000원 라) 6급(심사관): 월 60,000원 마) 6급이하(심사관보):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자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발령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1) 소방청과 소방기관,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화재조사 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근무자 중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시·도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	(1) 가), 나) 또는 마)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가산금 (가) 가)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라)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구조구급을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각각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의 해당자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나)의 해당자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나)와 (다)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

		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 업무담당자로 한정한다) 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라)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해양경찰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응급구조사 및 파출소 잠수·구조요원으로 한정한다) 마)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나 같은 법 제50조의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등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조정 및 지휘·통제·지원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	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원	
		1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서 공동위원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나)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월 600,000원 이하 다) 5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0원 이하 라) 6급(상당), 7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400,000원 이하 마) 8급(상당), 9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0원 이하
		13)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30퍼센트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월 360,000원
		15) 경찰청에서 검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이하
		16) 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17)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	월 50,000원

		원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	
		19)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40%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20)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일 16,000원을 지급하되, 월 1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2)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지급대상자 중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공항의 교통량과 업무 난이

<table>
<tr><td></td><td></td><td></td><td>도 등을 고려하여 (1)의 가산금 지급대상자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td></tr>
<tr><td></td><td></td><td>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td><td>가) 지급액: 월 80,000원
나) 가산금
(1) 소속 장관은 업무의 양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소속 장관은 동일한 직위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과 (2)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td></tr>
<tr><td></td><td></td><td>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독성 및 마약 분야의 감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약사 면허가 있는 공무원</td><td>월 200,000원</td></tr>
<tr><td></td><td>사. 중요직무급</td><td>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td><td>가) 지급상한액
<table><tr><th>지급대상</th><th>월 지급 상한액</th></tr><tr><td>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td><td>300,000원</td></tr><tr><td>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td><td>200,000원</td></tr><tr><td>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td><td>150,000원</td></tr><tr><td>6급(상당) 이하 공무원</td><td>100,000원</td></tr></table>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td></tr>
<tr><td></td><td>아. 우수대민공무원수당</td><td>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td><td>가) 지 급 액: 월 20만원
나)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td></tr>
<tr><td></td><td>자. 전문직무급</td><td>「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td><td>가) 지급액 및 근무기간 산정
(1) 지급액</td></tr>
</table>

근무기간	월 지급액		
	수석전문관	전문관	부전문관
1년 미만	310,000원	250,000원	165,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335,000원	280,000원	185,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400,000원	350,000원	245,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525,000원	460,000원	365,000원
4년 이상 7년 미만	680,000원	620,000원	515,000원
7년 이상	835,000원	780,000원	670,000원

비고

부전문관에서 전문관, 전문관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시 전문직무급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2) 근무기간 산정

(가) 근무기간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또는 부전문관으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채용을 포함한다)되어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 계산 시 포함되는 기간은 전문직무급 지급액의 근무기간 계산 시에도 합산한다.

나) 가산금

전문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위 가)에 따라 산출한 전문직무급 월 지급액에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의 계산에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 계산 시 포함되는 기간을 합산한다.

4. 재외직 분야

가. 재외근무수당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구분 / 계급·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4,102	4,339	4,510	4,701	4,938	5,162	5,343	5,533	5,723	5,96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544	3,746	3,893	4,046	4,237	4,440	4,591	4,754	4,916	5,12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	3,031	3,201	3,304	3,442	3,600	3,771	3,896	4,033	4,170	4,341

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공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665	2,813	2,893	3,011	3,147	3,294	3,403	3,520	3,641	3,787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463	2,599	2,666	2,774	2,899	3,033	3,131	3,240	3,350	3,484
6급, 4등급	2,261	2,384	2,440	2,539	2,650	2,772	2,861	2,959	3,058	3,181
7급, 3등급	2,097	2,209	2,254	2,345	2,446	2,558	2,638	2,730	2,819	2,932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구분 / 계급·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싱가포르 달러)	일본, 요코하마(엔)	고베, 나고야,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유로)
14등급	7,177	665,697	608,550	3,715	3,99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6,136	567,447	520,213	3,232	3,40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5,054	466,263	428,483	2,738	2,801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4,385	405,260	371,729	2,428	2,488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4,016	369,611	340,516	2,257	2,226
6급, 4등급	3,648	337,279	309,302	2,087	2,082
7급, 3등급	3,347	307,572	283,763	1,948	1,856

구분 / 계급·직무등급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535	4,690	4,718	4,899	37,77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869	4,000	4,022	4,178	32,201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180	3,333	3,307	3,433	26,466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766	2,898	2,877	2,985	23,08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524	2,646	2,624	2,724	20,998
6급, 4등급	2,307	2,416	2,397	2,487	19,166
7급, 3등급	2,103	2,202	2,185	2,266	17,473

구분 / 계급·직무등급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14등급	45,565	46,626	8,463	6,110	6,602	8,85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	38,841	39,745	7,215	5,214	5,631	7,555

13등급, 소장·준장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1,906	32,673	5,927	4,288	4,693	6,212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7,745	28,402	5,154	3,731	4,084	5,407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5,295	25,928	4,698	3,405	3,729	4,935
6급, 4등급	23,083	23,666	4,287	3,107	3,405	4,507
7급, 3등급	21,055	21,568	3,911	2,837	3,105	4,111

구분 / 계급·직무등급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다롄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74,955	32,168	33,59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49,137	27,500	28,716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122,516	22,957	23,97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직위)	106,535	19,913	20,79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97,129	18,241	19,047
6급 4등급	88,628	16,568	17,299
7급 3등급	80,846	15,201	15,872

구분 / 계급·직무등급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나, 댈러스, 필라델피아 (달러)	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달러)	호놀룰루 (달러)
14등급	4,748	4,975	5,149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4,084	4,279	4,42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공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395	3,556	3,674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969	3,107	3,21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735	2,861	2,954
6급, 4등급	2,498	2,615	2,698
7급, 3등급	2,308	2,413	2,488

비고

1.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따른다.
2. 위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 등급	1급	2급	3급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디(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 900달러 이하	월 600달러 이하	월 450달러 이하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부장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계급·직무등급 \ 감액(증액)율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장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감액(증액)률(%) = $\frac{나-가}{가} \times 100$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개정 2026. 1. 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지 급 대 상	기 준 호 봉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연구관·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나.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 이상: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다.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라.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경장·소방교 이상: 10호봉 나. 순경·소방사: 9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교감·원감·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나. 30호봉 이상: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라. 19호봉 이하: 18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대위: 8호봉 나. 중위: 7호봉 다. 소위: 3호봉 라. 준위: 11호봉 마. 원사: 1호봉 바. 상사: 7호봉 사. 중사: 9호봉 아. 하사: 10호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개정 2026. 9. 29.>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2. 외무공무원	6등급
3.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4. 지도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6.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7. 경호공무원	4급 이상
8.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9.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10. 교육공무원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실장·부장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11.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12.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4급 이상

비고

1.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의2] <신설 2026. 9. 22.>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제17조의2제4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액 산식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합계 − 25시간) × 초과근무보전수당 단가
초과근무 보전수당 단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4급 10호봉 봉급월액의 55퍼센트) × (1/209) × 150퍼센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삭제 <2011.1.1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9. 29.>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20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80,000원
8·9급(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75,000원
	하사			165,000원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교장·원장·교감·원감은 월

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실장·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3·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8.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소방공무원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411호, 2024. 3. 26., 일부개정]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 - 205 - 7048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 - 205 - 7292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044 - 205 - 7423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임용 ”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 전보 ”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 강임 ”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 복직 ”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사 ”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

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 시ㆍ도 ”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 소방간부후보생 ”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 경력경쟁채용시험 ”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삭제<2020. 12. 29.>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제11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18조(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제19조(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25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

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징계 절차)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ㆍ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ㆍ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4. 시ㆍ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32조(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 중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ㆍ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4조 및 제16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나 통보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한 자
2.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자

3.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

부칙 <제16768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감”은 “소방감”으로,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준감”으로, “지방소방정”은 “소방정”으로, “지방소방령”은 “소방령”으로, “지방소방경”은 “소방경”으로, “지방소방위”는 “소방위”로, “지방소방장”은 “소방장”으로, “지방소방교”는 “소방교”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경력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로 보고,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에 있는 시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절차 및 방법으로 보며,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교육훈련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소청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이 법에 따라 불복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 인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종료되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 취소 등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처분권자가 행한다.

제11조(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 ”을 “ 소방정 ”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을 “ 소방정 ”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를 “ 소방위 ”로, “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을 “ 소방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을 “ 소방준감 ”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을 “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으로 한다.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 ”을 “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 ”를 “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로 한다.

부칙 <제17766호,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628호,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11호,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총괄) 02 - 748 - 5121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역) 02 - 748 - 5127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 징계) 02 - 748 - 6818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진급) 02 - 748 - 5121
국방부 (인력정책과 - 임용) 02 - 748 - 5132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6. 4., 2017. 3. 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9. 1.]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개정 2011. 5. 24.>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11.]

제5조의2(전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 전군 ”(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장 복무 <개정 2011. 5. 24.>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3. 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2. 18., 2024. 1. 16.>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2. 18., 2017. 3. 21., 2018. 1. 16., 2020. 12. 22., 2024. 1. 16.>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20. 12. 22., 2024. 1. 16.>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
   나. 삭제<2016. 12. 20.>
   다. 제6조제7항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
   라. 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개정 2023. 10. 31.>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일과 후 6개월 이상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④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2017. 3. 21.>

⑤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1.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까지
2.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그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⑥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6. 20.>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개정 2012. 3. 21., 2014. 12. 30.>
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4장 보임(補任) <개정 2011. 5. 24.>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3.]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6. 2. 3.]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 2023. 10. 31., 2024. 2. 20., 2024. 2. 27., 2025. 3. 18., 2026. 2. 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2025. 3. 18. 법률 제20803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본조신설 2018. 1. 16.]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3. 21., 2024. 1. 16., 2026. 2. 3.>
1.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2024. 1. 16., 2024. 2. 20.>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ㆍ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2(예비장교후보생) ① 각군은 인력 운영상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 1. 4.>

②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 4.>

[본조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22. 1. 4.]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14. 12. 30., 2024. 1. 16.>

1.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의2. 다음 각 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 경우 기본병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③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 1. 4.>
② 각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신설 2022. 1. 4.>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 4.>
[본조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22. 1. 4.]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0.>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개정 2022. 12. 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개정 2012. 3. 21.,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12. 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9. 1.>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 21., 2026. 2. 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어진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7. 3. 21.]

제17조(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1., 2023. 10. 3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0. 31.>

[전문개정 2011. 5. 24.]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8. 4.>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군법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6. 2. 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6. 2. 3.>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6. 2. 3.>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3.>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2. 3.>

[본조신설 2023. 10. 31.]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3. 10. 31.>]

제17조의3(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3. 10. 31.>]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3.>

[전문개정 2011. 5. 24.]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 7. 14., 2017. 3. 21.>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개정 2011. 7. 14.>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14., 2019. 4. 23., 2026. 2. 3.>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1. 7. 14.]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3.>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3.>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3.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4. 3. 11.>

[전문개정 2011. 5. 24.]

제5장 능률 <개정 2011. 5. 24.>

제22조(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3조의2(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6장 진급 <개정 2011. 5. 24.>

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

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3.>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3(근속진급) ①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된 중사나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4(명예진급) 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③ 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행한다.<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12. 12. 18., 2026. 2. 3.>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 삭제 <2011. 5. 24.>

제28조(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18조에 따른 합참의장이나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 이상 진급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이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③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④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0조(특별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5. 3. 18.>
②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8.>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개정 2025. 3.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3. 18.>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25. 3. 18.]

제30조의2(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2조(진급 낙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22. 12. 13.]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7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1. 5. 24.>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③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4. 13., 2026. 8. 4.>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임용권자등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때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의 전역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수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1. 5. 24.]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ㆍ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1. 7. 14.>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9조(전역 보류) 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도달한 영관급 장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정밀장비 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4. 정책 관리, 전산, 연구개발, 특수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도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 연령정년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전역할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복무 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가산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⑥ 포로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 보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24.]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 6. 11., 2018. 1. 16., 2019. 1. 15., 2024. 2. 20., 2025. 3. 18.>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 1. 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제42조(예비역 편입) ①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5. 1. 7.>

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1. 7.>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 7.>

④ 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된다. <신설 2025. 1. 7.>

[전문개정 2011. 5. 24.]

제43조(전역 및 제적의 권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만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1. 5. 24.>

제44조(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5조 삭제 <2015. 9. 1.>

제46조 삭제 <2015. 12. 29.>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①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2. 3.>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6. 2.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2. 3.>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2. 3.>

[전문개정 2011. 5. 24.]

제46조의3 삭제 <2011. 5. 24.>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ㆍ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10. 31.>

⑥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0. 31.>

[본조신설 2012. 12. 18.]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가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신이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일한 국가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11.]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47조 삭제 <2015. 12. 29.>

제47조의2 삭제 <2015. 12. 29.>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① 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굳게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거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服制)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1.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행방불명되었을 때
3.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2016. 12. 20., 2019. 1. 15., 2021. 4. 13., 2024. 12. 3., 2025. 3. 18.>

1.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2.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 6. 22., 2016. 1. 19.>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
   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70
   나.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2. 제1항제2호(공무수행 중 행방불명되어 휴직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군인이 제3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

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6. 12. 20., 2021. 4. 13., 2024. 12. 3.>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 제48조제3항제6호: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4. 3. 11., 2018. 1. 16., 2021. 4. 13., 2025. 3. 18.>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문개정 2011. 5. 24.]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
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
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본조신설 2022. 12. 13.]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12. 30., 2017. 3. 21.>

1. 장교, 준사관의 소청 심사: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부사관의 소청 심사: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 병의 소청 심사: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1조의3 삭제 <2015. 12. 29.>

제51조의4 삭제 <2015. 12. 29.>

제9장 보수 <개정 2011. 5. 24.>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4. 12. 30.>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개정 2024. 12. 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전문개정 2011. 5. 24.]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5. 6. 22.]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0. 2. 4.>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 2. 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⑥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⑦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 2. 4.>
⑧ 그 밖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5. 6. 22.]
[제목개정 2020. 2. 4.]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5. 1. 7.>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ㆍ의결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7.>

⑧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 7.>

[본조신설 2020. 2. 4.]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3제6항 또는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①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장 징계 <개정 2011. 5. 24.>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제56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권자는 제56조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③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개정 2021. 4. 13.>

⑤ 징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위탁한 후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4. 6. 11.]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4.>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2. 4.>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1. 5. 24.]

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 3. 21.>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개정 2017. 3. 21.>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1.>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3.>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6. 2. 3.>
[본조신설 2015. 9. 1.]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2014. 6. 11., 2015. 9. 1.>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2. 4.>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 9. 1., 2020. 2. 4.>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1., 2020. 2. 4.>
⑤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1.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짜
2.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그 날짜를 예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
4. 심의대상자가 심의 전 및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심의대상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및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등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7. 그 밖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 2020. 2. 4.>

⑦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개정 2014. 6. 11., 2015. 9. 1., 2020. 2. 4.>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31.>

[전문개정 2011. 5. 24.]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군에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 인권담당 군법무관 ”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2020. 2. 4.>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군기교육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⑥ 삭제<2020. 2. 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20. 2. 4.]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공소청과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본조신설 2015. 9. 1.]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개정 2014. 6. 11.>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개정 2014. 6. 11., 2017. 3. 21.>

⑤ 삭제<2020. 2.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4. 6. 11.>

[전문개정 2011. 5. 24.]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

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3.>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6. 2. 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6. 2. 3.>

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5. 9. 1., 2020. 2. 4., 2026. 2. 3.>

[전문개정 2011. 5. 24.]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2. 3.>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6. 11., 2024. 12. 3.>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6. 11.]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장 보칙 <개정 2011. 5. 24.>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1., 2024. 12. 3.>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신설 2024. 12. 3.>

④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2024. 12. 3.>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7. 3. 21.]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2026. 2. 3.>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2. 3.>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신설 2026. 2. 3.>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범위·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환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6. 2. 3.>

[본조신설 2014. 12. 30.]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3.]

제63조(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본조신설 2011. 7. 14.]

제65조 삭제 <2011. 5. 24.>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 2. 3.>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1. 19.]

제12장 벌칙 <신설 2023. 10. 31.>

제67조(벌칙) 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부칙 <제1006호,1962. 1. 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상실) 종전의 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본법에 의하여 보임 및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중 본법 제19조와 제21조에 규정한 직위에 있는 장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에 있어서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당해 임시진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간부후보생으로 있거나 간부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 및 장기복무를 지원한 병 또는 하사관후보로 있는 자는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연간에 한하여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대위, 소령 및 중령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단축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연간에 한하여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위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을 2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되기 전에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계급정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1회의 진급선발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 전역을 보류한다.

제10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10년이상 복무중인 장교는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기타 장교에 대한 복무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임시진급한 장교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1955년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육군의 군의관장교와 법무장교 및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는 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개정 1962ㆍ3ㆍ26>

제12조 (군속에 대한 징계) 본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군속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2、3、26]

부칙 <제1016호,1962. 1. 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1962. 3. 2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1962. 5. 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호,1963. 9.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2년 1월 25일 당시 임시진급한 육군의 치의장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속 육군에 복무중인 자는 그 임시진급된 날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전역권자는 육군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8연간은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에 달한 대령이하의 장교중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1962년 1월 25일이후에 임명되어 이 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해군 및 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임명된 육군의 병과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노무단장교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노무단에 근무하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에 준용한다.

부칙 <제1576호,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호,196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호,1966. 10. 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호,1968.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5호,1971. 1.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연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ㆍ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456호,1973.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군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ㆍ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626호,1973. 10.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ㆍ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ㆍ병기과ㆍ항공과ㆍ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27호,1974.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9호,1976.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호,1980. 1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병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임기기산) 이 법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진급최저복무기간의 특례) 1981연도에 소령 또는 대위로 진급될 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69호,1981.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97호,198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3802호,198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참모총장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85호,1989. 3.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1세, 중령은 48세, 소령은 44세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8년, 중령은 25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9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령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0년, 중령 및 소령은 9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1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2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각각 존속시켜 적용한다.

제6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사는 이 법에 의한 이등 상사로 본다.

제7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에서 방공포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 방공포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참모총장의 임기 기산일) 이 법 시행당시의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진급최저근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은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ㆍ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6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으로 한다.<신설 1989. 12. 30., 1992. 12. 2.>

제10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58호,1989.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녀군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녀자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녀군의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녀군과에 속한 녀자군인(병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 및 특수병과로 분류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녀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임기간동안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군종장교로 임용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⑤(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이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부칙 <제4374호,1991.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

인 자로 본다.

③(월남귀순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장교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월남귀순용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06호,1992. 12.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과 공군의 조종병과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되기 위하여 무관후보생과정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 및 병역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 (2)의 개정규정에 관한 해군의 기본병과 분류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역보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행정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 (항공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항공과의 병과장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단서중 " 3년 " 을 "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 " 으로 한다.

부칙 <제4685호,1993. 12. 31.>(병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 병역법 제49조의 " 를 " 병역법 제57조의 "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 병역법 제49조 " 를 " 병역법 제57조 " 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 병역법 제49조 " 를 " 병역법 제57조 " 로, "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 " 를 "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 " 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 ” 을 “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 ” 을 “ 법무ㆍ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 ” 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 병역법 제49조 ” 를 “ 병역법 제57조 ” 로 한다.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제4695호,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정년 및 제26조제1항의 원사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교정년과 제26조제1항의 장교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위로부터 대위로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4세, 중령에 대하여는 50세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5세, 중령에 대하여는 51세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 및 하사관의 연령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준사관 및 원사에 대하여는 54세, 상사에 대하여는 51세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상사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근속정년제의 한시적 적용) ①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1년, 중령에 대하여는 27년, 소령에 대하여는 21년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2년, 중령에 대하여는 28년, 소령에 대하여는 22년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3년, 중령에 대하여는 29년, 소령에 대하여는 23년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4년, 중령에 대하여는 30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31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의 근속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3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제8조제1항제2호(대위이하의 근속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대령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령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령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사관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등상사는 원사로, 이등상사는 상사로 본다.

제6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6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7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ㆍ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제7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장교진급예정자(대위를 제외한다)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원사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39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의 항법과의 군인은 조종과에, 관제과의 군인은 항공통제과에,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 운영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방공포병과에, 항공정

비과 및 무장과의 군인은 항공무기정비과에, 통신과의 군인 및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정비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통신과에, 보급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보급수송과에, 경리과의 군인은 관리과에, 보안과의 군인은 헌병과에, 화학과의 군인은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안전과의 군인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녀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군의 전자통신과ㆍ기상과 및 전산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과ㆍ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중인 군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휴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 이등상사 "를 " 상사 "로, " 일등상사 "를 " 원사 "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 일등상사 "를 " 원사 "로, " 이등상사 "를 " 상사 "로 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060호,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267호,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국내 군외의 교육기관에서 6월이상의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통신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행정과의 장교는 항해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고, 공군의 전자통신과 및 전산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속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해군의 함정과의 장교는 항해과 또는 기관과로, 관리분석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 또는 항해과로 각각 재분류한다.

제4조 (교육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교육과 장교중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임관된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 장교로 보며, 1983년 1월 1일이후에 임용된 장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한다.

제5조 (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행정과의 병과장과 공군의 전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임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공군의 정보통신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징계사건의 항고제기기간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5703호,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②(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016호,1999. 9.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7호,1999. 9. 7.>(국방대학교설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 국방대학원 ” 을 “ 국방대학교 ” 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6290호,2000.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②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 하사관 ” 을 각각 “ 부사관 ”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 하사관후보생 ” 을 “ 부사관후보생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④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5항중 “ 하사관 ” 을 각각 “ 부사관 ” 으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 장기복무하사관 ” 을 “ 장기복무부사관 ” 으로 한다.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 하사관후보생 ” 을 각각 “ 부사관후보생 ” 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제2호중 “ 하사관 ” 을 각각 “ 부사관 ” 으로 한다.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 을 “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 으로, “ 하사관후보생 ” 을 “ 부사관후보생 ”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 하사관(하사관) ” 을 “ 부사관(부사관)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하사관 ” 을 각각 “ 부사관 ” 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 하사관후보생 ” 을 “ 부사관후보생 ” 으로,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 하사관 ” 을 각각 “ 부사관 ” 으로 한다.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제3조 (병역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은 이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제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91호,2000.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 ” 를 “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 ” 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6719호,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군의 보병병과중 방공보병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1)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군 방공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육군 방공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부칙 <제6748호,2002.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08호,2002. 12. 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5호,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9호,2004. 12. 31.>(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중 " 단기사관학교 " 를 각각 " 육군3사관학교 " 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 단기사관학교과정 " 을 " 육군3사관학교과정 " 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428호,2005. 3. 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 파산자 " 를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로 한다.

1*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29호,2005.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2호,2006. 3.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2호,2006. 4.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영창처분은 이 법 시행당시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76호,2006.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4호,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재임용심사제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현재 제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교수 중 56세를 초과한 대령과 53세를 초과한 중령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교수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합동참모의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법률 제8134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④(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2007년 3월 29일 이후 중장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32호,2007. 12. 21.>

제16조 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제9293호,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96호,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7호,2010.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소장 이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 또는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부터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0703호,2011. 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 중인 공군의 조종과 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제3조(전역지원에 관한 특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하고 있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 중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임용된 날부터 5년에서 9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 현역 ”을 “ 현역 및 예비역 ”으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 ”를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 ”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 직업보도교육 ”을 각각 “ 전직지원교육 ”으로 한다.

부칙 <제10824호,2011. 7.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8호,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0호,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학금 지급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령인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57세로, 1년을 초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58세로, 2년을 초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59세로, 3년을 초과한 날부터는 60세로 한다.

부칙 <제11560호,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의2ㆍ같은 조 제7항제6호, 제7조제1항제4호 단서ㆍ같은 항 제7호,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2조제1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46조의4, 제51조의4,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의 초임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 환수권자의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사

람에 대하여 그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의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육군의 경리과	육군의 재정과
해군의 항해과, 기관과 및 정보과	해군의 함정과
해군의 경리과	해군의 재정과
공군의 항공무기정비과 및 보급수송과	공군의 군수과
공군의 관리과	공군의 재정과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해군의 기관과 및 정보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육군의 재정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재정과의 병과장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사람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의 경리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경리과의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1849호,2013. 6. 4.>(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준사관(准士官) " 을 " 준사관(準士官) " 으로 한다.

⑨부터1(까지 생략

부칙 <제12231호,2014. 1.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3호,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3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이 법 시행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병과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과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747호,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04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소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2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친 교수등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52호,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신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3505호,2015. 9.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1호,2015. 12. 29.>(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775호,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 중의 봉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180호,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1호,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09호,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장관급(將官級)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 장관급(將官級)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를 “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로, “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 ”를 “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 장성급부대장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 장관급부대장 ”을 “ 장성급부대장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 장관급부대장 ”을 “ 장성급부대장 ”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 장관급부대장 ”을 “ 장성급부대장 ”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 장관급 ”을 각각 “ 장성급 ”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장관급(將官級)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 장관급 ”을 각각 “ 장성급 ”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 장관급(將官級)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 장관급 ”을 각각 “ 장성급 ”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 장관급(將官級)장교 ”를 “ 장성급(將星級) 장교 ”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장관급(將官級)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장관급(將官級)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1(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45호,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224호,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선발공고에 따라 선발하는 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6354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8호,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54조의3제3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 "을 " 미결수용실 "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 구류 및 영창 "을 " 구류 "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 영창처분 "을 각각 " 군기교육처분 "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 영창처분 "을 각각 " 군기교육처분 "으로 한다.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 "을 "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 "로 한다.

부칙 <제17684호,2020. 12. 22.>(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 "을 " 따른 임기제부사관 "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을 "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 "로 한다.

부칙 <제18000호,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56조의2 및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중에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680호,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078호,2022. 1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5호,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

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

부칙 <제19787호,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치료 중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18호,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1호,2024. 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55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인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38호,2024.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휴직기간을 계산한다.

제3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39호,2025.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03호,2025.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ㆍ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19호,202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26조제6항, 제58조의2제3항, 제60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ㆍ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임기제부사관의 경우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상품의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57호,2026. 8. 4.>(형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0일

5.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 9. 29.>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조사ㆍ수사 자료”를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한다.

2$ 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법무부 (검찰과) 02 - 2110 - 4210

제1장 총칙 <개정 2009. 11. 2.>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 5. 9.>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8., 2022. 5. 9.>

[전문개정 2009. 11. 2.]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장 대검찰청 <개정 2009. 11. 2.>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3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4조(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5조(검찰연구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6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정보통신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장 고등검찰청 <개정 2009. 11. 2.>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0조(직제)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개정 2009. 11. 2.>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2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4조(부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09. 11. 2.]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과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제4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5장 검사 <개정 2009. 11. 2.>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 후 7년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면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8.]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18.>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 7.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11. 7. 18.>
1. 검사 3명. 다만, 제28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검사를 제외한 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1. 7. 18.>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 7. 18.>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7. 18.>

[전문개정 2009. 11. 2.]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8.]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8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8. 3. 20.>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0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2조 삭제 <2004. 1. 20.>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전문개정 2009. 11. 2.]

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신설 2017. 3. 14.>
[전문개정 2009. 11. 2.]

제6장 검찰청 직원 <개정 2009. 11. 2.>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개정 2020. 2. 4.>

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4.>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2. 4.>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전문개정 2009. 11. 2.]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비서관은 검찰수사서기관이나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ㆍ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2. 4.>

1.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전문개정 2009. 11. 2.]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검찰청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개정 2009. 11. 2.>

제53조 삭제 <2011. 7. 18.>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칙 <제3882호,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의 차장검사 및 사무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 제27조 " 를 " 제36조제1항 " 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 제27조제1항 " 을 "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 제25조 " 를 제43조 " 로 한다.

부칙 <제4043호,198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총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검찰청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약등 수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체받아 검찰청직원으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급 상당의 검찰청직원의 사무에 종사하고 사법경찰관이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제4395호,1991. 11.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3호,1993. 3. 10.>
제7조 제2항중 " 고등검찰관인 검사 " 를 " 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 " 로 한다.

부칙 <제4930호,1995. 1. 5.>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6호,1995.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1호,1995.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3호,1997. 1. 13.>
제6조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제5430호,1997.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5호,2003. 2. 4.>(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 (검사의 임명 및 보직) " 을 "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 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7078호,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 검사장 " 을 "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 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 을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 으로 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 검사장 ” 을 “ 고등검찰청검사장 ” 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 를 “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 ” 로 한다.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 관할검찰청검사장 ” 을 각각 “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 으로 한다.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 검사장 ” 을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 으로 하고, 동조중 “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 을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 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 검사장 ” 을 “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 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 소속검찰청검사장 ” 을 “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 ” 으로 한다.

부칙 <제7796호,2005. 12. 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 ” 을 “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 ” 을 “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 을 “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 으로 한다.

제45조중 “ 관리관、검찰이사관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④내지 <68> 생략

부칙 <제8494호,2007. 6. 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7호,2007. 12. 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임용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44호,2009. 5.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5호,2009. 11.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8호,2011. 7. 18.>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3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휴직 기간 단축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44조의2 중 “ 대통령실 ”을 각각 “ 대통령비서실 ”로 한다.

<1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82호,2017.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2호,2018. 3. 20.>(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호 중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6908호,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6호,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1호,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을 "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으로 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 「검찰청법」 ”을 “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 「검찰청법」 ”을 “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교육부 (대학정책과 - 대학교원) 044 - 203 - 6938
교육부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원) 044 - 203 - 6481

제1장 총칙 <개정 2011. 9.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12. 12. 11.>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2015.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5. 3. 27., 2021. 7. 20.>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⑧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⑨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⑩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⑪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11. 9. 30.]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정 2011. 9. 30.>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30.]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 2018. 12. 18., 2020. 1. 29., 2025. 3. 18.>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장 자격 <개정 2011. 9. 30.>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11. 9. 30.]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11. 9. 30.]

제4장 임용 <개정 2011. 9. 30.>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5., 2011. 5. 19., 2015. 3. 27., 2021. 3. 23., 2022. 10. 18.>

1. 삭제<2012. 1. 26.>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3. 14.]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본조신설 2012. 1. 26.]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본조신설 2018. 12. 18.]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21.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2022. 10. 18.>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1. 3. 23.>
② 임용권자 및 교육감 등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③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6. 1. 27.>]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신설 2025. 3.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서류 등의 검증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8.>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6. 1. 27.>]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7. 11. 28.>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 1. 27.>]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8.]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5. 3. 18.>]

제11조의6(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18.>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29.>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0. 1. 29.>
⑤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0. 1. 29.>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2020. 1. 29.>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2020. 1. 29.>
⑧ 제5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8., 2020. 1. 29.>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5에서 이동 <2025. 3. 18.>]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

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22. 10. 18.]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9. 30.]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교수ㆍ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신설 2020. 12. 22., 2022. 10. 18.>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20. 12. 22.]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

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9조(겸직 금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1. 9. 30.]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14., 2011. 7. 21., 2017. 11. 28.,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1. 3. 23.>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본조신설 2002. 12. 5.]

제20조(인사교류) ①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2. 12. 13.>
[전문개정 2011. 9. 30.]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ㆍ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9. 30.]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3조(인사기록)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전문개정 2011. 9. 30.]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11.>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개정 2014. 6. 11.>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26조(조교의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 7. 21.>

② 삭제<2011. 7. 21.>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11. 7. 21.]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전문개정 2011. 9. 30.]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2012. 3. 21.>
③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1.>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신설 2015. 3. 27.>
⑤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 3. 21., 2015. 3. 27.>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2015. 3. 27.>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을 제외한 교장ㆍ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ㆍ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5. 3. 27.>
⑨ 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5. 3. 27.>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12. 3. 21.]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2. 12. 11., 2015. 3. 27.>

1. 교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5. 3.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ㆍ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3. 21., 2015. 3. 2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ㆍ원장(이하 "공모 교장ㆍ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1.>

⑥ 공모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ㆍ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ㆍ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1.>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본조신설 2011. 9. 30.]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1. 9. 30.>]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9조의3에서 이동 <2011. 9. 30.>]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전문개정 2011. 9. 30.]

제31조(초빙교원) ①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敎授)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초빙교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8. 12. 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26., 2021.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18.>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9. 30.]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②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9. 30.]

제5장 보수 <개정 2011. 9. 30.>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30.]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개정 2012. 3. 21.>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6장 연수 <개정 2011. 9. 30.>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11. 9. 30.]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0조(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2. 10. 18.>
1.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9. 30.]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7장 신분보장 · 징계 · 소청 <개정 2011. 9. 30.>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9. 24.>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12. 1. 26.]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2022. 10. 18.>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삭제<2013. 12. 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2. 1. 26.>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4., 2016. 1. 27., 2018. 3. 20., 2019. 8. 20., 2021. 3. 23., 2022. 10. 18.>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ㆍ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2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2. 3. 21., 2012. 12. 11., 2022. 12. 13.>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충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의 고충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21. 3. 23., 2022. 12. 13.>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
2.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고충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2022. 10. 18., 2025. 8. 14.>

1. 삭제<2022. 10. 18.>
2. 삭제<2022. 10. 18.>
3. 삭제<2022. 10. 18.>
4. 삭제<2022. 10. 18.>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본조신설 2015. 3. 27.]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개정 2016. 1. 27., 2019. 8. 20., 2023. 4. 11.>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 3. 27., 2021. 3. 23.>

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9. 30.]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개정 2011. 9. 30.>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①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

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1. 7. 21.>

③ 제2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7. 21.>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4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①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래 소속 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개정 2019. 8. 20., 2024. 3. 19.>

③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 3. 23.>

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9. 30.]

제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신설 2012. 12. 11.>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

[종전 제58조는 제62조로 이동 <2012. 12. 11.>]

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부교육감이 2명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2. 11.]
[종전 제59조는 제63조로 이동 <2012. 12. 11.>]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②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2. 12. 13.>
[본조신설 2012. 12. 11.]
[제목개정 2022. 10. 18.]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개정 2019. 8. 20., 2024. 3. 19.>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0. 18.>
[본조신설 2012. 12. 11.]

제10장 벌칙 <개정 2012. 12. 11.>

제62조(벌칙)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6. 11., 2019. 4. 23.>
④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8조에서 이동 <2012. 12. 11.>]

제63조(과태료) ①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6. 11., 2021. 3. 23.>
② 제1항의 과태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9조에서 이동 <2012. 12. 11.>]

부칙 <제3458호,1981. 11.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호중 " 교육공무원법 제16조 " 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로 한다.

제54조의3 제1항제3호중 "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 " 를 " 국가공무원법 제49조 " 로 한다.

제58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는 " 임면권자 " 로 본다.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로 한다.

제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 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 교육공무원법 제16조 " 를 각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로 하고, 동법 부칙 제2항중 "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호 " 를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 로 한다.

부칙 <제3953호,1987. 11. 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9호,1988. 4. 6.>(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교육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까지 시、군교육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시、군교육장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 교육감、교육장、 " 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 군 " 을 " 군 및 자치구 " 로 한다.

제9조 중 " 교육장、 " 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 교육감 " 을 "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 " 으로 한다.

제29조 의 제목 " (교육감、장학관등의 임용) " 을 " (장학관등의 임용) "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 교육감、교육장、 " 및 동조제2항중 " (교육감을 제외한다) " 와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 교육장란을 삭제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 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04호,199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4347호,1991. 3. 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348호,1991. 3.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총장ㆍ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부칙 <제4376호,1991. 5. 3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를 삭제한다.

제53조 제4항중 " 제42조제2항 및 제50조 " 를 " 제42조제2항ㆍ제50조 및 제76조 " 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620호,1993.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841호,1994.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5호,1995. 12. 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8호,1996. 8.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7호,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③(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 지방소방공무원 " 을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 지방소방공무원 " 을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 으로 한다.

부칙 <제5717호,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중 생년월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퇴직된다.

1. 1934년 2월 28일이전인 자 : 1999년 2월 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 1999년 8월 31일

제4조 (명예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생년월일이 1937년 9월 1일부터 1942년 8월 31일까지인 자가 2000년 8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칙 <제6211호,2000. 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본문, 제22조,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본문,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0호,2002. 8.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1호,2002.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2호,2003. 7.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확보된 날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7120호,2004. 1. 29.>(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223호,2004. 10.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353호,2005.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54호,2005. 1. 27.>(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60호,2005. 1. 27.>(지방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 ”을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중 “ 동법 제65조의3제1항 ”을 “ 동법 제65조의4제1항 ”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537호,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거사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대학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98호,2007. 7.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8호,2007. 7. 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5호,2007. 8.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생략
3)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 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 으로 한다.
3!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23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89호,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58호,2010. 4.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634호,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 등 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를 “ 교수、부교수 、조교수 ”로 한다.

제8조 중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 ”를 “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 ”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 전임강사、조교 ”를 각각 “ 조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 전임강사、조교 ”를 “ 조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 “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868호,2011. 7.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5호,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6호,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초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빙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력은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초빙교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공모 교장은 이 법에 따른 공모 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절차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의 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1213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1381호,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82호,2012. 3. 21.>(유아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 종일제를 ” 을 “ 방과후 과정을 ” 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1396호,2012. 3. 21.> (지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중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 를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 으로 한다.

부칙 <제11527호,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인 사람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 을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 을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 ” 으로 한다.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 「교육공무원법」 제9조 ” 를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 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 ” 을 “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로 한다.

제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를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로 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각각 " 교육부 "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 교육부차관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 교육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각각 " 교육부 "로 한다.

2%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1호,2013. 12. 30.>

이 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32호,2014. 1.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2755호,2014. 6. 1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전단 중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 "을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

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를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3221호,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7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3819호,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039호,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 보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22호,2018. 3. 20.>(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523호,2018. 3. 20.>(공무원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2호 중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를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7조 생략

부칙 <제15553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949호,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9호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1항 및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제1호는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2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6호,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임ㆍ난임의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71호,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7호,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298호,2021. 7. 20.>(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 교육부 "를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로 한다.

부칙 <제18455호,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90호,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5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부칙 <제19065호,2022.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41호,2023. 4. 11.>(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0377호,2024. 3. 19.>(지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0783호,2025.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08호,2025.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57호,2026. 8. 4.>(형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 9. 29.>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⑬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개정 2011.9.30>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기 준 / 직 명	자 격 기 준
장학관·교육연구관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장학사·교육연구사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이 표의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사과정을, "전문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과정과 종전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
2. 특수지 근무를 위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경력으로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갈음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별표 2] <개정 2011.9.30>

가산점의 종류(제11조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는 제외한다)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3.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 과목과 부전공 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사람
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4호, 2022. 3. 15., 일부개정]

경찰청 (감사담당관) 02 - 3150 - 042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2. 1. 2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중징계 ” 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 경징계 ” 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 중앙징계위원회 ” 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 보통징계위원회 ” 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 경찰기관 ” 이라 한다)에 둔다.<개정 2017. 7. 26., 2018. 3. 30., 2020. 12. 31.>

[전문개정 2012. 1. 26.]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 징계등 ” 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1.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ㆍ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2. 의무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③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

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에서 제외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6.>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의결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6. 16., 2022. 3. 15.>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0. 6. 16.>
[전문개정 2013. 10. 22.]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22.]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 6. 16.>
②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2. 3. 1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0. 6. 16., 2022. 3. 15.>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 6. 16., 2022. 3. 15.>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20. 6. 16., 2022. 3. 1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0. 6. 16., 2022. 3. 15.>
[전문개정 2012. 1. 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6. 16.>]

제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징계등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 6. 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6. 16.>]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10. 22.]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2.>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3. 10. 22.>

[전문개정 2012. 1. 26.]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3. 10. 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등 심의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 이를 전달하게 하고,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나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 6. 16.>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개정 2013. 10. 22., 2019. 8. 6., 2022. 3. 15.>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에 대한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5.>

1. 제5조제4항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신설 2022. 3. 15.>

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3. 15.>

[전문개정 2012. 1. 26.]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15.]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16.>

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다시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할 때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6.>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 6. 16.>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0. 6.

16.>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보충 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전문개정 2012. 1. 26.]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20조(보고 및 통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3. 15.]

부칙 <제5095호,1970.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9호,1974. 4.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1975ㆍ12ㆍ31>

부칙 <제7906호,1975. 12. 31.>(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례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징계령의 일부개정) 1974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7,119호 경찰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8138호,1976. 5.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9호,1978. 4. 24.>(소방공무원징계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 을 " 경찰공무원 " 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중 " 소방서 " 를 삭제한다.

부칙 <제11128호,1983. 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3호,1987. 12. 31.>(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 경찰종합학교, 경찰서 " 를 "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 " 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2555호,1988. 12. 19.>(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437호,1991. 7.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요구 및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신청된 징계사건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136호,1996. 8. 8.>(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경찰청에 ” 를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 로 한다.
제4조제3항중 “ 경찰청 ” 을 각각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9조제1항중 “ 경찰청장 ” 을 각각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단서중 “ 해양경찰서 ” 를 각각 “ 해양경찰서, 정비창 ” 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 경찰청ㆍ지방경찰청 ” 을 “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을 제외한다)의 수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⑬내지1(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620호,1999. 12. 28.>(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경찰병원 ” 을 “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9616호,2006.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4호,2007. 9. 20.>(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중앙경찰학교 ” 를 “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 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166호,200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42호,2009. 11. 2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경찰종합학교 " 를 " 경찰교육원 " 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22201호,201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59호,2010. 10. 2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을 " 경찰병원 " 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3554호,201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04호,2013.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징계등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 <제24831호,2013. 11. 5.>(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해양경찰학교 "를 " 해양경찰교육원 "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 경찰기관 "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 해양경찰서 "를 " 해양경비안전서 "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을 각각 " 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을 "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을 "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 해양경찰청 "을 " 국민안전처 "로, " 해양경찰청장 "을 " 국민안전처장관 "으로 한다.

<25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 전투경찰대 ”를 각각 “ 의무경찰대 ”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215호,2017. 7. 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 경찰기관 ”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 해양경비안전서 ”를 “ 해양경찰서 ”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 경찰청장 ”을 각각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을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를 “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 국민안전처 ”를 “ 해양경찰청 ”으로, “ 국민안전처장관 ”을 “ 해양경찰청장 ”으로 한다.

⑨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8760호,2018. 3. 3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을 “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0020호,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3호,2020.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6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 지방경찰청 ”을 각각 “ 시ㆍ도경찰청 ”으로 한다.

④부터4(까지 생략

부칙 <제31351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 ”를 “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 ”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2534호,2022.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22>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 사유			
3.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직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 297㎜[백상지 80g/㎡]

■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3. 15.>

확인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1. 인적사항	(현재) (비위행위 당시)	(현재) (비위행위 당시)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포함)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의 불법체포·불법감금 및 폭행·가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210㎜×297㎜[백상지 80g/㎡]

■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6.>

출석 통지서

1.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2. 출석 이유	
3.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4.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청인

귀하

- 자 르 는 선 -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9. 8. 6.>

의견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견	
징계등 면제 사유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15.>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1. 징계등 심의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2. 의결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3.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등을 기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청인

210㎜× 297㎜[백상지 80g/㎡]

■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22>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과 같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또는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직인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예규 제661호, 2026. 9. 1., 일부개정]

경찰청(감사담당관)02 - 3150 - 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업무매뉴얼"이란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매뉴얼(현장매뉴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경고"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6. "주의"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 "징계등"이란 징계 또는「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말한다.
8. "징계의결등"이란 징계 의결 또는「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말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5의2. 다른 사람의 의무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무위반행위가 발견된 때

6.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7.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때

제5조(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 감독책임 범위)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다만, 의무위반행위가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된 경우의 감독책임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7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성 관련 비위 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 및 제125조의 폭행ㆍ가혹행위

11.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9조(심의예정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각 징계등 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순서에 따라 심의 순서를 정한 뒤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예정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안이 유사한 징계등 사건을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는 때
2.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부터 심의 순서 변경 요청이 있는 때
3. 기타 징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제10조(주심위원의 지정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별로 위원의 성명 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건의 성격, 위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주심위원에게 주심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징계등 의결요구서 등 사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심위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주심 사건에 관하여 다른 위원의 심문에 앞서 징계의결요구 내용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④ 주심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변호인 등의 선임) ①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①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경찰 주재관 징계) ① 경찰기관의 장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사실이 재외공관 주재관 근무 당시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의

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등이 집행된 경우 그 사실을 집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적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부칙 <제417호,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악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경찰의장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허위보고등 금지) 감찰첩보를 허위ㆍ조작 보고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424호,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별표 9, 별표 10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②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강등처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상 벌 평 점 기 준 표

<비고>

1. 군의 표창은 대간첩작전, 예비군ㆍ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에 따른 공로로 받은 표창에 한한다.

2. 그밖에 다른 기관장의 표창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범죄수사 등의 공로로 받은 표창에 한한다.

3. 적용기간 당해 계급에 한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중 받은 포상은 승진임용예정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부칙 <제445호,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465호,2012.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2013.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과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723호,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5. 10. 1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518호,2016. 12. 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17.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제3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 또는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8호,2019.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8조, 별표 3,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565호,2020.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중 개정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3호,2021.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별표1, 별표1의2, 별표2의2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중 개정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8호,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3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중 개정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5호,2024.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 2의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8호,2026.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1호,2026. 9.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 의무위반행위 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 유용, 업무상 배임(어.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라. 직무유기, 부작위직무태만 (하목의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지연처리보고 - 확인소홀,허위 · 축소보고 - 보고결략,사건은폐 - 사건묵살,편파,격하처리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총기관리 소홀 - 도난, 분실, 대여, 오발 등 - 총기사용 규정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 - 사망·자해, 도주 - 관리규정 위반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 시설 및 물품관리 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자. 문서기록 등 관리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 하극상, 모략행위 - 위계질서, 내부질서 문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카.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 은폐 -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 은폐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
타. 부패 · 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 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하.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거.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너.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더. 부정 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머. 성 관련 비위 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버.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2와 같음			
저.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4. 친절 · 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 수사 · 단속정보 누설 · 유출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나.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라. 비밀 분실이나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바.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나. 스토킹 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다. 흉기 등 사용 스토킹 범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라. 성 관련 비위	별표 2의2와 같음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행동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1호라목의 "부작위" 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1호파목의 "주요 부패행위" 란 「국가공무원법」 78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 제1호하목의 "소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제1호거목의 "성과상여금" 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 제1호너목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제1호더목의 "부정청탁"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1호버목의 "피해자 등" 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 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 · 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 제1호서목의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어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제5호가목의 "중요 수사·단속 정보"란 영장 발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제3자에게 누설·유출 시 수사·단속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제7호가목의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호나목의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각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호다목의 "흉기 등 사용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호바목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직원

  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4조 관련)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 유형 \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의례적인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견책	견책-감봉	감봉-파면

※ 비고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2.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수수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건 및 인사청탁과 관련한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라.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마.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2. 성희롱				
가.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3. 성매매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나. 가목 외의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4. 음란물 유포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비고

1. 제1호의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의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다목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라목의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1호바목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1호사목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제2호의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8. 제3호의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9. 제4호의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table>
<tr><th colspan="2">음주운전 유형</th><th>처리기준</th><th>비고</th></tr>
<tr><td rowspan="2">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자전거등 외 음주운전)</td><td>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td><td>강등~정직</td><td rowspan="9">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5.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왼쪽 표 제3호(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자전거등 음주운전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4호(도주 중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두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왼쪽 표 제4호 중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제5호, 제6호의1), 제7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td></tr>
<tr><td>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td><td>파면~강등</td></tr>
<tr><td colspan="2">2.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자전거등 음주운전)</td><td>감봉~견책</td></tr>
<tr><td colspan="2">3. 2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파면~해임</td></tr>
<tr><td colspan="2">4.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신분 은폐 등(시도 포함)</td><td>파면~해임</td></tr>
<tr><td colspan="2">5. 비운전자가 음주운전자 대신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닉한 경우</td><td>강등~감봉</td></tr>
<tr><td rowspan="2">6.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td>1) 상해의 경우</td><td>해임~정직</td></tr>
<tr><td>2) 사망사고의 경우</td><td>파면~해임</td></tr>
<tr><td rowspan="2">7. 음주운전 동승 등 방조</td><td>1) 일반직원</td><td>정직~감봉</td></tr>
<tr><td>2) 부서장·감독자</td><td>강등~정직</td></tr>
</table>

[별표 4]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5조 관련)

업무의 성질 \ 업무 관련도	행 위 자	직상(直上) 감 독 자	2단계 위의 감 독 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 결정사항				
·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 업무				
· 중요 사항	1	2	3	4
· 경미 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함

[별표 5]

의무경찰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의무위반 행위유형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징계양정	해당여부	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1. 급 량 및 보 급 품 유용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2. 금품갹출 행 위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3. 부 당 한 휴가, 외출, 외박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영 창	○			
	정 직	○	견 책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경 고

의무위반 행위유형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징계양정	해당여부	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4. 운전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교통사고야 기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견 책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5. 기 타 파렴치한 행 위 로 인 한 물의야기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6. 각종 지시 명령 및 복무규율 위반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별표 6]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의무위반 행위유형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징계양정	해당여부	직 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의무경찰	경찰관		
구 타 및 가혹행위	근 신					
	휴가제한					
	영 창	○	근 신	견 책	경 고	
	정 직	○	휴가제한	견 책	경고	
	강 등	○	영 창	감 봉	견 책	경 고
	구 속	○	영 창	감 봉	견 책	경 고

[별표 7]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제6조 관련)

감독계열 / 기능별	직 상 (1차)	차 상 (2차)	최 종 (3차)
기 동 대	부 관	소 대 장	중 대 장
의무경찰대	부소대장	소 대 장	중 대 장
방범순찰대	부 관	소 대 장	중 대 장

[별표 8]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제6조 관련)

감독계열 / 기능별	구 분	직 상(1차)	차 상(2차)	최 종(3차)
상설부대 (의경 기동대, 방순대)	주야간	부소대장 소대부관	소대장	중대장
112타격대	주간	타격대장	경비계장	경비과장
	야간	타격대장	상황부실장	상황실장
검 문 소 (경찰초소)	주야간	조 장 (초소장)	파출소장 또는지구대장	소속과장
행정보조요원	주간	담당직원	소속계장	소속과장
	야간	타격대장	상황부실장	상황실장

[별표 9]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8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정직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감봉
감 봉	감봉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견책
견 책	불문경고

[별지 서식]

심 의 예 정 표

심의 순서	징계등 심의 대상자			비위 유형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일자	주심 위원
	소 속	직 급	성 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044 - 201 - 8436
인사혁신처 (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044 - 201 - 8445
인사혁신처 (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044 - 201 - 8446
인사혁신처 (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044 - 201 - 84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1. 7. 4.]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 3. 20.>

[전문개정 2011. 7. 4.]

제6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4. 4. 2.]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4. 4. 2.>]

제6조의3(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4. 2.>]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2021. 12. 31.>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혁신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혁신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근무혁신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근무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과 그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4. 2.>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 소속 행정기관 ”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 유연근무 ”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0. 6.>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7. 3. 2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신설 2018. 7. 2.>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8. 7. 2.,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7. 4.]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전문개정 2011. 7. 4.]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신설 2016. 11. 22.>

제1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8만 적용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4.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8. 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9.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의 수행원·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6제3항만 적용한다.<개정 2024. 7. 2.>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2(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등은 공무국외출장등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의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한다.

② 고위공직자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출국예정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에 미리 출장 일정, 인적 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 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다만,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의 국외 출장은 대통령이 허가하고, 차관급 상당의 공무원[국무총리 직속 및 소속의 공무원과 외청장(外廳長)은 제외한다]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허가를 받은 후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4 삭제 <2024. 7. 2.>

제13조의5(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소속 장관에게 도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7. 2.>

③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등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0.>

③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출장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 및 그 밖의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⑤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7(허가권의 위임) 소속 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허가권을 바로 아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8(사후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의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등의 허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8. 7. 2., 2023. 7. 18., 2024. 7. 2.>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7. 1. 31., 2018. 7. 2., 2018. 9. 18.>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개정 2019. 12. 3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

제15조의2 삭제 <1981. 6. 24.>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삭제<2015. 10. 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 10. 6.>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0. 6., 2018. 7. 2.>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2016. 11. 22., 2018. 7. 2.>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전문개정 2011. 7. 4.]

[제목개정 2015. 10. 6.]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

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 7. 2., 2019. 12. 31.>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 7. 2.>

④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의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8.>

[본조신설 2015. 10. 6.]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8. 7. 2., 2021. 12. 31., 2023. 7. 18.>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12. 31., 2024.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31., 2024. 7. 2.>

[본조신설 2015. 10. 6.]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

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6.]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개정 2018. 7. 2.>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신설 2018. 7. 2.>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7. 2.>

⑤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2020. 10. 20., 2021. 12. 31., 2023. 12. 5., 2025. 12. 4., 2026. 6. 23., 2026. 9. 29.>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전문개정 2011. 7. 4.]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3. 20.>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5. 10. 6.,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2025. 2. 1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11. 7. 4., 2019. 12. 31., 2024. 7. 2.>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신설 2013. 5. 31., 2018. 7. 2., 2024. 7. 2., 2025. 2. 11., 2025. 7. 22.>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7. 2., 2024. 7. 2., 2025. 2. 1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7. 4., 2013. 5. 31., 2021. 6. 1.>

⑦ 삭제<2005. 6. 30.>

⑧ 삭제<2005. 6. 30.>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10. 20.>

⑩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7. 4.,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4. 7. 2.>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7. 4.,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0. 6., 2019. 12. 31.>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2024. 7. 2., 2026. 6. 23.>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4.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신설 2020. 10. 20., 2024. 7. 2., 2026. 6. 23.>

<16>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17>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ㆍ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18> 행정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5. 7. 22., 2026. 6. 23.>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3일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5일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7일

<19>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7. 22.>

<20>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제18항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5. 2. 11., 2025. 7. 22.>

제21조 삭제 <1972. 5. 4.>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5. 10. 6., 2021. 12. 31.>

1.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1. 7. 4.]

제23조(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 고위공직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2.]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4.]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4.]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 " 이라 한다)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31.]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 7. 4.>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7. 4.]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등 <개정 2011. 7. 4., 2023. 12. 5.>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4.]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5. 3. 11., 2017. 7. 26.>

1. 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

제29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5.]

부칙 <제5043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1호,1972. 5. 4.>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4호,1977. 4.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8호,1979. 10.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3호,1981. 6.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4호,1982. 4.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다음의 대통령령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가지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되는 날에 폐지된다.

1.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
2. 산림보호직원복제
3. 관세공무원복제
4. 전매청직원복제
5. 검사의법복에관한규정
6. 검찰청수위복제규정
7. 교도관복제
8. 소년원및소년감별소직원복제
9.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0.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
11. 식물검역공무원복제
12. 동물검역공무원복제
13. 어업감독공무원복제
14. 교통부직원복제
15. 철도청직원복제
16. 해운항만청직원복제
17. 체신부직원복제

부칙 <제11084호,1983.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는 대통령령 제10,804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783호,1985. 10.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3호,1987. 4. 1.>(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중 " 전매청 " 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 생략

부칙 <제12328호,1987.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9호,1988.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0호,1989.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0호,1993. 2. 24.>(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 한국방송통신대학 " 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로,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 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 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4262호,1994.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4>생략
<265>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6>내지 <327>생략

부칙 <제14825호,1995. 12. 14.>
이 영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4호,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0호,1999. 1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9호,2001. 10.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82호,2002.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8호,2004. 6.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8580호,2004. 11. 3.>(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 을 “ 정보통신부 ” 로 한다.
⑨내지2* 생략

부칙 <제18892호,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교원의 특례) 교원의 근무시간、근무일、연가、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 3급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22호,2006.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9호,2007. 5. 16.>(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 행정자치부령 "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한다.

제24조의2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정보통신부 " 를 " 지식경제부 " 로 한다.

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021호,2008.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1호,2009.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20호,2009. 12. 30.>(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 " 을 "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 " 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까지 생략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74호,2010. 7.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부칙 <제22564호,2010. 12. 2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③부터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691호,2011. 3.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를 "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3010호,2011.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 "을 "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4077호,2012. 8. 3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 행정안전부령 "을 각각 " 안전행정부령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 행정안전부 "를 " 안전행정부 "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 외교통상부장관 "을 "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 "를 " 미래창조과학부 "로 한다.

3&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54호,2013. 5. 31.>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27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417호,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 안전행정부령 ”을 각각 “ 총리령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 안전행정부 ”를 “ 인사혁신처 ”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13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40호,2015. 3. 11.>(보안업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 보안목표시설 ”을 “ 국가보안시설 ”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6581호,2015. 10.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 사용의 권장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2015년도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월 31일까지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부칙 <제26944호,2016. 2. 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으로 한다.

⑨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08호,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심사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20호,2016. 11. 29.>(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7822호,2017. 1. 31.>(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 셋째 ”를 “ 둘째 ”로 한다.

부칙 <제27948호,2017. 3.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미래창조과학부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3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012호,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 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및 별표 3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 「공무원연금법」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으로 한다.

⑪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181호,2018. 9. 18.>(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을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으로 한다.

⑨부터2# 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375호,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6호,2019. 12. 2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4)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10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20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31118호,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709호,2021. 6. 1.>(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172호,2021. 11. 30.>(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2310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638호,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05호,2023. 12. 5.>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1호,2024. 4.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0호,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전단 및 별표 3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58호,2025.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부칙 <제35665호,2025.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20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893호,2025.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442호,2026.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20조제1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10.7.15>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25. 2. 11.>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3] <개정 2025. 7. 22.>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24조의3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text{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 삭제 <2019. 12. 31.>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행정기관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경찰청 (경무과) 02 - 3150 - 0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 경찰기관 ” 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ㆍ봉사ㆍ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4.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성실ㆍ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2장 복무자세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5조(용모ㆍ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복무등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ㆍ정확ㆍ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2008. 11. 11., 2017. 7. 26.>

제14조(비상소집) ①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종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수칙、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관리)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1.>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제목개정 2008. 11. 11.]

제5장 보칙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부칙 <제11144호,1983.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제29조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을 "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2. 제1조중 " 제29조 " 를 " 제16조 " 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중 " 법 제29조 " 를 " 법 제16조 " 로 한다.
3. 제2조제3항중 " 경찰관 " 을 " 경찰공무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3435호,1991. 7. 30.>(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 내무부장관 " 을 각각 " 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 내무부장관 " 을 " 경찰청장 " 으로, " 해양경찰대 " 를 " 해양경찰청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내무부장관 " 을 " 경찰청장 " 으로 한다.

② 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136호,1996. 8. 8.>(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 경찰청장 " 을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⑦ 내지1(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10호,2008.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을 "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을 각각 " 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 을 "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 으로 한다.

<2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15호,2017. 7. 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 경찰청장 " 을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을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 경찰청장 " 을 각각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 국민안전처 " 를 " 해양경찰청 " 으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소청절차규정

[시행 2025. 12. 16.] [대통령령 제35918호, 2025. 12. 1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소청 행정과) 044 - 201 - 8665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 청구서 ”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 12. 16., 1973. 3. 30., 2000. 11. 9., 2007. 9. 6.>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이하 “ 소청인 ”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 9. 6.>

③ 삭제<1989. 12. 30.>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 소청제기기간 ”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9.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1978. 10. 27.>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①제2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2000. 11. 9.>

②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 12. 30., 2000. 11. 9., 2007. 9. 6.>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4.>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7. 9. 6., 2020. 5. 4.>

③ 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0. 5. 4.>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신설 1989. 12. 30., 2007. 9. 6., 2020. 5. 4.>

[본조신설 1972. 12. 16.]

[제목개정 2020. 5. 4.]

제5조(임시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9. 6.,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6조(보정요구등) ①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2000. 11.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9. 12. 30.>

③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2. 12. 16., 1978. 10. 27., 2000. 11. 9.>

④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각 기관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00. 11. 9.>

제7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의2 삭제 <2025. 12. 16.>

제8조(기일지정통지)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9., 2020. 5. 4.>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8. 10. 27.>

③ 삭제<2000. 11. 9.>

④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2. 12. 16., 2000. 11. 9.>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9., 2023. 6. 7.>

②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 10. 27., 2000. 11. 9.>

제10조(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5. 12. 16.>

1.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으로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2.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③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6.>

④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72. 12. 16., 2025. 12. 16.>

제10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비위에 관한 징계처분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7.]

제11조(증거제출권) ①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9. 6.>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 10. 27.>
③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신설 1972. 12. 16.>
⑤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00. 11. 9.>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①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 10. 27.>

제1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위원회는 위원과 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6.]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25. 1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8. 10. 27., 2000. 11. 9.>
[전문개정 1972. 12. 16.]

제16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4.]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①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1978. 10. 27., 2020. 5. 4.>
③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ㆍ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9., 2004. 6. 11.,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⑤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1973. 3. 30., 2000. 11. 9.>
⑥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2000. 11. 9.>
[전문개정 1972. 12. 16.]

[제목개정 2004. 6. 11.]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1. 9.]

제19조 삭제 <1973. 3. 30.>

제20조 삭제 <1973. 3. 30.>

제2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 별표1 " 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 별표1 " 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89. 12. 30., 1998. 2. 24.>
[전문개정 1978. 10. 27.]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 5. 4.]

부칙 <제4420호,1969.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9호,1970.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5호,1972. 5.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에 재임중인 위원장은 그 임기가 끝날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01호,1972. 1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0호,1973.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4호,1973. 3. 30.>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1호,1978. 10.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2호,1989.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0호,1998. 2. 24.>(공무원여비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부칙 <제16997호,2000.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6호,2004.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249호,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각하 결정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 "를 " 행정안전부 "로 한다.

<6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 행정안전부 "를 " 안전행정부 "로 한다.

<7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 안전행정부 "를 " 인사혁신처 "로 한다.

<18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30664호,2020.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38호,2021. 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2호,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구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111호,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18호,202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소청 고충처리팀) 044 - 201 - 8658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 성비위신고업무) 044 - 201 - 850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2020. 12. 31.>
[전문개정 2019. 4. 16.]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4.>
1. 고충상담: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
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피해자의 동의
③ 임용권자등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2.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본조신설 2019. 4. 16.]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1983. 5. 19., 1984. 12. 31., 1985. 12. 31., 2007. 9. 6., 2013. 11. 20., 2019. 4. 16., 2022. 1. 25.>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5. 15.>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신설 2018. 5. 15.>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 청구인 ”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신설 2018. 5. 15.>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⑧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이라 함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

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2007. 9. 6., 2007. 9. 20., 2008. 12. 31., 2009. 11.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30., 2020. 12. 31.>

②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2. 1. 25.>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④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⑦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⑧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본조신설 1983. 5. 19.]

[제목개정 2018. 5. 15.]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0. 3. 10., 2021. 10. 14.>

②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2. 1. 25.>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④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1.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⑦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⑧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본조신설 1983. 5. 19.]

[제목개정 2018. 5. 15.]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②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 25.>

③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 1. 25.>

④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1. 25.>

1.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대학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

람은 제외한다)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⑥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1. 25.>

⑦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전문개정 2018. 5. 15.]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 5. 15.]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수석전문관ㆍ전문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ㆍ부전문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신설 1984. 12. 31., 1985. 12. 31., 2006. 6. 12., 2007. 9. 6., 2013. 11. 20., 2017. 1. 10., 2019. 4. 16., 2022. 1. 25., 2026. 6. 30.>

②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③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④「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7. 9. 6.>
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신설 2019. 4. 16.>
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본조신설 1983. 5. 19.]

제3조의7(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② 제1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7항,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 1. 25.>
[본조신설 2019. 4. 16.]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5. 19., 2006. 6. 12., 2019. 4. 16.>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1. 1. 5.>

제5조(보완요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완 요구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완 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고충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4. 12. 24.]

제6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2. 1. 25.>

②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답변 내용을 보충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2024. 12. 24.>

⑤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⑦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5., 2022. 1. 25.>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⑧고충심사위원회는 제7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2. 1.

25.>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신설 2024. 12. 24.>

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4. 12. 24.>

[전문개정 2018. 5. 15.]

제9조(증거제출권) ①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참고인의 소환
2. 참고인에 대한 질문
3.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한 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4.]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제3조제7항 전단, 제3조의2제7항 전단, 제3조의3제7항 전단 또는 제3조의4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19. 4.

16., 2022. 1. 25.>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신설 2019. 4. 16.>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4. 16.>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신설 2019. 4. 16., 2022. 1. 25.>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전문개정 2018. 5. 15.]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9. 4. 16.>

④ 인사혁신처장 또는 설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관의 장은 공개 내용에 다른 기관의 이행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 4. 16.>

⑤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4.>

⑥ 제5항에 따른 통보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4. 12. 24.>

⑦ 청구인은 제6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성폭력범죄,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4. 12. 24.>

[전문개정 2018. 5. 15.]

제13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3. 5. 19., 2018. 5. 15., 2022. 1. 25.>

[제목개정 2018. 5. 15.]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 6. 12., 2007. 9. 6., 2013. 11. 20.>

[본조신설 1983. 5. 19.]

제14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5. 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②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4. 16.>]

제15조(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임용권자등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실시 및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실시 요구를 했음에도 임용권자등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직접 조사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성희롱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이하 "피신고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피해자등, 피신고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전문가의 자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나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실시 확인 과정 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인적사항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피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근무 장소의 변경
2. 휴가 사용 권고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조치

⑦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⑧ 인사혁신처장은 조사결과 공직 내 성폭력범죄·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등에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임용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같은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고충처리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고 고충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8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6.>]

부칙 <제10344호,1981. 6.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1호,1983. 5.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604호,1984. 12. 31.>(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 6급이하공무원 ” 을 “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 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생략

부칙 <제11837호,1985. 12. 31.>(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내지 <148>생략

부칙 <제15135호,1996. 8. 8.>(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중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각각 삭제하고,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중 “ 교육부차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으로,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84>내지 <152>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 직급 ” 을 “ 직급 또는 직위 ” 로 한다.

제13조의2 후단중 “ 계급 ” 을 “ 계급 또는 직위 ” 로 한다.

⑮내지 <241>생략

부칙 <제20250호,2007.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4호,2007. 9. 20.>(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 경찰종합학교 ” 를 “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 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 ” 을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842호,2009. 11. 2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경찰종합학교 ” 를 “ 경찰교육원 ” 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을 “ 교육부차관 ” 으로,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 을 “ 교육부 소속 공무원 ” 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⑭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52호,2013. 11. 2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을 “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기능직공무원 ” 을 “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⑦부터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 으로 한다.

<1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연구관ㆍ지도관 ” 을 “ 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35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60호,2018. 3. 3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경찰교육원 "을 " 경찰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891호,2018.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심사 청구된 고충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6호,2019. 4. 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51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경찰공무원법」 제25조 ”를 “ 「경찰공무원법」 제31조 ”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 ”을 “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43호,2021. 10. 1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을 “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371호,2022. 1.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0호,2024.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89호,2026. 6. 3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전문직공무원 ”을 “ 수석전문관ㆍ전문관 ”으로, “ 지도사 ”를 “ 지도사ㆍ부전문관 ”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051호, 2024. 12. 10., 전부개정]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02 - 3150 - 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경찰기관 ” 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 교육훈련기관 ” 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 “ 직장훈련 ” 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 위탁교육훈련 ” 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현장학습모임 등을 통한 자기개발 학습과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국장ㆍ부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ㆍ도경찰청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 및 인원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이수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1.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제7조(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지원, 이러닝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및 학습이력 등 교육훈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①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①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의 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계획
4. 교재편찬 및 교재심의 계획
5.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계급,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훈련 과정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각 교육훈련 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 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해당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처리 여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퇴교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기록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교수요원 등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 강의 및 교육훈련
2. 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직무연구
3. 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교재의 집필
4.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성적 평가
5.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6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사격, 무도훈련 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 선발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경사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사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③ 교육훈련기관의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담당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20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교수요원의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수요원의 전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 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제26조(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교육훈련에 든 경비(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text{소요경비 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text{의무복무 개월수} - \text{근무 개월수})}{\text{의무복무 개월수}}$$

③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3장 직장훈련

제27조(직장훈련계획)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신규 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격술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별ㆍ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8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①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준비
4.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31조(직장훈련 운영규칙) 직장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기간
3. 위탁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위탁교육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위탁교육훈련 종료 후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 분야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4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2. 위탁교육훈련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 위탁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
4.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위탁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위탁교육훈련을 마쳤거나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⑤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복귀명령)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해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위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제36조(복무의무)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1. 주간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
2.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 국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제37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교육훈련비(여비는 포함하고 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4. 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찰청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훈련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 소요경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한 학위취득 또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등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38조(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위탁교육훈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수탁교육훈련) ①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칙 <제35051호,2024.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반영할 때에는 2013년 11월 1일 이후 해당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임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임교육, 기본교육, 치안정책교육, 전문교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임교육훈련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 (경정·경감 대상)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자 기본교육훈련
대통령령 제16866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경찰고위정책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관리자교육(경정 대상)	
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필수교육(고급간부교육으로 한정한다)	
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찰고위정책교육 (경정 대상)	
대통령령 제17947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고급간부교육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치안정책교육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경 대상 관리자 기본교육훈련
대통령령 제16866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경찰고위정책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관리자교육(총경 대상)	
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찰고위정책교육 (총경 대상)	
대통령령 제17947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치안정책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찰고위정책교육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선발교육(전문화교육으로 한정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은 경위·경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교육훈련의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필수교육(초급간부교육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사람
2. 대통령령 제17947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초급간부교육을 받은 사람

제5조(퇴교처분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퇴학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제6조(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수요원을 포함한다)과 강사는 각각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요원과 객원교수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한다.

②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의2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교육훈련의 구분 · 대상 · 방법(제4조제2항 관련)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대상</th><th>방법</th></tr>
<tr><td rowspan="5">1. 기본교육훈련</td><td rowspan="3">가. 신임교육훈련</td><td>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td><td>•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td><td rowspan="8">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그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에 상응한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td></tr>
<tr><td>2)「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td><td>「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입학 · 편입학한 사람</td></tr>
<tr><td>3)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td><td>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td></tr>
<tr><td rowspan="3">나. 관리자 기본교육훈련</td><td rowspan="3">경감 · 경정 · 총경으로 승진임용된 사람(「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는 교육훈련</td><td>경감
(경감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td></tr>
<tr><td>경정
(경정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td></tr>
<tr><td>총경
(총경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td></tr>
<tr><td colspan="2">2. 전문교육훈련</td><td>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td><td>총경 이하</td><td>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td></tr>
</table>

			에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모든 계급	
4. 자기개발 학습	경찰공무원이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	모든 계급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2]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찰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승진시험 응시 대상 및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해당 계급 근무연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개월수 ÷ 12"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교육훈련기준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산출 기준일: 10월 31일
3. 파견 · 휴직 기간 및 기관 간 전보자 처리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산출할 때 해당 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한다.
   나.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의 경우 전보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이수시간(같은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다.
4.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훈련 처리: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승진된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비고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계급별 · 경과별(警科別)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3]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기준
1.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전액
2.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times \frac{1}{2}$
3.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times \frac{\text{의무복무 개월수} - \text{근무 개월수}}{\text{의무복무 개월수}}$

비고

1.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2. 국외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 개월수} - \text{근무 개월수})}{\text{의무복무 개월수}}$$

상훈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0호, 2025. 11. 1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02 - 2100 - 409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 삭제 <1999. 1. 29.>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 12. 10.]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개

정 2019. 12. 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의2(서훈의 공표)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본조신설 2011. 8. 4.]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3. 21., 2025. 11. 11.>
[전문개정 2011. 8. 4.]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수교훈장)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佩用)하게 한다.<개정 2019.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5조(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제식과 규격)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부장、약장、금장 및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 삭제 <1999. 1. 29.>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0조(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2조(부상)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 삭제 <1999. 1. 29.>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9조(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 삭제 <2001. 1. 8.>

부칙 <제1885호,1967.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서훈한 건국공노훈장중장은 건국훈장1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복장은 건국훈장2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단장은 건국훈장3등급으로,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1등급으로, 문화훈장대통령장은 국민훈장2등급으로, 문화훈장국민장은 국민훈장3등급으로, 태극무공훈장은 무공훈장1등급으로, 을지무공훈장은 무공훈장2등급으로, 충무무공훈장은 무공훈장3등급으로,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4등급으로, 인헌무공훈장은 무공훈장5등급으로, 청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1등급으로, 황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2등급으로, 홍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3등급으로, 록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4등급으로, 옥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5등급으로, 1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1등급으로, 2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2등급으로, 3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3등급으로, 4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4등급으로, 5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5등급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1등급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2등급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3등급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4등급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5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건국포장은 건국포장으로, 방위포장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으로, 문화포장 및 공익포장은 국민포장으로,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식산포장 및 근로포장은 산업포장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전에 제작된 훈장으로서 제식변경으로 수여할 수 없는 훈장은 훈장제도연구용으로 총무처에 보관한다.

부칙 <제2282호,1971.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7호,1973. 1. 25.>

이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017호,1988. 8. 5.>(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 법원행정처장 " 을 " 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4222호,1990.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여한 건국포장 또는 독립유공으로 수여한 대통령표창은 이를 재심사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국훈장 4등급, 5등급 또는 건국포장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81호,1999. 1. 21.>(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 국가안전기획부장 " 을 각각 " 국가정보원장 " 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713호,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서훈의 추천은 이 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42호,2001. 1. 8.>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7호,2005. 8. 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6> 까지 생략

<207>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2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85호,2011. 8.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3호,2012.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1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8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65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 미반환자의 명부 등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서훈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80호,2025. 11. 11.>(평생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20호, 2026. 9.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02 - 2100 - 40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 포상 ”(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 시상 ”(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제4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4.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 표창 추천권자 ”라 한다)이 한다.

1. 「상훈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전문개정 2026. 9. 29.]

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8조(추천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군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하 “ 표창권자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상의 규모 및 훈격 등을 포함하는 정부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시상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0조(표창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9조에 따라 표창이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의 방법)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가.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개정 2021. 1. 5.>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 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증명, 표창을 받을 유족의 순위, 표창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기록 및 미교부, 표창의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수장 및 수치의 패용) ① 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본인만 패용하며, 오른쪽 가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장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장은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안쪽부터 단다.

②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치를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치는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치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치는 받은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단다.

③ 수장의 패용 및 시기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5조(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표창을 받은 자(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는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① 표창장이나 상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3.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라.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17조(수장 등의 재교부) ① 표창을 받은 자가 수장 또는 수치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수치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수장 또는 수치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수장ㆍ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4장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23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제24조(준용)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 및 상장 용지의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제5장 보칙

제25조(전시 등에서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추천 및 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창권자를 대리하여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하려는 사람은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리 수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26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추천권자 또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8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표창의 추천과 공적심사
2. 제16조에 따른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제17조에 따른 수장 등의 재교부
4.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발급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부칙 <제27592호,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표창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표창의 취소 및 환수는 표창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표창(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표창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표창권자 및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1337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84년 1월 23일 전에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 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수장·수치의 패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69년 12월 19일 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할 수 없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 표창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본문,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 행정자치부 ”를 각각 “ 행정안전부 ”로 한다.

<15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460호,2024.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0호,2026.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부 표창 규정 [별표 1]

개인표창 수장(제11조제2항 관련)

1. 대통령표창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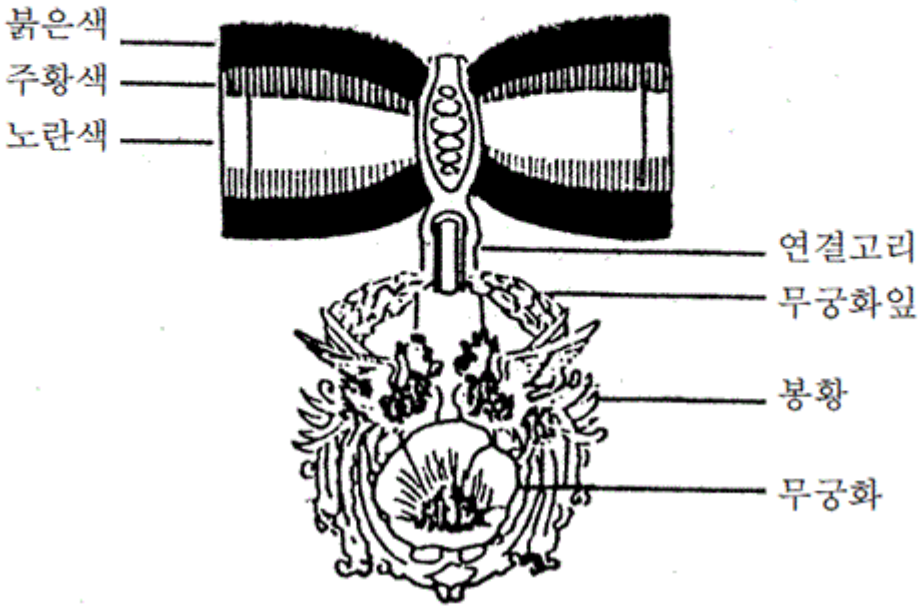

	구분	모양	크기 (㎜)	색상	재질	비고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정장 (正章)	무궁화	11.5	백금색	은	
		봉황 무궁화잎	30.0	금색	은	2날개, 16잎
		연결고리	15.0	금색	은	
		무게(g)	9.5			
	수(綬)	너비	17.0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비단	윗부분 (붉은색 4, 주황색 2) 가운데 (노란색 5) 아랫부분 (붉은색 4, 주황색 2) 2겹
		길이	36.0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비단	

2. 국무총리표창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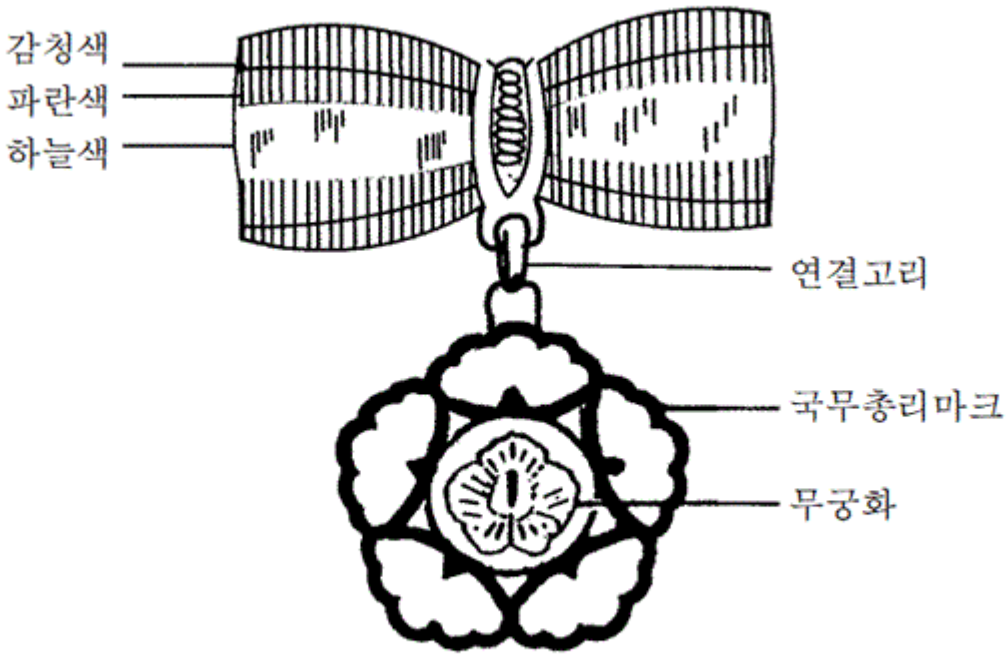

	구분	모양	크기 (㎜)	색상	재질	비고
국무총리	정장	무궁화	8.5	백금색	은	
		국무총리 마크	22.0	금색	은	
		무게(g)	11.0			
개인표창 수장	수	너비	17.0	감청색 파란색 하늘색	비단	윗부분 (감청색 4, 파란색 2) 가운데 (하늘색 5) 아랫부분 (감청색 4, 파란색 2) 2겹
		길이	36.0	감청색 파란색 하늘색	비단	

■ 정부 표창 규정 [별표 2]

단체표창 수치(제11조제2항 관련)

1. 대통령 단체표창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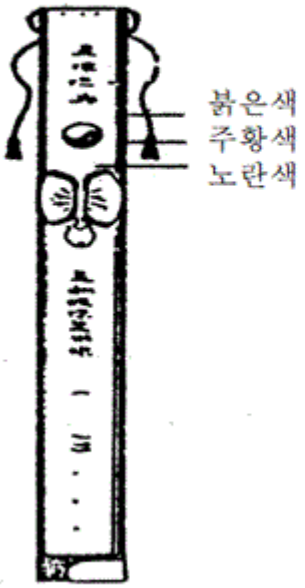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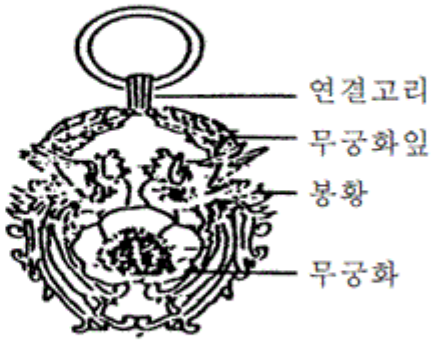

	구분	모양	크기 (㎜)	색상	재질	비고
대통령 단체표창 수치	정장	무궁화	15.5	백금색	은	
		봉황 무궁화잎	40.0	금색	은	2날개, 16잎
		무게(g)	15.0			
	수	너비	80.0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비단	왼쪽 (붉은색 6, 주황색 6) 가운데 (노란색 56) 오른쪽 (붉은색 6, 주황색 6)
		길이	900.0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비단	
		태극	35.0	위: 붉은색, 아래: 파란색	수·금사	
		리본	80.0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비단	
		수술	600.0	노란색	비단	

2.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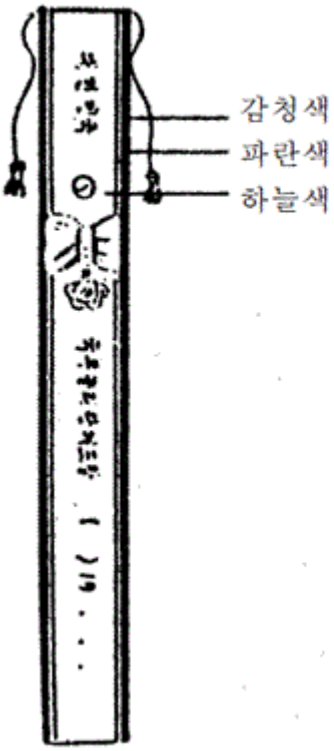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치	구분	모양	크기 (㎜)	색상	재질	비 고
	정장	무궁화	12.5	백 금 색	은	
		국무총리 마크	40.0	금 색	은	
		무게(g)	16.0			
	수	너비	75.0	감청색 파란색 하늘색	비단	왼쪽 (감청색 6, 파란색 6) 가운데 (하늘색 51) 오른쪽 (감청색 6, 파란색 6)
		길이	900.0	감청색 파란색 하늘색	비단	
		태극	35.0	위:붉은색 아래:파란색	수·금사	
		리본	80.0	감청색 파란색 하늘색	비단	
		수술	600.0	하늘색	비단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 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 속			
직위(직급 · 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시상)

행사(대회명)			
수여일		상장 구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계급)			
수상 내용			
상장 문안			
확인자			
소속		직위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관인

210㎜×297㎜[백상지 8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30.>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표창합니다.

년 월 일

대 통 령 ○ ○ ○

이 증을 대통령표창 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 ○ ○

240㎜×340㎜(한지 17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4. 30.>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표창합니다.

년 월 일

국 무 총 리 ○ ○ ○

이 증을 국무총리표창 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 ○ ○

240㎜×340㎜(한지 17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4. 30.>

제 호

상 장

소 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 통 령 ○ ○ ○

이 증을 대통령상장 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 ○ ○

240㎜×340㎜(한지 17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4. 30.>

제 호

상 장

소 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 무 총 리 ○ ○ ○

이 증을 국무총리상장 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 ○ ○

240㎜×340㎜(한지 17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여증명서 신청서(개인표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수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훈 당시 소속	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
용 도		

「정부 표창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상훈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여증명서 신청서(단체표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대표자, 대리인)	
수훈자 (단체명)		
용 도		

「정부 표창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상훈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표창 수여증명서(개인)

성　　명

- 소　　속:
- 직급 또는 계급:
- 생년월일 또는 군번:
- 포 상 종 류:
- 상훈기록번호:
- 수 여 일:
- 공 적 요 지:

「정부 표창 규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205㎜×292㎜(한지 17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표창 수여증명서(단체)

단 체 명

- 포 상 종 류:
- 상 훈 기 록 번 호:
- 수 여 일:
- 공 적 요 지:

「정부 표창 규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205㎜×292㎜(한지 17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장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수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훈 당시 소속	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

훈격(勳格)	수훈일	증서번호	신청 사유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제4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제작 승인 → 제작 → 교부

신청인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상훈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정부표창 제작업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치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대표자, 대리인)	
수훈자 (단체명)		

훈격(勳格)	수훈일	증서번호	신청 사유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제4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제작 승인 → 제작 → 교부

신청인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상훈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정부표창 제작업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0. 18.] [훈령 제1134호, 2024. 10. 18., 일부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02 - 3150 - 2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과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및 직할대를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표창권자"란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4. "소속직원"이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기장(記章)"이란 지휘관장, 표창기장, 근속기장, 기념장, 기본기장을 말한다.
6. "경찰공로장"이란 공무수행 중 사고ㆍ부상이나 재직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소속직원이나 경찰업무발전에 기여한 소속직원 중 퇴직하는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제2장 표창

제3조(표창의 원칙) 표창은 경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경찰의 발전에 공적을 세운 경우와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경기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공적에 대한 표창은 표창장과 감사장으로 나누며, 성적에 대한 표창은 상장이라 한다.

제5조(표창의 요건)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신고 또는 제보로 중요범인을 검거하게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우
3.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경우
4. 창의적 의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경찰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찰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경찰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경찰 및 국가ㆍ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③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2.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6조(표창의 확정) 표창권자는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추천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추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소집 및 심의 절차, 개의ㆍ의결 절차,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한다.

제8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에 대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찰청 : 국ㆍ관
2. 소속기관 : 과장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공적 조서를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상장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였으나 표창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천한 소속기관장이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표창대상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표창대상자 추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표창권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람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추천일 기준으로 동일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 일정한 기간 ’ 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표창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표창권자는 표창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평가하며, 심사할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상훈담당이 된다.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매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행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중요범인 검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1. 경찰의 날(10월 21일)
2. 연말(12월 31일)
3.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정기적인 기념일

제12조(표창의 방법)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
3. 상 장 : 별지 제3호서식

② 경찰공로장의 제식은 별표2와 같으며, 경찰청장이 공로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찰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의 수여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표창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증명서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천권자의 소속기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

④ 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 및 폐기해야 하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16조(단체표창의 보존) 단체표창을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그 표창장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이 다른 경찰기관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경찰기관의 장이, 해당 경찰기관이 폐지된 때에는 그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기장

제17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지휘관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장 지휘관장: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사람
2. 시ㆍ도경찰청장급 지휘관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부속기관장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
3. 경찰서장급 지휘관장: 경찰서장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
4. 단위 지휘관 지휘관장: 지구대장ㆍ파출소장 및 기동대장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

② 표창기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표창기장: 장관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
2. 경찰청장 표창기장: 경찰청장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시ㆍ도경찰청장 표창기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부속기관장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

4. 시ㆍ도지사 표창기장: 시ㆍ도지사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

③ 근속기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장: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봉사장: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충성장: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평생장: 경찰공무원으로 4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기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다.

1. 특별히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경우
2. 중요 경호 및 경비업무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소속기관장은 제4항제2호의 수여대상자를 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⑥ 기본기장(경찰장, 대한민국장, 경찰명예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18조(수여권자) 기장수여권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기장수여의 시기) 기장수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와 같다.

1. 지휘관장: 경찰공무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에 각각 처음으로 해당한 때
2. 표창기장: 경찰공무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에 각각 처음으로 해당한 때
3. 근속기장: 매년 경찰의 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4. 기념장: 제17조제4항의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
5. 기본기장: 경찰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때

제20조(기장의 제식 및 수여 방법) ① 기장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제식은 필요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수여증을 수여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기장의 패용) ①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관한다.

② 기장은 정복 착용 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장과 약장을 함께 패용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상 기장 패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기록부 비치)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경찰청장은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기록부로 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을,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을 각 따른다.

제23조(약장의 패용순서) 훈장, 포장, 표창기장, 지휘관장, 근속기장, 기념장, 기본기장 순으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이 경우 패용 위치는 별표 4를 따른다.

제23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기장의 패용) 경찰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기장의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32호,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용감한 시민장 발급규칙, 경찰공무원기장 수여규칙 및 (경찰청) 경찰공무원 경호 및 경비 기념장 수여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여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경호 및 경비 기념장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여된 용감한 시민장에 대한 기록은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기록부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864호,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3.까지 생략

14.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5.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952호,2019. 9. 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호,2021. 9. 1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23. 3. 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2024. 10. 1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

1. 징계처분에 따른 제한기간

받으려는 표창	제 한 기 간
경찰청장	불문경고·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불문경고는 6개월, 견책은 1년, 감봉은 2년, 정직·강등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부속기관장 포함)	불문경고·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불문경고는 3개월,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년, 정직·강등은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총경 직할대장 포함)	불문경고·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불문경고는 1개월, 견책은 3개월, 감봉은 6개월, 정직·강등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주요비위[1]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1. 정기표창의 경우 경찰청장 표창은 위 징계처분에 따른 제한기간의 4배(시·도경찰청장 표창은 3배, 경찰서장 표창은 2배)에 해당하는 기간
2. 수시표창의 경우 경찰청장 표창은 위 징계처분에 따른 제한기간의 3배(시·도경찰청장 표창은 2배, 경찰서장 표창은 1배)에 해당하는 기간

2. 재 표창 제한기간 : 종전의 표창 수여일로부터 새로운 표창 추천일 기준

받으려는 표창	재 표창 제한기간
경찰청장	경찰청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후 정기표창은 1년, 수시표창은 6개월
시·도경찰청장(부속기관장 포함)	시·도경찰청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후 정기표창은 6개월, 수시표창은 3개월
경찰서장(총경 직할대장 포함)	경찰서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후 정기표창은 3개월, 수시표창은 1개월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및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별표 2]

경찰공로장의 제식

(단위 : ㎜)

정장의 제식

(1) 재 질

- 연결고리 : 놋쇠판 두께 2㎜, 42㎜×17㎜ 순금으로 도금
- 수 : 인견사(견직)
- 부　　장 : 놋쇠판 지름 63㎜×67㎜, 두께 6㎜ 순금으로 도금

(2) 색 상

- 연결고리 : 금색으로 도금한다.
- 치　　수 : 35㎜ × 294㎜
- 수　　폭 :

· 좌 측 : 황색 2㎜,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 중 앙 : 황색 10㎜

· 우 측 :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2㎜

- 경찰마크 : 경찰엠블럼 17㎜×17㎜
- 기장고리 : 원형고리 4개
- 부　　장

· 앞·뒷면 바탕은 금색으로 도금하고 중앙 경찰엠블럼 원판은 금색 가공한 다음 녹색 바탕으로 에폭시 마감처리 후 경찰마크를 붙이며, 대지 6개는 흰색과 적색으로 수지 마감한다.

· 뒷면은"대한민국경찰공로장","경찰청장"문자는 양각 처리

[별표 3]

경찰공무원 기장의 제식

□ 표창기장

1. 장관 표창기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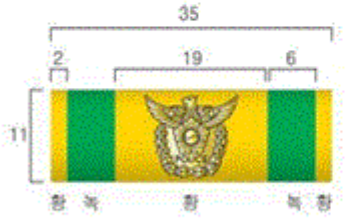

《약 장》

1. 약장의 제식
   가. 재 료 : 인견사(견직)
   나. 수 폭
   · 황색 2㎜, 녹색 6㎜
   · 황색 19㎜
   · 녹색 6㎜, 황색 2㎜
   다. 치 수 : 35㎜ × 11㎜
   라. 중앙은 황색 바탕위에 경찰마크의 아래쪽을 금색 무궁화 잎으로 감싸고 경찰마크와 무궁화 잎 사이에"POLICE"를 표기한다. (금도금)

2. 경찰청장 표창기장

(단위 : ㎜)

《약 장》

1. 약장의 제식
   가. 재 료 : 인견사(견직)
   나. 수 폭
   · 황색 2㎜,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 황색 10㎜
   ·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2㎜
   다. 치 수 : 35㎜ × 11㎜
   라. 중앙은 황색 바탕위에 경찰마크의 아래쪽을 금색 무궁화 잎으로 감싸고 경찰마크와 무궁화 잎 사이에"POLICE"를 표기한다. (금도금)

3. 시 · 도경찰청장 표창기장

(단위 : ㎜)

《약 장》

1. 약장의 제식

가. 재 료 : 인견사(견직)

나. 수 폭

· 황색 2.0㎜,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 황색 16㎜

·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1.5㎜, 녹색 1.5㎜, 황색 2.0㎜

다. 치 수 : 35㎜ × 11㎜

라. 중앙은 황색 바탕위에 경찰마크의 아래쪽을 금색 무궁화 잎으로 감싸고 경찰마크와 무궁화 잎 사이에"POLICE"를 표기한다. (금도금)

4. 시 · 도지사 표창기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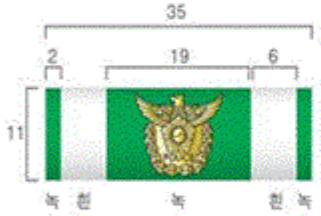

《약 장》

1. 약장의 제식

가. 재 료 : 인견사(견직)

나. 수 폭

· 녹색 2㎜, 흰색 6㎜

· 녹색 19㎜

· 흰색 6㎜, 녹색 2㎜

다. 치 수 : 35㎜ × 11㎜

라. 중앙은 황색 바탕위에 경찰마크의 아래쪽을 금색 무궁화 잎으로 감싸고 경찰마크와 무궁화 잎 사이에 "POLICE"를 표기한다. (금도금)

□ 경찰지휘관장

1. 경찰청장 지휘관장

(단위 : ㎜)

가. 정장의 제식

(1) 재 질

- 상 단 : 놋쇠판 두께 2㎜에 순금으로 도금
- 중 단 : 인견사(견직)
- 하 단 : 놋쇠판 두께 4㎜에 순금으로 도금

(2) 색 상

- 연결고리 : 바탕은 금색으로 하고"경찰청장 지휘관장"글자를 유광으로 양각 처리
- 치 수 : 35㎜ × 50㎜
- 수 폭
  - · 좌 측 : 청색 2.0㎜,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 · 중 앙 : 청색 10㎜
  - · 우 측 :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2.0㎜
- 경찰마크 : 20㎜ × 12.5㎜
- 기장고리 : 원형고리 5개
- 부 장

· 앞·뒷면 바탕은 금색으로 도금하고 중앙의 지휘관 표장 원판은 금색 가공한 다음 적색 바탕으로 에폭시 마감처리 후 경찰청장 지휘관 표장을 붙이고, 대지 6개는 청색과 흰색으로 수지 마감 한다.

· 뒷면은"대한민국 경찰지휘관장", "경찰청장 지휘관 표장", "경찰청장"문자 양각 처리

나. 약장의 제식

(1) 재 질 : 인견사(견직)

(2) 수 폭

- · 좌측 : 청색 2.0㎜,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 · 중앙 : 청색 10㎜
- · 우측 :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2.0㎜

(3) 치 수 : 35㎜ × 11㎜

(4) 마 크 : 중앙은 청색 바탕위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위에 날개를 치켜 올린 모양의 참수리를 배치하고 윗부분을 제외한 주위를 무궁화 잎이 달린 가지로 감싼 경찰청장 지휘관 표장 모형조각 마크를 붙인다. (금도금)

2. 시 · 도경찰청장급 지휘관장

(단위 : ㎜)

《정 장》

《상단 앞면》

《상단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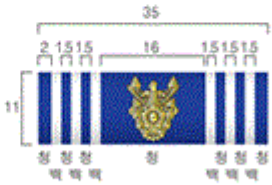

《약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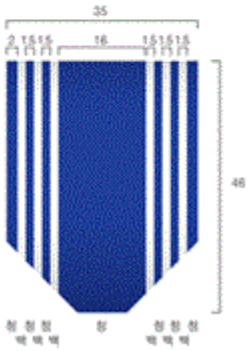

《중간고리》

《부장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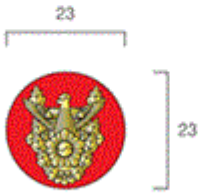

《앞면 지휘관장》

《부장 뒷면》

《뒷면 지휘관장》

가. 정장의 제식

(1) 재 질

- 상 단 : 놋쇠판 두께 2㎜에 순금으로 도금
- 중 단 : 인견사(견직)
- 하 단 : 놋쇠판 두께 4㎜에 순금으로 도금

(2) 색 상

- 연결고리 : 바탕은 금색으로 하고"시·도경찰청장급 지휘관장"글자를 유광으로 양각 처리
- 치 수 : 35㎜ × 50㎜
- 수 폭
  - · 좌 측 : 청색 2.0㎜,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 · 중 앙 : 청색 16㎜
  - · 우 측 :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2.0㎜
- 경찰마크 : 20㎜ × 12.5㎜
- 기장고리 : 원형고리 5개
- 부 장
  - · 앞·뒷면 바탕은 금색으로 도금하고 중앙의 지휘관 표장 원판은 금색 가공한 다음 적색 바탕으로 에폭시 마감처리 후 시·도경찰청장급 지휘관 표장을 붙이고, 대지 5개는 청색과 흰색으로 수지 마감한다.
  - · 뒷면은"대한민국 경찰지휘관장","시·도경찰청장급 지휘관 표장","시·도경찰청장급"문자 양각 처리

나. 약장의 제식

(1) 재 질 : 인견사(견직)

(2) 수 폭

- · 좌 측 : 청색 2.0㎜,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 · 중 앙 : 청색 10㎜
- · 우 측 :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1.5㎜, 흰색 1.5㎜, 청색 2.0㎜

(3) 치 수 : 35㎜ × 11㎜

(4) 마 크 : 중앙은 청색 바탕위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위에 날개를 치켜 올린 모양의 참수리를 배치하고 윗부분을 제외한 주위를 무궁화 잎이 달린 가지로 감싼 시·도경찰청장급 지휘관 표장 모형조각 마크를 붙인다. (금도금)

3. 경찰서장급 지휘관장

(단위 : ㎜)

가. 정장의 제식

(1) 재 질

- 상 단 : 놋쇠판 두께 2㎜에 순금으로 도금
- 중 단 : 인견사(견직)
- 하 단 : 놋쇠판 두께 4㎜에 순금으로 도금

(2) 색 상

- 연결고리 : 바탕은 금색으로 하고"경찰서장급 지휘관장"글자를 유광으로 양각 처리
- 치 수 : 35㎜ × 50㎜
- 수 폭
  - · 좌 측 : 청색 2.0㎜, 흰색 1.5㎜, 청색 2.0㎜, 흰색 1.5㎜
  - · 중 앙 : 청색 21㎜
  - · 우 측 : 흰색 1.5㎜, 청색 2.0㎜, 흰색 1.5㎜, 청색 2.0㎜
- 경찰마크 : 20㎜ × 12.5㎜
- 기장고리 : 원형고리 4개
- 부 장
  - · 앞·뒷면 바탕은 금색으로 도금하고 중앙의 지휘관 표장 원판은 금색 가공한 다음 적색 바탕으로 에폭시 마감처리 후 경찰서장급 지휘관장 지휘관 표장을 붙이고, 대지 4개는 청색과 흰색으로 수지 마감한다.
  - · 뒷면은"대한민국 경찰지휘관장", "경찰서장급 지휘관 표장", "경찰서장급"문자 양각 처리

나. 약장의 제식

(1) 재 질 : 인견사(견직)

(2) 수 폭

- · 좌 측 : 청색 2.0㎜, 흰색 1.5㎜, 청색 2.0㎜, 흰색 1.5㎜
- · 중 앙 : 청색 21㎜
- · 우 측 : 흰색 1.5㎜, 청색 2.0㎜, 흰색 1.5㎜, 청색 2.0㎜

(3) 치 수 : 35㎜ × 11㎜

(4) 마 크 : 중앙은 청색 바탕위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위에 날개를 치켜 올린 모양의 참수리를 배치하고 그 주위를 두 줄로 된 선으로 둘러싼 경찰서장급 지휘관 표장 모형 조각 마크를 붙인다. (금도금)

4. 단위 지휘관 지휘관장

(단위 : ㎜)

가. 정장의 제식

(1) 재 질

- 상 단 : 놋쇠판 두께 2㎜에 순금으로 도금
- 중 단 : 인견사(견직)
- 하 단 : 놋쇠판 두께 4㎜에 순금으로 도금

(2) 색 상

- 연결고리 : 바탕은 금색으로 하고"단위 지휘관 지휘관장"글자를 유광으로 양각 처리
- 치 수 : 35㎜ × 50㎜
- 수 폭

· 좌 측 : 청색 2.0㎜, 흰색 2.0㎜

· 중 앙 : 청색 27㎜

· 우 측 : 흰색 2.0㎜, 청색 2.0㎜

- 경찰마크 : 20㎜ × 12.5㎜
- 기장고리 : 원형고리 3개
- 부 장

· 앞·뒷면 바탕은 금색으로 도금하고 중앙의 지휘관 표장 원판은 금색 가공한 다음 적색 바탕으로 에폭시 마감처리 후 단위 지휘관 지휘관장 표장을 붙이고, 대지 3개는 청색과 흰색으로 수지 마감한다.

· 뒷면은"대한민국 경찰지휘관장", "단위 지휘관 지휘관장 표장","단위 지휘관"문자 양각 처리

나. 약장의 제식

(1) 재 질 : 인견사(견직)

(2) 수 폭

· 좌 측 : 청색 2.0㎜, 흰색 2.0㎜

· 중 앙 : 청색 27㎜

· 우 측 : 흰색 2.0㎜, 청색 2.0㎜

(3) 치 수 : 35㎜ × 11㎜

(4) 마 크 : 중앙은 청색 바탕위에 2개의 교차된 경찰봉 위의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를 넣고, 그 위에 날개를 치켜 올린 모양의 참수리를 배치하며, 그 주위를 두 줄로 된 선으로 둘러싼 단위 지휘관 지휘관장 표장 모형 조각 마크를 붙인다. (금도금)

□ 근속기장

1. 성실장

(단위 : ㎜)

 【 정 장 】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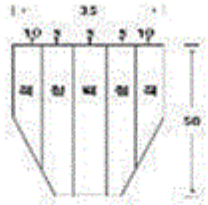 (제1도) (기장) (제2도) 앞 면 (제3도) 뒷 면	가. 정장의 제식 (1) 포 수(제1도) (가) 재료 : 인견사(견직) (나) 수폭 : 적색 10㎜, 청색 5㎜, 백색 5㎜, 청색 5㎜, 적색 10㎜ (다) 치수 : 35㎜ × 50㎜ (라) 기장상단 경찰마크 : 가로 20㎜, 세로 15㎜ (마) 고리 : 10.5㎜ (2) 지금(제2도) : 놋쇠 4㎜판(유철특수광처리) (3) 치수(제2도) : 가로 42㎜, 세로 45㎜ (4) 앞면(제2도) (가) 월계수 마크 및 원조각 20㎜ (나) 양손으로 감싼형(수지 8개) 가로 42㎜, 세로 45㎜ (다) 기장고리(원형고리 2개, 경찰마크 1개) (5) 뒷면(제3도) (가) 대한민국경찰근속기장(문자조각) (나) 성실장(문자조각 : 한자) (다) 10년근속공로(문자조각) (6) 전장 : 130㎜
 【 약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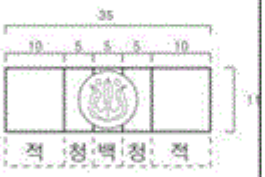 (제4도)	나. 약장의 제식 (1) 재료 : 인견사(견직) (2) 수폭 : 적색 10㎜, 청색 5㎜, 백색 5㎜, 청색 5㎜, 적색 10㎜ (3) 치수 : 35㎜ × 11㎜ (4) 중앙은 흰색 바탕위에 월계수마크와 모형조각(놋쇠금도금), 원의 테두리는 양각, 뒷면는 음각 처리 (5) 조간격 : 안 5㎜, 밖 10㎜

2. 봉사장

(단위 : ㎜)

 【 정 장 】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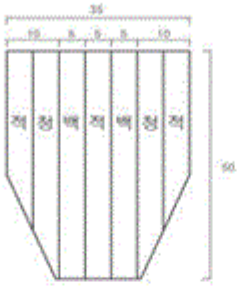 (제1도) (기장) (제2도) 앞 면 (제3도) 뒷 면	가. 정장의 제식 (1) 포 수(제1도) (가) 재료 : 인견사(견직) (나) 수폭 : 적색 5㎜, 청색 5㎜, 백색 5㎜ 적색 5㎜, 백색 5㎜, 청색 5㎜ 적색 5㎜ (다) 치수 : 35㎜ × 50㎜ (라) 기장상단 경찰마크 : 가로 20㎜, 세로 15㎜ (마) 고리 : 10.5㎜ (2) 지금(제2도) : 놋쇠 4㎜판(유철특수광처리) (3) 치수(제2도) : 가로 42㎜, 세로 45㎜ (4) 앞면(제2도) (가) 월계수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 마크 및 원조각 20㎜ (나) 양손으로 감싼형(수지 8개), 가로 42㎜, 세로 45㎜ (다) 기장고리(원형고리 2개, 경찰마크 1개) (5) 뒷면(제3도) (가) 대한민국경찰근속기장(문자조각) (나) 봉사장(문자조각 : 한자) (다) 20년 근속공로(문자조각) (6) 전장 : 130㎜
 【 약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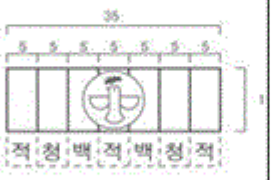 (제4도)	나. 약장의 제식 (1) 재료 : 인견사(견직) (2) 수폭 : 적색 5㎜, 청색 5㎜, 백색 5㎜, 적색 5㎜, 백색 5㎜, 청색 5㎜, 적색 5㎜ (3) 치수 : 35㎜ × 11㎜ (4) 중앙은 적색 바탕위에 월계수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 모형조각(놋쇠금도금), 원의 테두리는 양각, 뒷면는 음각 처리 (5) 조간격 : 안 5㎜, 밖 5㎜

3. 충성장

(단위 : ㎜)

 【 정 장 】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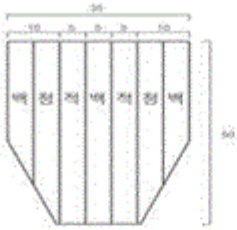 (제1도) (기장) (제2도) 앞 면 (제3도) 뒷 면	가. 정장의 제식 (1) 포 수(제1도) (가) 재료 : 인견사(견직) (나) 수폭 : 백색 5㎜, 청색 5㎜, 적색 5㎜ 백색 5㎜, 적색 5㎜, 청색 5㎜ 백색 5㎜ (다) 치수 : 35㎜ × 50㎜ (라) 기장상단 경찰마크 : 가로 20㎜, 세로 15㎜ (마) 고리 : 10.5㎜ (2) 지금(제2도) : 놋쇠 4㎜판(유철 특수광 처리) (3) 치수(제2도) : 가로 42㎜, 세로 45㎜ (4) 앞면(제2도) (가) 칼과 월계수마크 및 원조각 20㎜ (나) 양손으로 감싼형(수지 8개) 가로 42㎜, 세로 45㎜ (다) 기장고리(원형고리 2개, 경찰마크 1개) (5) 뒷면(제3도) (가) 대한민국경찰근속기장(문자조각) (나) 충성장(문자조각 : 한자) (다) 30년 근속공로(문자조각) (6) 전장 : 130㎜
 【 약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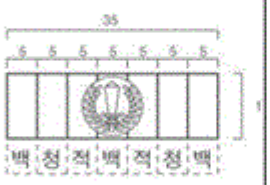 (제4도)	나. 약장의 제식 (1) 재료 : 인견사(견직) (2) 수폭 : 백색 5㎜, 청색 5㎜, 적색 5㎜ 백색 5㎜, 적색 5㎜, 청색 5㎜ 백색 5㎜ (3) 치수 : 35㎜ × 11㎜ (4) 중앙은 백색 바탕위에 칼과 월계수 모형 조각(놋쇠금도금), 원의 테두리는 양각, 뒷면는 음각 처리 (5) 조간격 : 안 5㎜, 밖 5㎜

4. 평생장

(단위 : ㎜)

 【 정 장 】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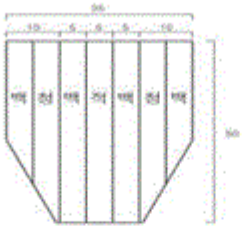 (제1도) (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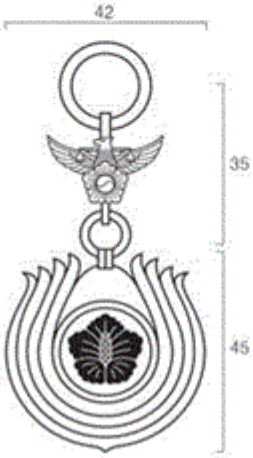 (제2도) 앞 면 (제3도) 뒷 면	가. 정장의 제식 (1) 포 수(제1도) (가) 재료 : 인견사(견직) (나) 수폭 : 백색 5㎜, 청색 5㎜, 백색 5㎜ 적색 5㎜, 백색 5㎜, 청색 5㎜ 백색 5㎜ (다) 치수 : 35㎜ × 50㎜ (라) 기장상단 경찰마크 : 가로 20㎜, 세로 15㎜ (마) 고리 : 10.5㎜ (2) 지금(제2도) : 놋쇠 4㎜판(유철 특수광 처리) (3) 치수(제2도) : 가로 42㎜, 세로 45㎜ (4) 앞면(제2도) (가) 무궁화마크 및 원조각 20㎜ (나) 양손으로 감싼형(수지 8개) 가로 42㎜, 세로 45㎜ (다) 기장고리(원형고리 2개, 경찰마크 1개) (5) 뒷면(제3도) (가) 대한민국경찰근속기장(문자조각) (나) 평생장(문자조각 : 한자) (다) 40년 근속공로(문자조각) (6) 전장 : 130㎜
 【 약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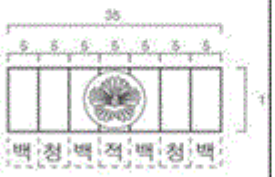 (제4도)	나. 약장의 제식 (1) 재료 : 인견사(견직) (2) 수폭 : 백색 5㎜, 청색 5㎜, 백색 5㎜ 적색 5㎜, 백색 5㎜, 청색 5㎜ 백색 5㎜ (3) 치수 : 35㎜ × 11㎜ (4) 중앙은 적색 바탕위에 무궁화 모형조각(놋쇠금도금), 원의 테두리는 양각, 뒷면는 음각 처리 (5) 조간격 : 안 5㎜, 밖 5㎜

□ 기념장

경찰대개혁 100일기념장	ASEM 경호경비기념장	경찰60년 기념장	APEC 경호경비기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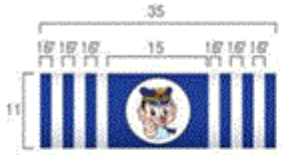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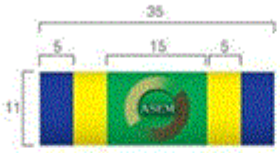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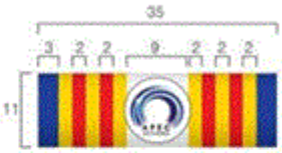
G20 경호경비기념장	**핵안보 경호경비기념장**	**인천아시아경기대회기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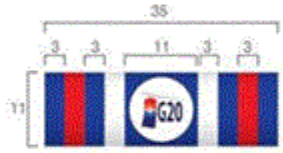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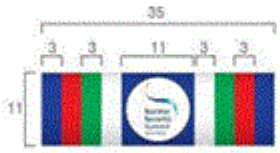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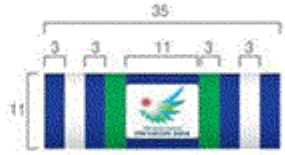	

(1) 약장

(가) 재질 : 인견

(나) 색상 : 청색, 흰색, 황색, 노랑색, 녹색, 적색

(다) 중앙표시장 : 경찰대개혁100일기념장, ASEM경호경비기념장, 경찰60년기념장, APEC경호경비기념장, G20경호경비기념장, 핵안보경호경비기념장은 지름 9밀리미터(±1밀리미터) 원안에 각 모형 인쇄(투명 에폭시처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가로 11밀리미터 세로 8밀리미터 사각에 모형 인쇄(투명 에폭시처리)

□ 기본기장

경찰장	대한민국장	경찰명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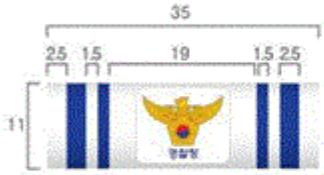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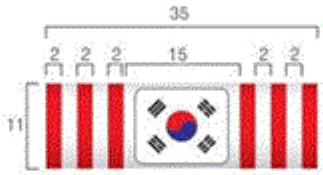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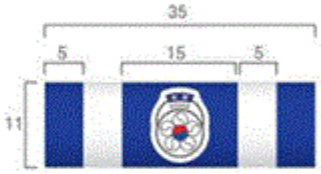

(1) 약장

(가) 재질 : 인견

(나) 색상 : 청색, 흰색, 적색

(다) 중앙표시장 : 경찰장은 가로 12밀리미터 세로 9밀리미터(±1밀리미터) 사각에 경찰마크와 아래에는 경찰청 글자 모형 인쇄, 대한민국장은 가로 12밀리미터 세로 9밀리미터(±1밀리미터) 사각에 태극기 무늬 모형 인쇄, ,경찰명예장은 가로 7밀리미터 세로 9밀리미터(±1밀리미터) 경찰흉장 모형 인쇄(투명 에폭시처리)

[별표 4]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

1. 위치 및 순위

○ 3개를 패용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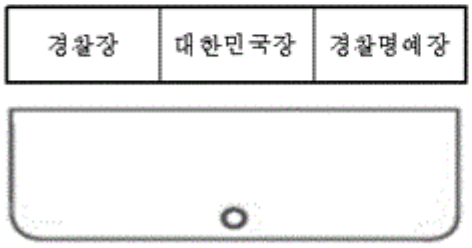

○ 4개를 패용할 경우

○ 5개를 패용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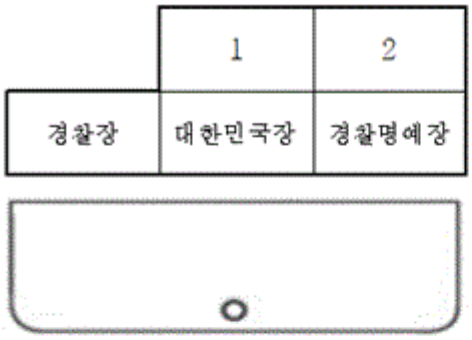

○ 6개를 패용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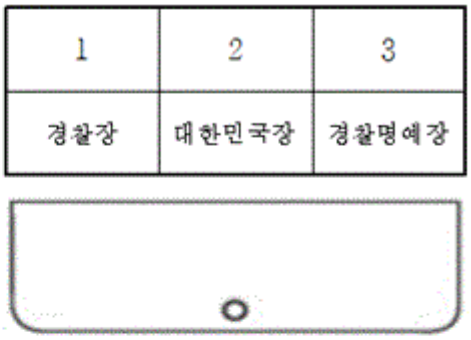

※ 6개 이상은 위 예시에 준하여 패용

2. 가슴부분에 호주머니가 없는 여성경찰관 정복의 경우에는 가슴표장 부착고리 윗선에서 2.5cm 위에 약장 하단이 위치하도록 부착한다.

3. 다른 등급 훈장의 약장 또는 표창 약장은 선택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지휘관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최상위 직위 약장 하나만을 패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속(주소)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이에 표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의 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속(주소)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소속(주소)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의 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경찰공로장증

소속(주소)
계급 성 명

귀하는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재임 중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공로장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의 장

[별지 제5호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여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수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여 당시 소속	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
용 도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경찰표창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대리인: 위임장 1부, 경찰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경찰기관(상훈업무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표창 수여증명서

○　○　○

- 소　　속:
- 직급 또는 계급:
- 생 년 월 일:
- 표 창 종 류:
- 수 여 번 호:
- 수　여　일:
- 공 적 요 지: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찰 청 장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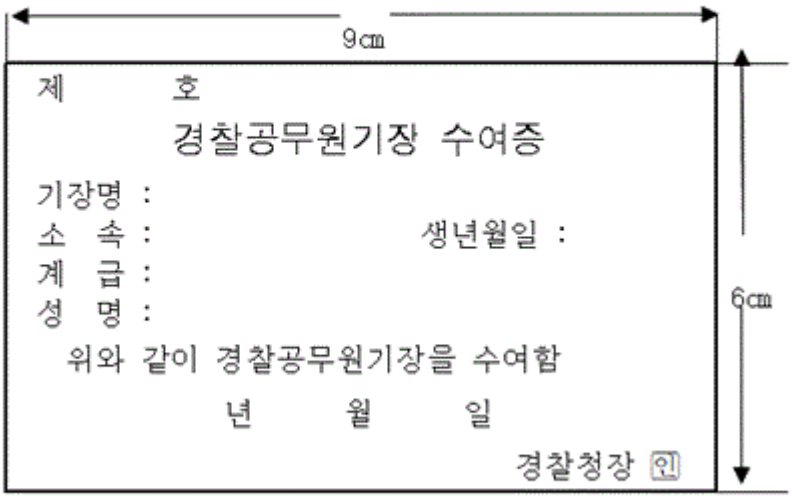

제 호

경찰공무원기장 수여증

기장명 :

소 속 : 생년월일 :

계 급 :

성 명 :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기장을 수여함

년 월 일

경찰청장 ㊞

※ 중앙에 기장정장도면 삽입

(뒷 면)

주의사항

1. 기장 패용시에는 반드시 이 증서를 휴대할 것
2. 이 증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을 것

90㎜×60㎜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8호서식]

표창 수여 기록부

수 여 년월일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공적요지	훈격	연번	공적구분

[별지 제9호서식]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기록부

기장 번호	기장의 종 류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경찰배명	비고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시행 2022. 10. 7.] [훈령 제1064호, 2022. 10. 7., 일부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02 - 3150 - 1250
경찰청(경무담당관)02 - 3150 - 12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경찰청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청 각 국ㆍ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해당 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경찰청장 및 각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의2(직종의 구분)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원"이란 소속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관리원"이란 소속기관의 건물ㆍ보일러ㆍ전기실 등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환경미화원"이란 소속기관의 청사 내외부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양사"란 소속기관의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조리종사원"이란 소속기관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의 지도 아래 각종 요리를 만들고 배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의료업무종사원"이란 경찰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 업무 보조, 환자 상태 관찰,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의료 기구 및 물품의 소독ㆍ살균, 환자의 입ㆍ퇴원 수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차관리원"이란 경찰병원에서 방문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 주ㆍ정차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구내매점원"이란 소속기관의 직영하는 매점에서 식료품이나 일용 잡화 등을 판매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청사방호직"이란 소속기관의 청사방호 및 경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영상판독요원"이란 소속기관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기록된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영상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사용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총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정원관리) ① 경찰청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적정 규모의 정원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을 증원 및 감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및 각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부서(이하 "조직관리부서"라 한다) 및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및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원조정)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조정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의 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매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예산주무부서에 요구하고,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예산 확정 후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

제1절 채용

제7조(채용권자)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채용권자는 경찰청장이 된다.

② 경찰청장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채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채용 해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채용권자와 같다.

제7조의2(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절차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 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면접관을 대상으로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관한 차별적 질문 금지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무기계약근로자등의 사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단순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9조의2(기간제 사전심사)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인원, 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예산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여부, 고유 업무 성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인사담당부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채용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채용은 공모를 통한 경쟁모집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참조하여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공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보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2. 채용계약 체결 이전에 최종합격자의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 중 채용내정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2조(채용자격 기준)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수행할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채용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 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 대상자의 업무, 인사 및 예산담당부서의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 각 국ㆍ관의 경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전환 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전환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3부.(「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

2. <삭 제>
3. 자기소개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① 채용 구비 서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용 전형이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용 및 제공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가 신규로 기간제근로계약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2. <삭 제>
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
4. 최종학력증명서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제17조(재정보증)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규칙」제3조에서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사기록 및 관리)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인적사항、채용、포상 등의 인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한 인사기록은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신분증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③ 채용권자는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등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해지

제20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직무급이 적용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65세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당연퇴직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 : 6월 30일
2. 정년에 도달한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 : 12월 31일

제21조(근로관계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1.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사망한 경우
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채용권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3조 각 호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ㆍ전보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임면 보고를 관리부서에 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평정

제23조(근무성적 평정)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평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S, A, B, C, D의 5단계로 종합 평가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보수 및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계(과)ㆍ팀장으로 확인자는 과ㆍ서ㆍ대장으로 한다.

제4절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훈련 평가 및 관리) ①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는 연간 교육이수시간 충족 여부로 평가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교육훈련 실적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교육훈련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제26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의무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국가공무원법」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등"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공무원"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소속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각각 본다.

제26조의2(징계사유)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징계사유가 된다.

1. 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허위문서 작성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고의ㆍ중과실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경우
4.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6.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성비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 결과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 감봉의 구체적 내용은 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4(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4명, 무기계약근로자등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

④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감찰부서의 사실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26조의5(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되,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집행) 징계처분권자인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7(재심 절차) ①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 청구를 한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 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경찰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 사건은 시ㆍ도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ㆍ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26조의8(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26조의9(손해배상) <삭 제>

제27조(근무시간)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부서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유연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시간선택제 근무)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최소 근무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며, 근무시간대는 9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편리한 시간대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내에는 매일 동일시간 및 동일시간대에 근무해야 한다.

제28조(근무상황)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7조제1항에 의한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휴일 및 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이 휴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30조(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병가) <삭 제>

제32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 1년 이내로 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3년 이내
2.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4.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②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3조(육아휴직)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이때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휴직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육아휴직 적용제외) 채용권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35조(복직) ①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을 퇴직처리 하여야 한다.

제36조(증명서 등의 발급)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제9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제37조(보수의 지급)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수표준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이미 보수표준안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보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봉 상ㆍ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38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 본인부담 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8조(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① 채용권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퇴직금, 보험,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퇴직금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재해보상)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3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구체화ㆍ특정화하여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대외직명제 운영) ① 인사혁신처예규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한다.

제39조의3(전산망 접근권한)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망 접근 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 서약서 징수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전산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채용권자는 제39조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기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채용권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물 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41조(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권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2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자체 운영규칙 제정ㆍ시행)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칙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4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소속기관장은「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519호,2007.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임금지급 수준은 보수표준안 시행시까지 기존의 임금산정 체계를 적용한다.

부칙 <제563호,2009. 8. 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10. 7.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10. 12. 2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12. 6. 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2013. 10.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5. 7. 28.>
이 훈령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2016. 4.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17. 9.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18. 10. 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19.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호,2019. 9. 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호,2019. 11. 1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2020. 8. 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20. 9. 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21. 1. 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2022.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에 관한 특례) 제9조의2제6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적용을 시행일 기준으로 1년간 유예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6조의5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
2.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정직	감봉	견책
3. 부정청탁	해고	정직	감봉	견책
4.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5. 성 관련 비위	별표 3과 같음			
6. 음주운전	별표 4와 같음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6조의5제2항 관련)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 비고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6조의5제2항) <신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	해고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	해고
다. 공연(公然) 음란행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2. 성희롱				
가.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나. 가목 외의 성희롱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	해고	해고	해고	해고
나. 가목 외의 성매매	해고	해고	정직	정직-감봉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음주운전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6조의5제2항) <신설>

<table>
<tr><th colspan="4">음주운전 유형</th><th>처리기준</th><th>비고</th></tr>
<tr><td colspan="2" rowspan="4">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 colspan="2">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td><td rowspan="3">정직-감봉</td><td rowspan="13">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무기계약근로자등"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는 본 규칙 시행일인 2022년 10월 7일 부터 산정한다.</td></tr>
<tr><td colspan="2">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td></tr>
<tr><td colspan="2">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측정 불응의 경우</td><td>해고-정직</td></tr>
<tr><td colspan="4">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해고-정직</td></tr>
<tr><td colspan="4">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해고</td></tr>
<tr><td colspan="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td><td>정직</td></tr>
<tr><td colspan="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해고-정직</td></tr>
<tr><td rowspan="4">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td colspan="3">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td><td>해고-정직</td></tr>
<tr><td colspan="3">사망사고의 경우</td><td>해고</td></tr>
<tr><td rowspan="2">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td><td>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td><td>해고-정직</td></tr>
<tr><td>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td><td>해고</td></tr>
<tr><td rowspan="2">운전업무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 colspan="3">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td><td>해고</td></tr>
<tr><td colspan="3">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td><td>정직</td></tr>
</table>

[별지 제1호서식]

인원조정 요청서

조 정 내 역		증 원 사 유
기구개편	인력증원	

[별지 제2호서식]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직명)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계약금액(월보수액)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채용방법			
기타 필요사항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경찰청(　　실·국장),(이하"채용권자"라 함)과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남, □여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자택)	최초계약일	비고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무장소 및 업무

1) 근무장소 : _____ 및 업무상 필요한 출장지 등

2) 업무내용 : _____ 및 관련 부수업무 등

※ 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1) 시업 및 종업시각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2) 휴 게 시 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분)

※ 다만, 업무상 필요시 당사자간 협의로 시·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휴가

1) **근로일** : 주___일 근무 (___요일부터 ___요일까지)

2) **주휴일** : 매주_____요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

3)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에 따른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 업무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주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에 따른다.

6. 임금

1) 임금은 기본급과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채용권자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임금구성항목 별지로 표시 또는 본 계약서에 표시

2) 임금의 지급일은 익월____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3)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통장번호 :)

7. 징계·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징계 및 계약해지할 수 있다.

8. 계약종료·재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한다.

2) 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9.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 . .

경찰청(실·국장) : (인)

근로자(근로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경찰청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경찰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 ○ ○ 장(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갑-1)

무 기 계 약 근 로 자 등 인 사 기 록 및 성 과 관 리 카 드

경 찰 청

1. 호 적 초 본		6. 채용신체검사서	
2. 신 원 증 명 서		7. 신원조사회보서	
3. 병 적 증 명 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8. 사 진(명함판 상반신)	
4.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9.	
5. 경 력 증 명 서		10.	

(갑-2)

① 분 류 번 호		② 성 명(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연 금 번 호	

⑤ 성명(한글)		⑥ 성 별	□ 남 □ 여	⑦ 주 소		⑧ 생활근거지	

사 진 명함판 (4.5㎝×4.5㎝)	⑨ 병역관계	해당 없음	미 필	복 무						
			체격등위	역 종	군 별	병 과	계 급	군 번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⑩ 개인 신상 관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액형
		㎝	kg	좌( ) 우( )		

⑪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⑫ 학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부터	까지		

⑬ 임면사항	년월일	직급	임면구분	발령청

⑭ 전력	기간		근무처	직위
	부터	까지		

⑮ 자격증	취득 년월일	종류	시행청

⑯ 훈련	기간		종류	훈련기관
	부터	까지		

⑰ 외국시찰 및 수학	기간		목적	국명
	부터	까지		

⑱ 포상·서훈	년월일	종류	시행청

⑲ 징계·형벌	년월일	종류	발령청

(갑-3)

⑳근 무 성 적 평 정			㉑경 력 평 정			㉒훈 련 성 적			㉓승 진 순 위		
년월일	평 정 점	기록자인	년월일	평 정 점	기록자인	연도반기별	성적점수	기록자인	년월일	순 위	기록자인

(성명 :) ㉔ 승급기록

호 봉	초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발령년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발령년월일																
기 록 자 인																

㉕ 주의사항	1. 본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⑦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㉑승급란은 해당 호봉란에 「보수표준안」에 의거 해당 호봉과 승급연월일을 병기한다.	㉖ 기록사항확인	본인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직명 성명 ㊞
			소속장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무기계약근로자등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종	채용일(전환일)

○ 담당업무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업무실적 평가(30점)

평가요소	배점	정의	평가점수
업무량	10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총 점			

2. 직무수행능력 평가(60점)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점수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	15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	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고객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평가점수	점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등급)

※ 평가등급 기준 : S100점~91점)·A(90점~81점)·B(80점~71점)·C(70점~61점)·D(60점 이하)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명 :　　직명:　　성명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 · 지각 · 조퇴 · 외출 ·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 · 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 · 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 · 시 · 분을, "까지"란은 시 · 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8호서식]

시간외 근로기록부

연 번 :

부서명 : 계(과)

결재	계(과)장

성 명	생년월일	시간외근로사항				비 고 (근로시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별지 제9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 주 소				
재 직 사 항	④ 소 속				
	⑤ 직위또는직급	주무관(공무직)			
	⑥ 기 간	. . . 부터 . . . 현재 (년 월)			
⑦ 용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 . .

(기 관 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입요령

1."②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예) 1960. 1. 1 또는 600101-1234567

2."④ 소속"란에는 중앙행정기관 단위부터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까지 그 명칭을 기입한다.

3."⑤ 직위또는직급"란에는 주무관(공무직)으로 기재한다

4."⑥ 기간"란에는 근무시작일부터 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를 기입하고, "(년 월)"안에는 실근무기간을 기입하되, "월"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9호의2 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급	부서 및 직위		
근무년한		최종직위또는 직급	주무관(공무직)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년 월 일	종 류	시행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 인

[별지 제10호서식]

접수일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 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 . .				14일
부서명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계좌번호:)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20 년 월 일

경 찰 청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임면 보고

기관명:

성 명	직 종 명	구 분 (채용·전보·해지·퇴직 등)	채용 등 년월일	담당업무	사 유

※ 사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재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table>
<tr><td rowspan="3">인적사항</td><td rowspan="2">①
성명</td><td>한글</td><td></td><td>②소 속</td><td></td><td>③직급</td><td></td></tr>
<tr><td>한자</td><td></td><td>④생년월일</td><td></td><td>⑤근무
기간</td><td></td></tr>
<tr><td colspan="2">⑥주소</td><td colspan="5"></td></tr>
<tr><td>⑦징계사유</td><td colspan="7"></td></tr>
<tr><td>⑧
징계권자의
의 결 요 구
의 견</td><td colspan="7"></td></tr>
<tr><td></td><td colspan="7">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제26조의5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직 급	성 명

주 문	○ ○에 처한다.
사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 시·도경찰청장 인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찰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규칙(2권)

제 작 자 : 이재혁
전화번호 : 01099747597
제작일자 : 2026.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